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6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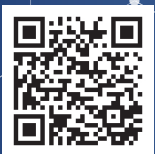


조사·분석 연구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조사·분석 연구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A Study on the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2018.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조사·분석 연구 -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조남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 김애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촉연구원)

Summary

요약문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18년 7월 ~ 2018년 11월

□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 (1차 전화조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랜덤샘플링을 통해 5,054개 기업 추출 후 '14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피침해 분쟁 경험여부를 조사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미등록 디자인 포함

- 1~3차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전체 5,054개 기업 중 2,991개 기업이 전화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517개 기업(17.3%)이 해외에서의 지적권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

○ (2차 설문조사) 1차 전화조사에서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한 517개 기업 중 최종적으로 101개 기업이 세부 분쟁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함(응답률 19.5%)

□ 응답기업 특성

○ (기업유형) 101개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과 벤처/INNO-BIZ 기업의 비중은 75.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요 업종) 응답기업의 업종은 화학산업과 기계산업 비중이 각각 17.8%와 1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거래국가)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거래국가를 보면, 중국인 경우가 81.2%로 가장 많고, 미국(66.3%), 일본(59.4%), 유럽(57.4%) 순

○ (국가별 사업형태)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의 사업형태는 직접수출인 경우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 지재권 분쟁 개요

□ 분쟁유형 (침해, 피침해)

-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72.3%가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경우(피침해)로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경우(52.5%)보다 많음
- 중견기업의 경우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80%로 중소기업(67.3%)과 벤처/이노비즈 기업(76.2%)의 경우보다 많음
- 산업을 구분하면, 침해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90.9%로 전체에서의 비중(52.5%)보다 높음

□ 세부 분쟁유형

- (경고장)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43.6%로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34.7%)보다 많음
- (국경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제품을 압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5%, 해외 세관에서 자사제품이 압류당한 비중은 2%
- (행정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0.8%
- (소송)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31.7%로 피소 비중(22.8%)보다 높음
- (전시회 분쟁) 분쟁기업 중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겪은 비중은 9.9%로 나타남

□ 특허보증 경험

- 응답기업 중 최근 5년간 특허보증¹⁾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4.8%,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명²⁾을 요구받은 비중은 28.7%로 나타남
- 산업을 구분하면,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비율은 화학산업(38.9%)에서, 비침해 증명을 요구받은 비중은 전기전자산업(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1)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바이어에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

2) 바이어가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와 타 기업의 특허 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은 미국이 56%로 가장 높고, 중국(48%), 유럽(40%), 일본(28%) 순임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향후 납품제품으로 인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금액 한도 없음)해야 하는 경우가 56%로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4%)보다 높았음

□ 분쟁 기업의 IP보유 및 관리 현황

- (IP 담당부서 및 인력) 분쟁경험이 있는 기업 중 지식재산권 담당부서³⁾가 있는 비중은 64.6%, 평균 담당인력⁴⁾은 1.9명, 이 중 전담인력은 평균 0.8명
- (해외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응답기업이 각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비율은 중국이 91.1%로 가장 높고, 미국(79.2%), 유럽(71.3%), 일본(70.3%), 기타국가(50.5%) 순
-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분쟁경험 기업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활동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음(72.3%)

3)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 권리유형

- (피침해 분쟁)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상표분쟁 63.4%, 특허 20.3%, 디자인 11.4%
- (침해 분쟁) 67건의 침해 분쟁 중 특허분쟁이 49.3%, 상표(38.8%), 디자인(6.0%)

□ 발생국가

- (피침해 분쟁) 중국 63.4%, 기타국가 19.5%
 - 중국에서의 상표분쟁 41.5%, 기타국가 상표분쟁 15.4%
- (침해 분쟁) 미국 31.3%, 중국 26.9%
 -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23.9%, 중국에서의 상표분쟁 19.4%

3)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와 겸임부서 모두 포함

4) 산업재산권 담당부서, 인력: 산업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산업재산권 동향 조사, 특허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산업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

□ 기업 유형

- (피침해 분쟁) 일반 중소기업이 61.8%로 대다수를 차지
 - 일반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37.4%, 중견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14.6%
- (침해 분쟁) 일반 중소기업 46.3%, 중견기업 23.9%, 벤처기업 22.4%
 - 중소기업의 미국에서의 침해분쟁 17.9%,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침해분쟁 13.4%

□ 업종

- (피침해 분쟁) 기타제조업이 20.3%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과 화학산업이 각각 18.7%, 기계산업 13.8%, 기타 서비스업 11.4% 순
- (침해 분쟁) 전기전자와 화학산업이 17.9%로 가장 많고, 기계산업(16.4%), 기타제조업(11.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9%) 순

□ 대응활동 및 시작형태

- (피침해 분쟁 대응) 피침해에 대해 항의·경고장 발송 41.5%, 소송 33.3%, 행정조치 17.9%, 라이선스 요구 9.8% 순
 -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특허(40%)와 미등록디자인(40%)에서 높고, 행정조치를 취한 비중은 상표 분쟁(24.4%)에서 높음
- (침해 분쟁 시작형태)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56.7%
 - 상대기업이 바로 소송제기 31.3%, 라이선스 요구 13.4%
 - (미국, 유럽, 일본) 경고장 발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음
 - (중국) 바로 소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50%로 더 많음

□ 상대기업 국적

- (피침해 분쟁) 중국 65.9%, 기타 16.3%
 - (특허) 중국 44%, (상표) 중국 67.9%
- (침해 분쟁) 미국 32.8%, 중국 22.4%
 - (특허) 미국 48.5%, (상표) 중국 42.3%

□ 피해 시점(피침해) 및 경고장 수령시점(침해)

- (피침해 분쟁) 제품 출시 후 81.3%, 출시 전 18.7%
- (침해 분쟁) 제품 출시 후 64.2%, 출시 전 13.4%

□ 피해인지 경로

- (피침해 분쟁) 시장조사 과정(48%), 거래처의 신고(27.6%)
 - (유럽) 시장조사 과정(22.2%)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피침해 탐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유추

□ 대응비용

- (피침해 분쟁) 84%에서 대응비용 발생, 평균 55백만원
 - (특허) 152백만원, 상표(평균 35백만원), 디자인(평균 6.7백만원)
 - (유럽) 168백만원, (미국) 110백만원, (일본) 56백만원, (중국) 44백만원
- (침해 분쟁) 85%에서 대응비용 발생, 평균 226백만원
 - (특허) 490백만원, 상표(30백만원), 디자인(47백만원)
 - (미국) 443백만원, (중국) 50.3백만원, (유럽) 47.7백만원, 일본 110.7백만원

□ 소송비용

- (피침해 분쟁) 32%에서 소송비용 발생, 평균 80백만원
 - (특허) 155백만원, (상표) 57백만원
 - (유럽) 230백만원, (일본) 95백만원, (중국) 70백만원, (미국) 50백만원
- (침해 분쟁) 39%에서 소송비용 발생, 평균 221백만원
 - (특허) 458백만원, 상표 49.3백만원
 - (미국) 1,063백만원, (중국) 54.8백만원, (유럽) 66백만원

□ 피해규모 (자사손실액)

- (피침해 분쟁) 평균 480백만원 (119건)
 - (특허) 904백만원, (상표) 407백만원, (디자인) 153백만원
 - (미국) 1,437백만원, (유럽) 610백만원, (중국) 496백만원

□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 (피침해 분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는 각각 6건(4.9%)과 12건(9.8%)
 - (손배금) 평균 664백만원 (특2, 상4)
 - (합의금) 평균 269백만원 (특2, 디1, 상9)
- (침해 분쟁)
 - (합의금 지불) 합의금을 지불한 1건(특1, 상1)의 평균 합의금은 30백만원
 - (손해배상금 지불)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2건(특허)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46.8백만원
 - (라이선스 비용) 라이선싱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5건(특허)(미국 4건, 유럽 1건)으로 평균 라이선스 비용은 1,270백만원

□ 분쟁기간

- (피침해 분쟁) 조사시점에 분쟁이 종결된 사건은 77건, 평균 분쟁기간은 평균 12.9개월
- (침해 분쟁) 조사시점에 종결된 41건의 평균 분쟁기간은 15.0개월

□ 종결형태

- (피침해 분쟁) 123건의 피침해 분쟁은 시장진입 저지로 종결된 경우가 29건(23.6%)으로 가장 많음
 - 피침해 분쟁 중 15.4%는 협상으로 종결되었고, 협상 결과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종결된 경우는 8.1%, 라이선스 체결로 종결된 경우는 7.3%
 - 피침해 분쟁 중 23.6%는 소송으로 종결되었고, 소송 승소는 14.6%, 패소는 4.9%, 소송 취하는 4.1%
- (침해 분쟁) 67건의 침해분쟁 사건 중 협상으로 종결된 비율은 22.4%, 소송으로 종결된 비중은 22.4%
 - 협상 후 합의금을 지불한 비중은 6.0%,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16.4%
 - 소송 후 승소로 종결된 경우는 16.4%, 중간에 합의 등을 통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는 4.5%



제1장

서 론 1

제1절 조사의 배경 3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개요 5

 I. 실태조사의 목적 및 주요내용 5

 II.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8

 III. 응답기업 특성 9

제2장

주요 조사결과 13

제1절 지식재산 분쟁 현황 15

 I. 분쟁유형 (침해, 피침해) 15

 II. 세부 분쟁유형 17

 III. 특허보증 관련 경험 21

 IV. 분쟁 기업의 IP보유 및 관리 현황 23

 V. 지식재산 분쟁건의 권리유형 및 발생지역 26

 VI. 관련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27

제2절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 현황 30

 I. 피침해 분쟁 기업의 일반 현황 30

 II. 피침해 분쟁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 33

 III. 피침해 분쟁기업의 세부 분쟁유형 35

 IV.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36

 V. 피침해 분쟁기업의 대응전략 및 애로사항 52

 VI.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55

제3절 지식재산 침해 분쟁 현황 56

 I. 침해 분쟁 기업의 일반 현황 56

 II. 침해분쟁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 58

 III. 침해 분쟁기업의 세부 분쟁유형 61

 IV.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62

 V. 전시회 분쟁 현황 77

 VI. 침해 분쟁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및 피해유형 77

 VII.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78



제3장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사례 81

제1절 전시회 참가와 PCT 특허출원 83

I. 사건의 배경 83

II. 사건의 발단 84

III. 사안의 문제점 85

IV. 시사점 86

제2절 특수관계인에 의한 상표 선점과 중국 상표법 제15조의 제척기간의 문제 ... 87

I. 사건의 배경 87

II. 사건의 경과 88

III. 중국 상표법 제15조와 제척기간 88

IV. 반부정당경쟁 소송을 통한 반격 90

V. 시사점 91

제3절 모방품 형사/행정 단속 및 그 한계 92

I. 사안의 배경 92

II. 사안의 경과 92

III. 형사/행정 단속의 준비 및 실행 93

IV. 형사단속에서의 유사상표 모조품의 문제 94

V. 시사점 96

제4절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및 선점 상표 재출원 시기 결정의 문제 97

I. 중국 주요 상표 브로커 현황 97

II. 상표브로커 대응 무효심판의 법적 논리 및 연속된 최근의 승소 ... 102

III. 선점 상표의 재출원 시기 결정의 문제 103

IV. 선점 상표의 재출원 및 거절결정의 문제 103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05

제1절 결과 요약 107

I. 지재권 분쟁 개요 107

II.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109

제2절 시사점 113



첨 부

설문조사표	119
산업분류표	130
통계표	132



표 목차

제1장	표 1-1 조사의 내용 6
	표 1-2 1차 전화조사 결과 8
	표 1-3 2차 설문조사 응답률 8
	표 1-4 응답기업(분쟁경험 기업)의 세부 분포 11
제2장	표 2-1 주요 산업별 분쟁유형 16
	표 2-2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25
	표 2-3 분쟁발생 지역에 따른 전체 분쟁 건수 27
	표 2-4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지재권 보호 관련 사업(복수응답) 28
	표 2-5 피침해 분쟁기업의 국가별 산재권 보유 비율 34
	표 2-6 피침해 분쟁의 발생국가 및 권리유형 37
	표 2-7 기업유형 및 업종별 피침해 분쟁 발생국가 38
	표 2-8 피침해 분쟁 피해규모(자사손실액) 45
	표 2-9 피침해 분쟁 대응비용(총 대응비용) 46
	표 2-10 피침해 분쟁 대응비용(소송비용) 47
	표 2-11 피침해 분쟁 종결 형태(복수응답) 51
	표 2-12 침해분쟁 기업의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60
	표 2-13 권리유형 및 발생 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63
	표 2-14 기업유형 및 분쟁 발생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64
	표 2-15 침해 분쟁 총 대응비용 72
	표 2-16 침해 분쟁 소송비용 73
	표 2-17 침해분쟁 소요 기간 (권리유형별, 종결된 경우) 74
	표 2-18 침해분쟁 종결 형태 (복수응답) 76
	표 2-19 전시회 분쟁 건수 및 국가 77
	표 2-20 침해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79
	표 2-21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사업 79
제3장	표 3-1 김광춘 및 범 김광춘계 자회사 누적 중국 상표 출원 건수 비교 98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기업 유형별 응답 기업의 분포	9
그림 1-2 주요 업종별 응답 기업의 분포	10
그림 1-3 분쟁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별 사업형태(복수응답)	11

제2장

그림 2-1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별 분포	15
그림 2-2 기업유형별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	16
그림 2-3 경고장 수령/발송 기업 비율	17
그림 2-4 국경조치 경험 비율	18
그림 2-5 행정조치 경험 비율	19
그림 2-6 소송경험 비율	20
그림 2-7 기업유형별 특허 보증 현황	21
그림 2-8 (특허보증을 요구 받은 경우) 계약(요구) 내용	23
그림 2-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재권 담당부서 및 인력	24
그림 2-10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26
그림 2-11 기업유형별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정부 요청 사항(1순위)	28
그림 2-12 피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	30
그림 2-13 피침해 분쟁 기업의 업종	31
그림 2-14 피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국가(복수응답)	31
그림 2-15 피침해 분쟁 기업의 거래국가별 사업형태(복수응답)	32
그림 2-16 피침해 분쟁기업의 IP담당부서 및 관리인력	33
그림 2-17 피침해 분쟁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35
그림 2-18 피침해 분쟁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36
그림 2-19 피침해 분쟁 사건의 권리유형 비율 및 건수	37
그림 2-20 피침해 분쟁의 권리유형별 상대기업의 본사 소재지	39
그림 2-21 피침해 분쟁발생 지역별 상대기업의 국적	40
그림 2-22 권리 유형별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41
그림 2-23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41
그림 2-24 분쟁발생 지역별 상표권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42
그림 2-25 권리유형별 피해시점	42
그림 2-26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피해시점	43
그림 2-27 권리유형별 피침해 인지 경로	44



그림 2-28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인지 경로	44
그림 2-29 권리유형별 피침해 대응 활동 (복수응답)	48
그림 2-30 발생국가별 피침해 대응 활동 (복수응답)	48
그림 2-31 권리유형별 피침해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49
그림 2-32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50
그림 2-33 권리유형별 피침해 분쟁 기간(진행 중인 경우)	50
그림 2-34 피침해 분쟁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복수응답)	53
그림 2-35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54
그림 2-36 피침해 분쟁 기업의 정부 요청 사항(1순위)	55
그림 2-37 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	56
그림 2-38 침해 분쟁 기업의 업종	57
그림 2-39 침해 분쟁 기업의 거래국가(복수응답)	57
그림 2-40 침해 분쟁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58
그림 2-41 침해분쟁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부서 및 인력	59
그림 2-42 침해분쟁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61
그림 2-43 침해분쟁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62
그림 2-44 침해분쟁 사건의 권리유형	63
그림 2-45 침해분쟁의 시작 형태 (권리유형별)	65
그림 2-46 침해분쟁의 시작 형태 (국가별)	66
그림 2-47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권리유형별)	67
그림 2-48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국가별)	68
그림 2-49 상대 기업의 국적 (권리유형별)	69
그림 2-50 상대기업의 국적 (분쟁발생 국가별)	69
그림 2-51 침해분쟁의 경고장 수령 시점	70
그림 2-52 침해분쟁 시 소송 진행 비중 (권리유형별)	71
그림 2-53 침해 분쟁 시 소송 진행 비중 (발생국가별)	71
그림 2-54 침해분쟁 소요 기간(발생국가별, 종결된 경우)	74
그림 2-55 침해분쟁 소요 기간(권리유형별, 진행 중인 경우)	75
그림 2-56 침해분쟁으로 인한 피해유형 (복수응답)	78
제3장	
그림 3-1 석가장의 연도별 출원건수	100
그림 3-2 라예귀의 연도별 중국상표 출원건수	101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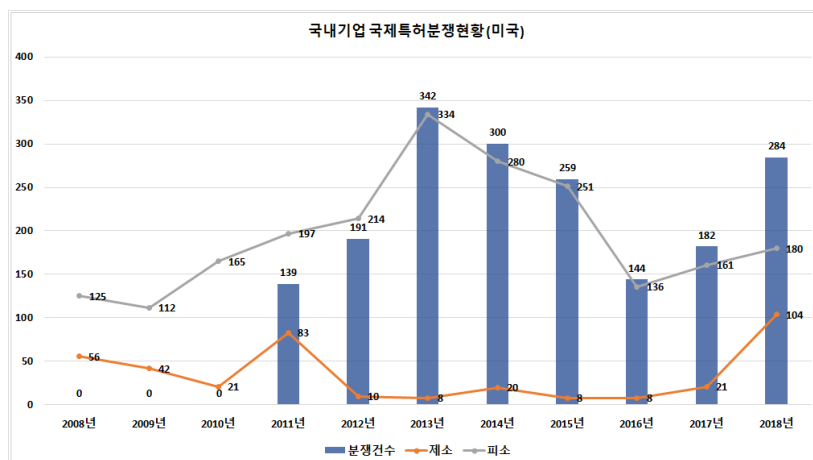
□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율적·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에 앞서 관련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국내외 산업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개발과 그 활용범위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면서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의 중요성 부각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증가 및 분쟁유형 다양화 추세에 따라 지재권 분쟁대응 관련 연구 수요 증가

※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현황(건): ('14) 143 → ('17) 588

〈참고〉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지재권 소송 동향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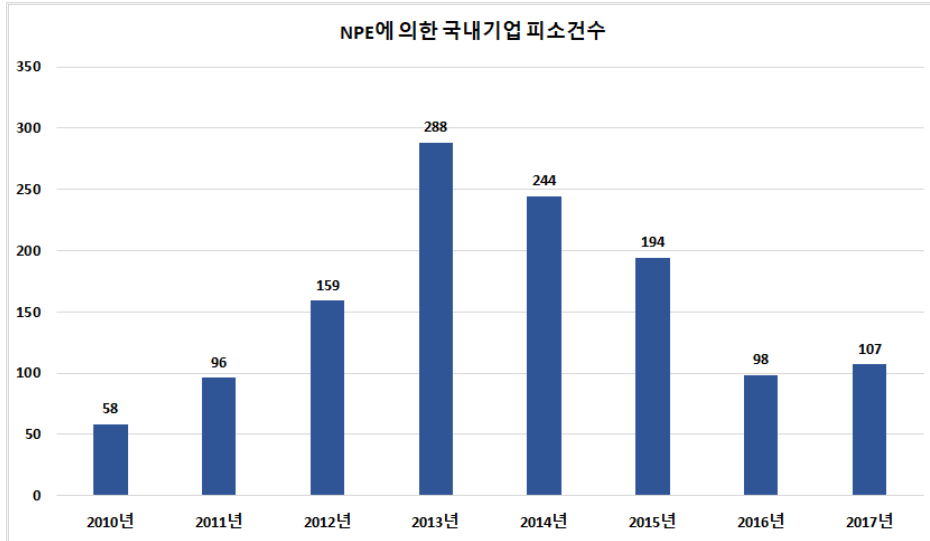
- 미국에서 우리기업-해외기업 간 지재권 분쟁은 2010년대 초반 급증한 이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우리기업에 의한 제소 사건의 경우 '17년 21건에서 '18년 104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이 약 84%로 대다수를 차지



출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국제IP분쟁 동향 연차보고서(각 연도)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 국내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는 미국 83.2%, 대만 2.4%, 스위스 1.5%) 순

○ NPE에 의한 국내기업 피소건수도 최근 다시 증가



출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국제IP분쟁 동향 연차보고서(각 연도)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 '10~'15 미국 특허소송의 약 2/3가 NPE관련 소송¹⁾
- '15 NPE Activity Highlights'에 따르면 삼성과 엘지전자가 각각 2015년 미국 특허 소송 피소 순위 1위 및 5위에 랭크
-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거래처인 대기업이 NPE로부터 피소될 경우 특허보증조항²⁾에 의하여 피해를 떠안게 되거나 NPE로부터 직접 지재권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

○ 지재권 분쟁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및 보호 관련 추이에 대한 기초 자료 필요

- 체계적 조사 설계 및 분석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재권 분쟁 중인 우리기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필요

1) 특허청 (2016), 경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2) 특허보증조항 또는 특허 비침해 보증 조항이라고도 부르며, 넓은 의미의 하자보증 조항(Warranty Clause)의 한 종류로 볼수 있으며, 제품개발계약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판매계약, 공급계약 등에도 포함되는 추세이며, 생산 또는 판매 기업이 납품한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납품받은 기업이 특허권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 납품을 한 기업은 납품을 받은 기업에 대해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개요

I 실태조사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조사의 목적

- 체계적 조사 설계 및 분석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재권 분쟁 중인 우리기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분쟁형태별 사건 진행 특성을 분석하여 각 분쟁형태에 특화된 차별적 지원 정책 도출의 근거 마련
- 지재권 분쟁의 구체적 현황 및 법제도 활용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 재산보호 정책 발굴

□ 조사의 주요 내용

-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및 국내 및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유 및 관리 현황
- 경고장 발송/수령, 국경조치, 행정조치, 소송, 전시회 분쟁 등 우리기업이 경험한 산업재산권 분쟁의 유형
- 특허보증 및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및 대응현황
 - (특허보증) 특허보증 경험 여부, 특허 비침해 증명 요구 여부, 특허보증 요구 국가, 특허보증 내용, 특허보증에 대한 대응 방식, 특허보증에 소요된 비용 등
 - (전시회 분쟁)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경험 국가, 압수 시 대응형태, 대응 시 애로사항 등
- 산업재산권 피침해·침해 관련 개별 사건의 발단, 전개 및 진행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 (피침해) 권리유형, 발생지역, 침해기업 본사 소재지, 피해형태, (상표권 분쟁의 경우) 피해형태, 피해시점, 피해 인지경로, 피해규모, 대응비용, 피침해 대응활동,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 (침해) 권리유형, 분쟁 발생지역, 분쟁 시작형태,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침해 주장 기업 본사 소재지, 경고장 수령 시점, 소송 여부, 대응 비용,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 국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시 우리기업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무대응의 이유, 대응 시 애로사항, 우리기업의 손해, 산업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등

표 1-1 | 조사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일반현황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INNO-BIZ 기업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거래국가	• 미국, 중국, EU, 일본, 기타 국가
	사업형태	• 수출(직접), 수출(판매법인), 현지생산, 프랜차이즈, 기타
IP관련 현황	IP담당인력, 조직	• IP조직 보유여부, 총 인력, 총 인력 중 전담인력
	IP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 확대,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
IP보유현황	해외 산재권 보유여부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국가의 특허, 상표, 디자인 보유 여부
특허 보증 경험	특허보증 경험여부 및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보증 경험 여부 • 미국, 중국, EU, 일본, 기타 국가
	계약 내용	• 보증 범위 (판매금액 내, 모든 손해를 보상)
분쟁 유형	경고장	• 경고장 발송, 수령 경험
	국경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 제품을 압류 • 해외 세관에서 자사 제품이 압류
	행정조치	•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 시행 또는 당한 경험
	소송	• 제소, 피소 경험
	전시회분쟁	•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피침해 경험 (대표사건 3건)	피침해 권리유형,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 발생 국가(미국, 중국, 유럽(국가명), 일본, 기타) • 침해기업 본사 소재지 (미국, 중국, 유럽(국가명), 일본, 한국, 기타)
	피해 시점 및 인지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출시 전, 제품 출시 후 • 시장조사과정, 박람회나 전시회, 국내 영업점, 해외 영업점, 소비자의 신고, 거래처의 신고 등

피해형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감소, 대외이미지 하락, 사업축소 및 철수 • (상표권의 경우) 의도적 상표 선등록,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 위조상품의 수출 • 자사손실액, 손해배상액, 합의금 • 대응 비용 및 소송비용 	
대응 활동 및 분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세관조치, 소송, 무대응 등 •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합의금, 손해배상금 수령, 라이선스 체결, 협상진행중) • 행정 및 세관조치를 통한 시장진입 저지 • 소송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 • 기타 (소송비용 부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대응, 직접작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침해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침해 경험 (대표사건 3건)	침해 권리유형,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 발생 국가(미국, 중국, 유럽(국가명), 일본, 기타)
	분쟁시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장 수령, 협상 제안, 민형사상 조치, 가처분/가압류, 전시회 참가 시 압수 및 경고 등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및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경쟁사, NPEs, 협력업체, 대학 및 연구소, 기타) • 침해주장 본사 소재지(미국, 중국, 유럽(국가명), 일본, 한국, 기타)
	경고장 수령 및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출시 전, 후, 경고장 수령하지 않음 • 소송진행 여부
	대응비용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응비용, 이 중 소송비용, 판결 전 합의금,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의 후 라이선싱 비용 •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합의금, 손해배상금 지불, 라이선스 체결, 협상진행 중) • 행정 및 세관조치 (해당제품 판매중지) • 소송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 • 기타 (침해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보냄, 무대응, 직접작성)
	전시회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분쟁 여부 및 국가 • 전시회 압수 시 대응형태 (철수, 항고, 무효소송 제기 등) • 대응 시 애로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 침해 분쟁으로 인한 손해 (매출감소, 대외 이미지 하락, 경제적 부담, 사업축소 및 철수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관련 사업 • 분쟁 예방을 위한 필요 정책 및 제도보안 	

II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11월

□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 (1차 전화조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랜덤샘플링을 통해 5,054개 기업 추출 후 '14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피침해 분쟁 경험여부를 조사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미등록 디자인 포함

- 1~3차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전체 5,054개 기업 중 2,991개 기업이 전화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517개 기업(17.3%)이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1-2| 1차 전화조사 결과

구분	조사 대상 기업 수	분쟁 경험 있음	분쟁 경험 없음	조사 거부 ³⁾	비수신	결번	기타
1차	2,929	277	1,753	94	308	434	63
2차	1,449	203	472	184	625	26	123
3차	676	37	249	26	357	33	0
전체	5,054	517	2,474	304	1,290	493	186

- (2차 설문조사) 1차 전화조사에서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한 517개 기업 중 최종적으로 101개 기업이 세부 분쟁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함(응답률 19.5%)

|표 1-3| 2차 설문조사 응답률

구분	2차 설문조사 대상 기업 수	조사응답	조사거부	응답률
1차	277	71	206	25.6%
2차	203	19	184	9.4%
3차	37	11	26	30.0%
전체	517	101	416	19.5%

3) 경쟁사에 기업전략 노출 등의 이유로 설문응답을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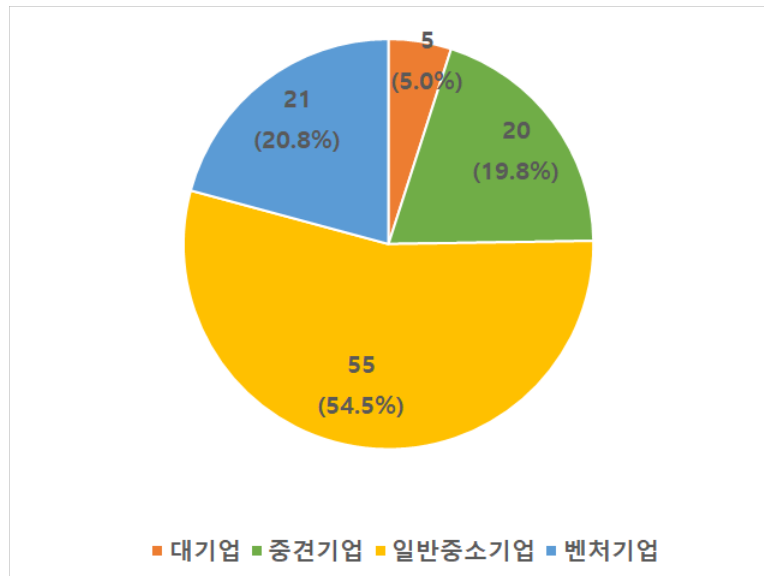
III 응답기업 특성

- (기업유형) 101개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비중은 75.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14년 조사) 중소, 벤처/INNO-BIZ 기업의 비중은 71.3%

- 응답기업 중 일반 중소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54.5%), 벤처/이노비즈 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20.8%, 19.8%, 대기업은 5.0%로 가장 낮음

|그림 1-1| 기업 유형별 응답 기업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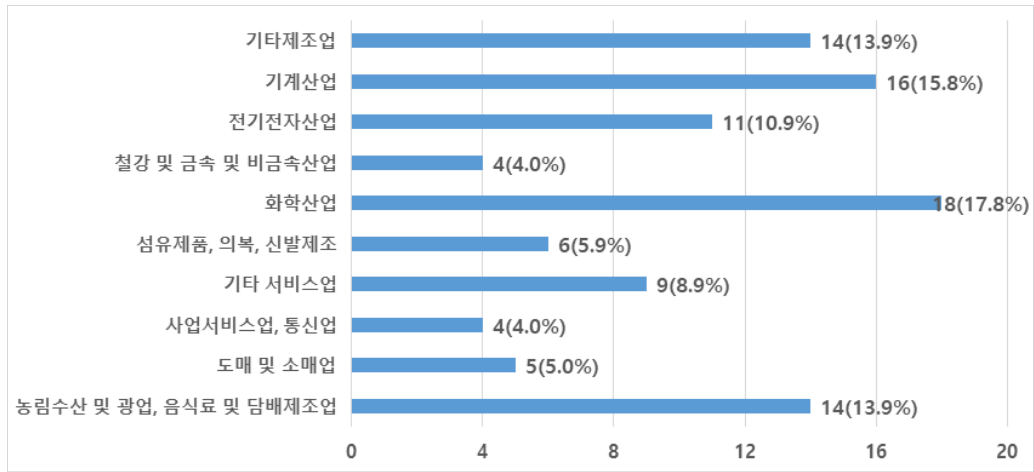


- (주요 업종) 응답기업의 업종을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 시,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비중이 각각 17.8%와 1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과 기타제조업이 각각 13.9%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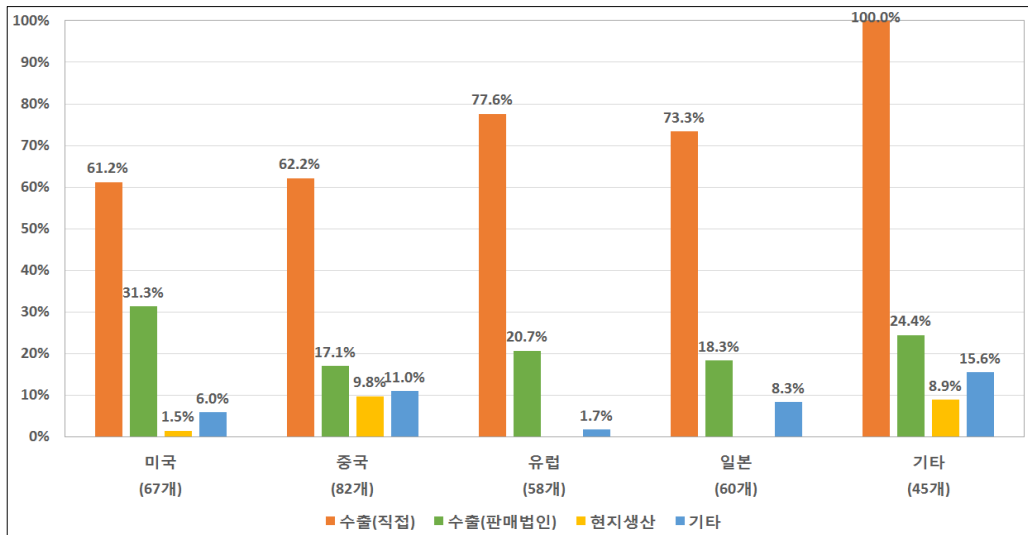
※ ('14년 조사) 기계산업(26.7%), 화학산업(20.8%), 전기전자산업(15.8%) 순

| 그림 1-2 | 주요 업종별 응답 기업의 분포



- (거래국가)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거래국가를 보면, 중국인 경우가 81.2%로 가장 많고, 미국(66.3%), 일본(59.4%), 유럽(57.4%)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에 거래국가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인 경우는 30.7%로 나타남
 - ※ ('14년 조사) 거래국가 비중은 중국(77.2%), 미국(59.4%), 일본(59.4%), 유럽(60.4%)
- (국가별 사업형태)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의 사업형태는 직접 수출인 경우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사업형태가 직접 수출인 비중은 유럽과 일본의 경우 전체의 77.6%와 73.3%로 미국과 중국에 비해 높음
 -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 비중은 미국에서 높고(31.3%), 현지생산의 형태인 경우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9.8%)을 보임
 - ※ '14년 조사의 경우 중국에서의 사업형태가 현지생산인 경우의 비중은 24.4%였으나, '18년 조사에서는 대폭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대행수출, 합자회사 및 협력개발의 형태로 해외 국가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림 1-3 | 분쟁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별 사업형태(복수응답)



| 표 1-4 | 응답기업(분쟁경험 기업)의 세부 분포

구분		기업 수	비중 (%)
전 체		101	100
기업유형	대기업	5	5.0
	중견기업	20	19.8
	일반 중소기업	55	54.5
	벤처/INNO-BIZ 기업	21	20.8
주요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13.9
	도매 및 소매업	5	5.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4.0
	기타 서비스업	9	8.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5.9
	화학산업	18	17.8
	철강 및 금속산업	4	4.0
	전기전자산업	11	10.9
	기계산업	16	15.8
	기타제조업	14	13.9
거래국가 (복수응답)	미국	67	66.3
	중국	82	81.2
	유럽	58	57.4
	일본	60	59.4
	기타	45	44.6



주요 조사결과

- 제1절 지식재산 분쟁 현황
 - 제2절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 현황
 - 제3절 지식재산 침해 분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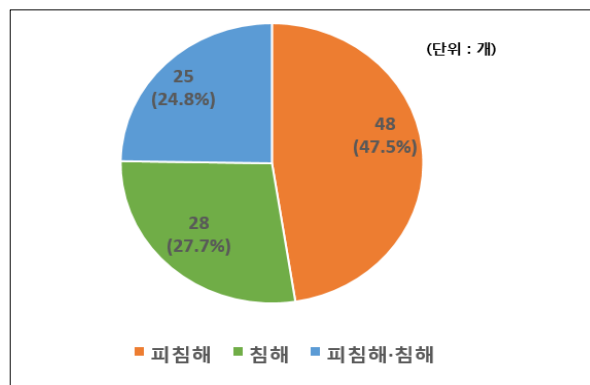
제1절

지식재산 분쟁 현황

I 분쟁유형 (침해, 피침해)

- 분쟁유형을 구분하면, 101개 기업 중 72.3%⁴⁾가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경우(피침해)로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경우(52.5%⁵⁾)보다 많음
- 101개 응답기업 중 25개 기업(24.8%)은 침해와 피침해를 모두 경험했다고 응답함
 - ※ ('14년 조사) 분쟁경험기업의 66.3%가 해외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로 피침해 비중(40.6%)보다 높게 나타남

| 그림 2-1 |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별 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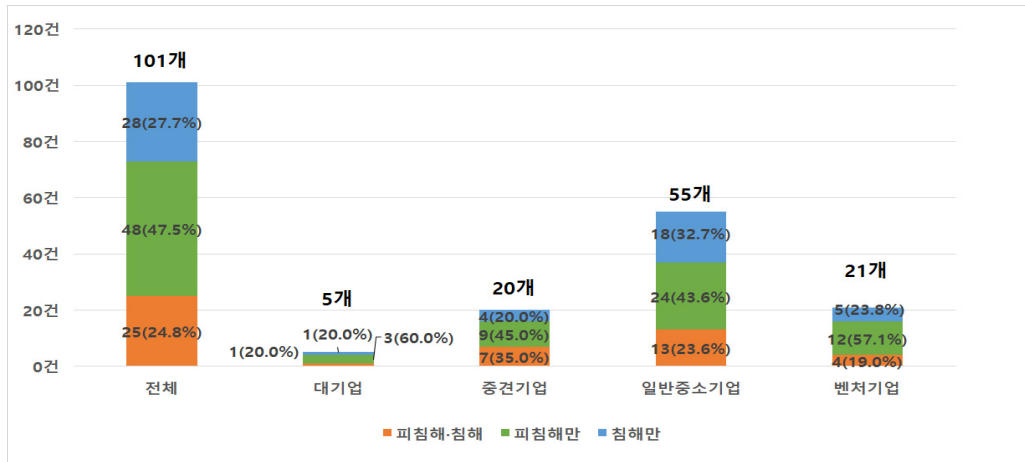


- (기업유형 별 분쟁유형)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면, 중견기업의 경우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80%로 중소기업(67.3%)과 벤처/이노비즈 기업(76.2%)의 경우보다 높음
-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침해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각각 55.0%, 56.4%, 42.9%로 비슷함

4) 피침해(47.5%)와 피침해·침해 비중(24.8%) 합산

5) 침해(27.7%)와 피침해·침해 비중(24.8%) 합산

|그림 2-2| 기업유형별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



- (산업별 분쟁유형) 산업을 구분하면, 침해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90.9%로 전체에서의 비중(52.5%)보다 높음
- 즉, 전자산업에서는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화학산업과 기타 제조업에서는 피침해 분쟁 발생 비중(각각 92.9%, 83.3%와 85.7%)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 주요 산업별 분쟁유형

구분		기업 수	비중 (%)	
			피침해	침해
전체		101	72.3	52.5
주요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92.9	14.3
	기타 서비스업	9	77.8	44.4
	화학산업	18	83.3	66.7
	전기전자산업	19	18.2	90.9
	기계산업	8	68.8	68.8
	기타제조업	13	85.7	35.7

II 세부 분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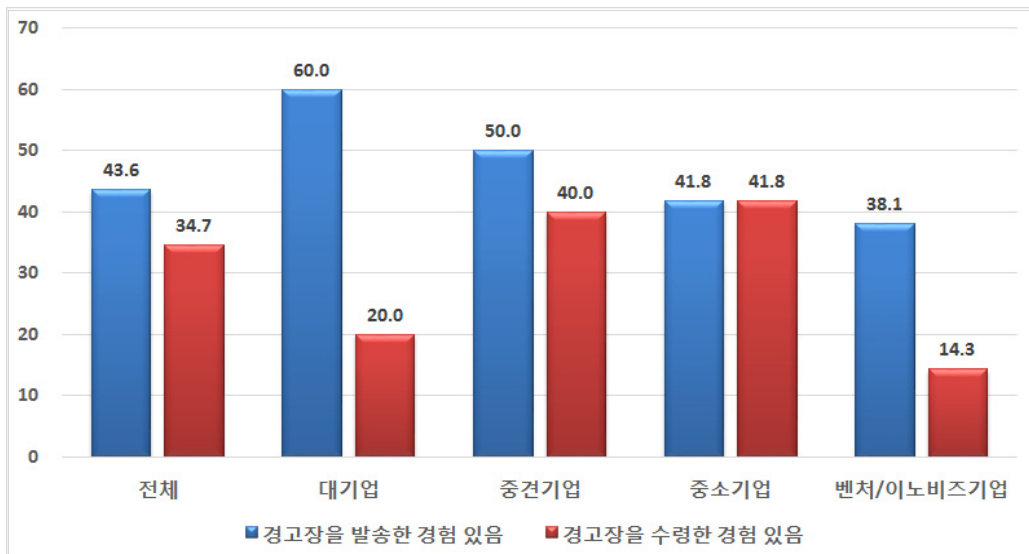
□ (경고장)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43.6%로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34.7%)보다 다소 높음

○ 경고장을 발송한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에서 가장 높고(60%), 중견기업(50.0%), 중소기업(41.8%), 벤처/이노비즈 기업(38.1%) 순임

○ 반면, 경고장을 수령한 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41.8%와 40%로 벤처 및 대기업에 비해 높은 비중

※ ('14년조사) 경고장 발송(30.7%), 수령(54.5%)

|그림 2-3| 경고장 수령/발송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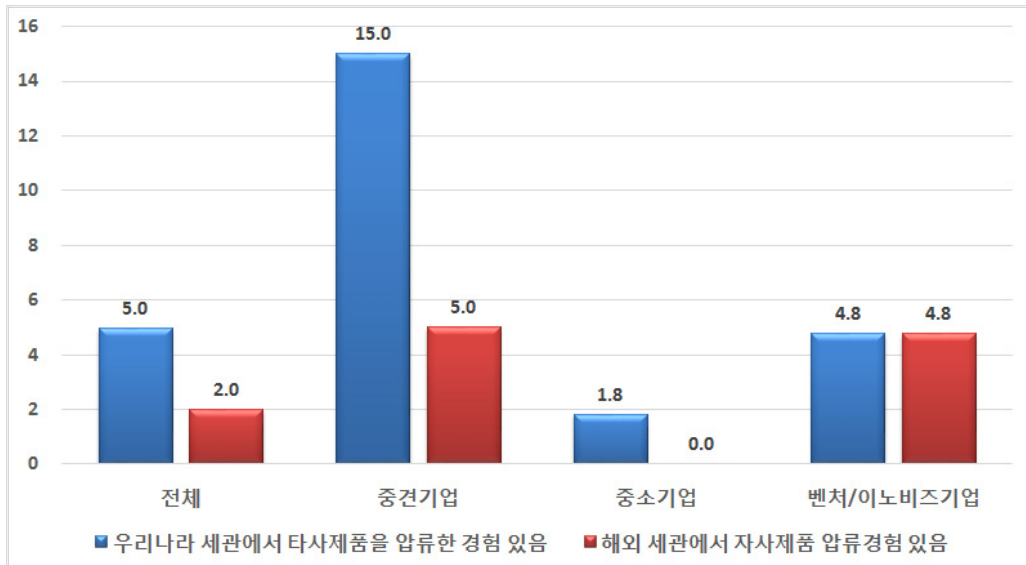


□ (국경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제품을 압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5%, 해외 세관에서 자사제품이 압류당한 비중은 2%로 낮은 비중을 보임

○ 중견기업의 경우 우리 세관에서 타사제품을 압류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15%로 타 기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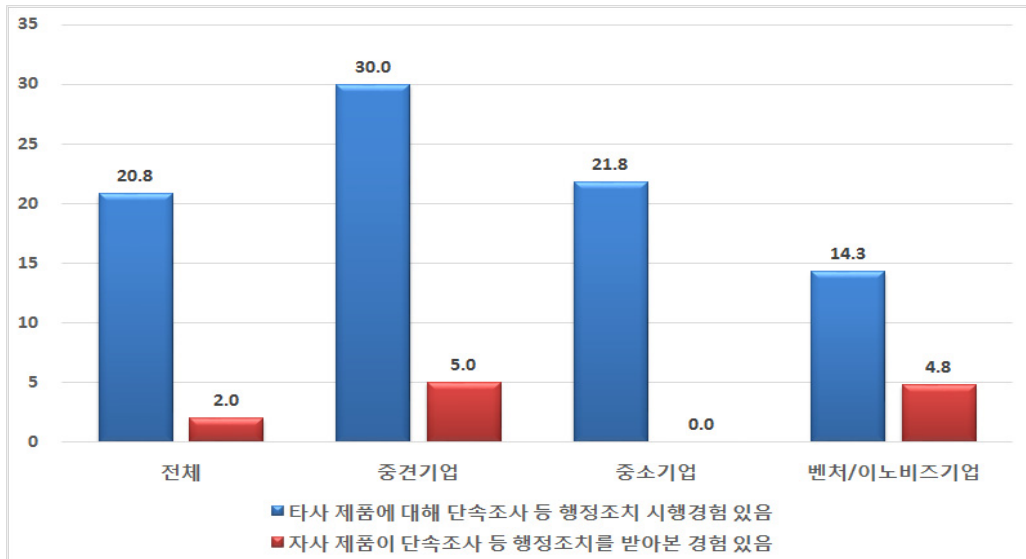
※ ('14년 조사)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제품 압류 2%, 해외 세관에서 자사제품이 압류 1%

| 그림 2-4 | 국경조치 경험 비율



- (행정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기업의 비중은 20.8%
 - 반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로 매우 낮음
 - ※ ('14년 조사) 타사제품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 17.8%, 자사제품이 행정조치를 받은 비중 4%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타사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에서 가장 높고(30%), 중소기업 21.8%, 벤처/이노비즈 기업 14.3%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5 | 행정조치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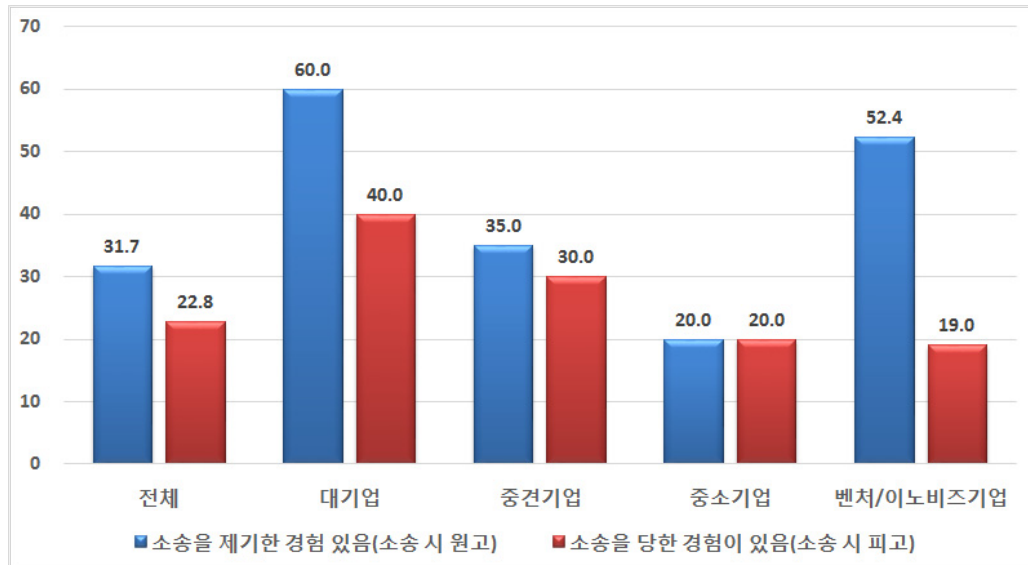


- (소송)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31.7%로 피소 비중(22.8%)보다 높음

※ ('14년 조사) 소송제기 24.8%, 피소 29.7%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소송을 제기한 경험은 대기업에서 가장 높고(60%), 벤처/이노비즈(52.4%), 중견기업(35%), 중소기업(20%) 순으로 나타남
- 피소 비중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40%와 30%로 타 기업유형에 비해 높음

| 그림 2-6 | 소송경험 비율



□ (전시회 분쟁) 분쟁기업 중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겪은 비중은 9.9%로 나타남

※ ('14년 조사) 전시회 분쟁 경험 비율 7.9%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전시회 분쟁을 겪은 비중은 중견기업의 15%로 중소기업 9.1%, 벤처/이노비즈 기업 9.5%에 비해 높음
- 전시회 분쟁을 겪은 비중은 화학산업에서 22.2%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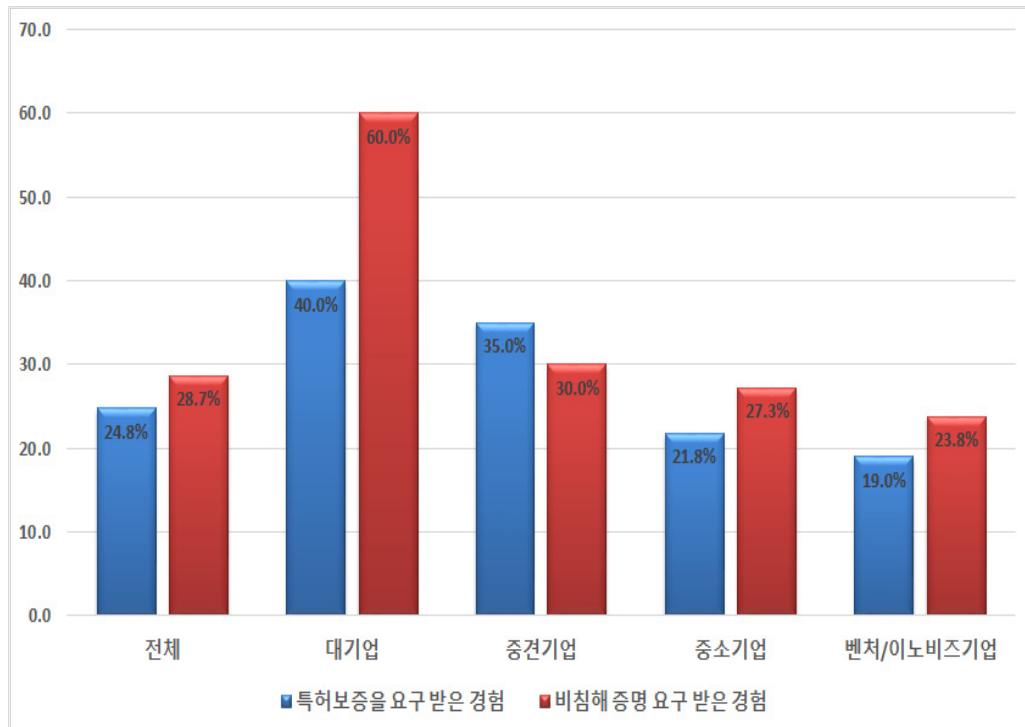
III 특허보증 관련 경험

□ 응답기업 중 최근 5년간 특허보증⁶⁾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4.8%,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명⁷⁾을 요구받은 비중은 28.7%로 나타남

※ ('14년 조사) 특허보증 요구받은 비율 15.8%,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명 14.9%

○ 대기업을 제외하면,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비중과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은 비중 모두 중견기업에서 가장 높음 (35%와 30%)

| 그림 2-7 | 기업유형별 특허 보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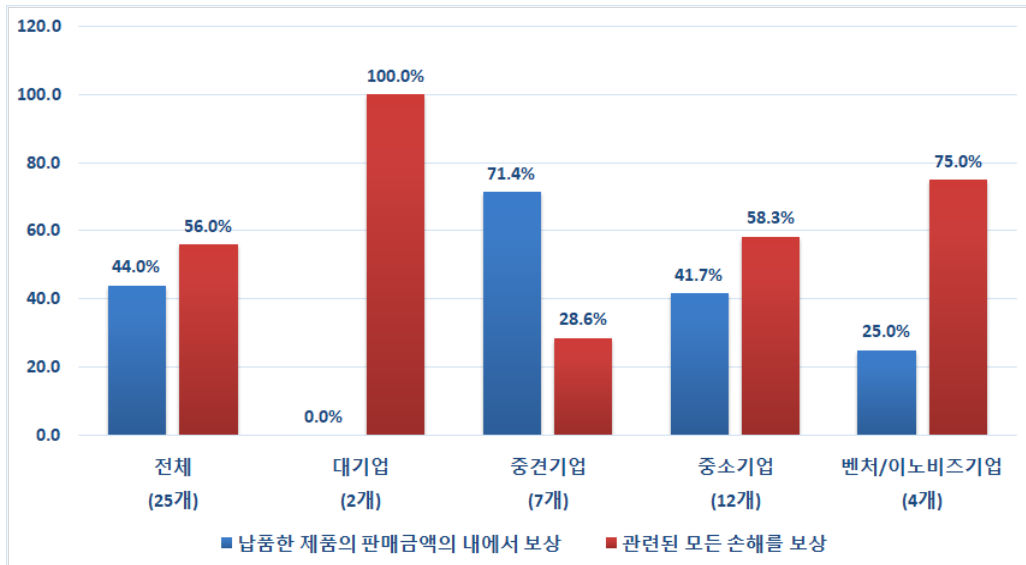
□ 산업을 구분하면,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비율은 화학산업(38.9%)에서, 비침해 증명을 요구받은 비중은 전기전자산업(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바이어에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

7) 바이어가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와 타 기업의 특허 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비율은 화학산업(38.9%), 전기전자산업(36.4%), 기타제조업과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30.8%) 순으로 높음
- 특허 침해 증명을 요구받은 비중은 전기전자산업(45.5%), 기계산업(37.5%), 화학산업과 기타서비스업(33.3%) 순으로 높음
- 이는 화학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에서 지재산 분쟁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함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은 미국이 56%로 가장 높고, 중국(48%), 유럽(40%), 일본(28%) 순임
 - ※ ('14년 조사) 특허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 미국(43.8%), 유럽(18.8%), 일본(18.8%), 중국(12.5%)
- 특허보증이 필요한 국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조사결과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중국에서 특허 침해로 인한 분쟁 증가로 인해 이를 통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보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향후 납품제품으로 인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금액 한도 없음)해야 하는 경우가 56%로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4%)보다 높았음
 - ※ ('14년 조사) 모든 손해를 보상 56.3%,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 43.8%
 - 중견기업의 경우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비중(71.4%)이 모든 손해를 보상(금액 한도 없음)하는 경우(28.6%)보다 높는데 반해,
 -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관련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각각 58.3%와 75%로 상대적으로 높아,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8| (특허보증을 요구 받은 경우) 계약(요구) 내용



IV 분쟁 기업의 IP보유 및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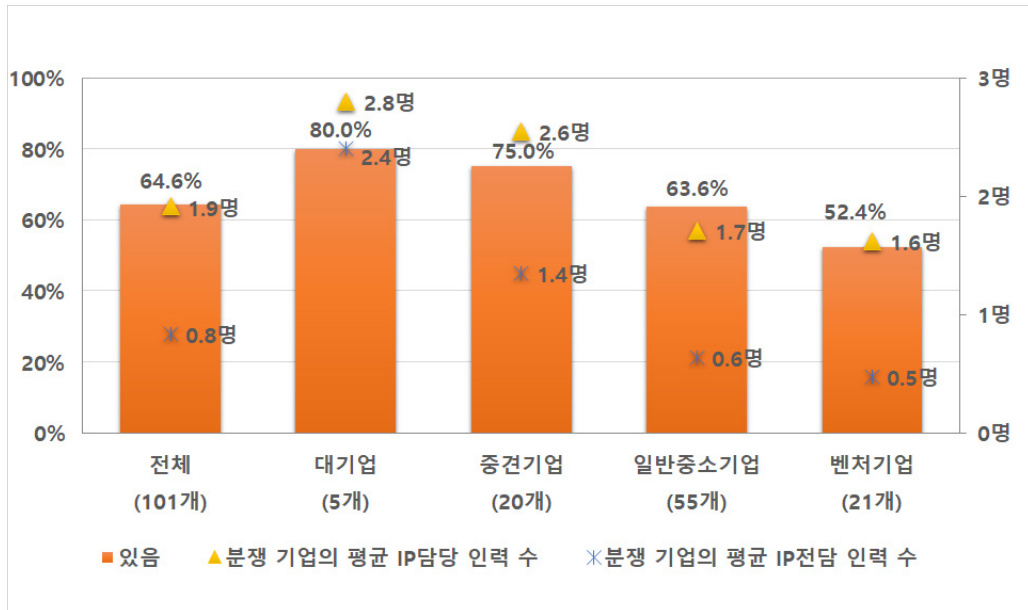
- (IP 담당부서 및 인력) 분쟁경험이 있는 기업 중 지식재산권 담당부서⁸⁾가 있는 비중은 64.6%, 평균 담당인력⁹⁾은 1.9명, 이 중 전담인력은 평균 0.8명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대기업(80.0%), 중견기업(75%), 일반중소기업(63.6%), 벤처/이노비즈 기업(52.4%) 순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평균 담당인력은 2.0명, 이 중 전담인력은 0.9명¹⁰⁾

8)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와 겸임부서 모두 포함

9) 산업재산권 담당부서, 인력: 산업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산업재산권 동향 조사, 특허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산업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

10) '14년 조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겸임부서 제외) 보유여부를 조사함

|그림 2-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재권 담당부서 및 인력



- (해외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101개 분쟁경험 기업의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한 비율은 [표 2-2]와 같음
 - 응답기업이 각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비율은 중국이 91.1%로 가장 높고, 미국(79.2%), 유럽(71.3%), 일본(70.3%), 기타국가(50.5%) 순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은 중국(60.4%), 일본(54.5%), 미국(53.5%), 유럽(42.6%)
 - 권리 유형을 구분하면 모든 국가에서 상표 보유비율이 특허/실용신안과 디자인 보유비율에 비해 높음
 -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이 높으나, 중국에서 특허/실용신안권 보유비율은 벤처기업이 57.1%로 중견기업(55.0%)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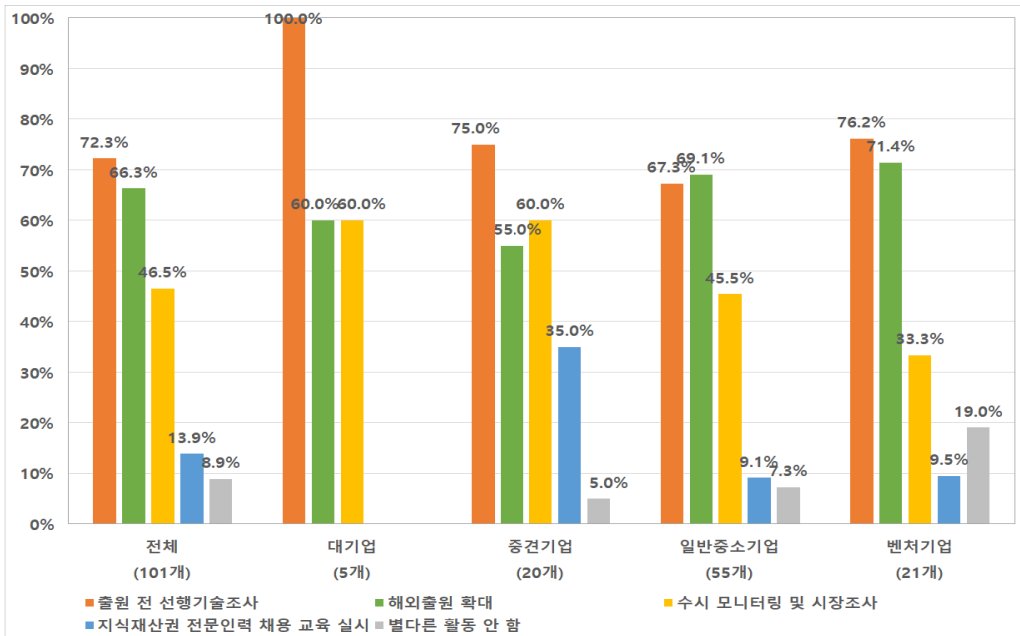
| 표 2-2 |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단위: %)

국가	유형	전체 (101개)	대기업 (5개)	중견기업 (20개)	중소기업 (55개)	벤처기업 (21개)
미국	산재권	79.2	100.0	100.0	70.9	76.2
	특허/실용신안	43.6	60.0	65.0	29.1	57.1
	상표	69.3	100.0	85.0	61.8	66.7
	디자인	27.7	60.0	30.0	29.1	14.3
중국	산재권	91.1	100.0	100.0	85.5	95.2
	특허/실용신안	46.5	80.0	55.0	36.4	57.1
	상표	75.2	100.0	90.0	69.1	71.4
	디자인	38.6	60.0	30.0	40.0	38.1
유럽	산재권	71.3	100.0	85.0	65.5	66.7
	특허/실용신안	34.7	60.0	50.0	23.6	42.9
	상표	59.4	100.0	70.0	56.4	47.6
	디자인	20.8	60.0	30.0	20.0	4.8
일본	산재권	70.3	100	90.0	58.2	76.2
	특허/실용신안	42.6	60.0	55.0	32.7	52.4
	상표	55.4	100.0	70.0	43.6	61.9
	디자인	18.8	60.0	25.0	14.5	14.3
기타	산재권	50.5	0.0	60.0	52.7	47.6
	특허/실용신안	18.8	0.0	30.0	12.7	28.6
	상표	39.6	0.0	45.0	41.8	38.1
	디자인	9.9	0.0	10.0	10.9	9.5

-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분쟁경험 기업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와 해외출원 확대를 선택한 비중이 각각 72.3%와 66.3%임
-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4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중견기업에서 그 비중(60.0%)이 높음
- 지재권 보호를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9%에 달하고, 특히 벤처기업에서 그 비중이 높음(19.0%)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대기업,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수행 비율이 타 활동에 비해 높은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외출원 확대비율이 높음

〈그림 2-10〉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V 지식재산 분쟁건의 권리유형 및 발생지역

- 최근 5년 사이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이 경험한 190건의 분쟁(피침해 123건, 침해 67건)에 대해 권리유형과 발생지역은 다음과 같음
 - 190건의 분쟁 중 50.5%가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기타국가와 미국이 각각 17.4%와 14.7%로 그 뒤를 이음
 -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분쟁건수가 107(56.3%)건으로 가장 많고, 중견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각각 39건(20.5%)과 35건(18.4%)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일반 중소기업 116건 (49.4%), 중견기업 83건 (35.3%) 순
 - 중소기업이 겪은 분쟁의 절반 이상(55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권리 유형을 구분하면 상표분쟁이 104건(54.7%)으로 가장 많고, 특허/실용신안 (30.5%), 디자인(9.5%), 미등록디자인 등 상품형태(4.2%)로 나타남

- 상표분쟁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빈번하고(64건), 특허분쟁의 경우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19건)가 가장 많음

| 표 2-3 | 분쟁발생 지역에 따른 전체 분쟁 건수

(단위: 건수, %)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체		190 (100)	28 (14.7)	96 (50.5)	21 (11.1)	12 (6.3)	33 (17.4)
기업유형	대기업	9 (4.7)	2 (1.1)	3 (1.6)	1 (0.5)	0 (0)	3 (1.6)
	중견기업	39 (20.5)	2 (1.1)	21 (11.1)	4 (2.1)	4 (2.1)	8 (4.2)
	일반 중소기업	107 (56.3)	19 (10)	55 (28.9)	11 (5.8)	5 (2.6)	17 (8.9)
	벤처/INNO-BIZ 기업	35 (18.4)	5 (2.6)	17 (8.9)	5 (2.6)	3 (1.6)	5 (2.6)
권리유형	특허/실용신안	58 (30.5)	19 (10)	16 (8.4)	11 (5.8)	5 (2.6)	7 (3.7)
	상표	104 (54.7)	8 (4.2)	64 (33.7)	7 (3.7)	2 (1.1)	23 (12.1)
	디자인	18 (9.5)	0 (0)	13 (6.8)	3 (1.6)	2 (1.1)	0 (0)
	영업비밀	2 (1.1)	0 (0)	1 (0.5)	0 (0)	0 (0)	1 (0.5)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8 (4.2)	1 (0.5)	2 (1.1)	0 (0)	3 (1.6)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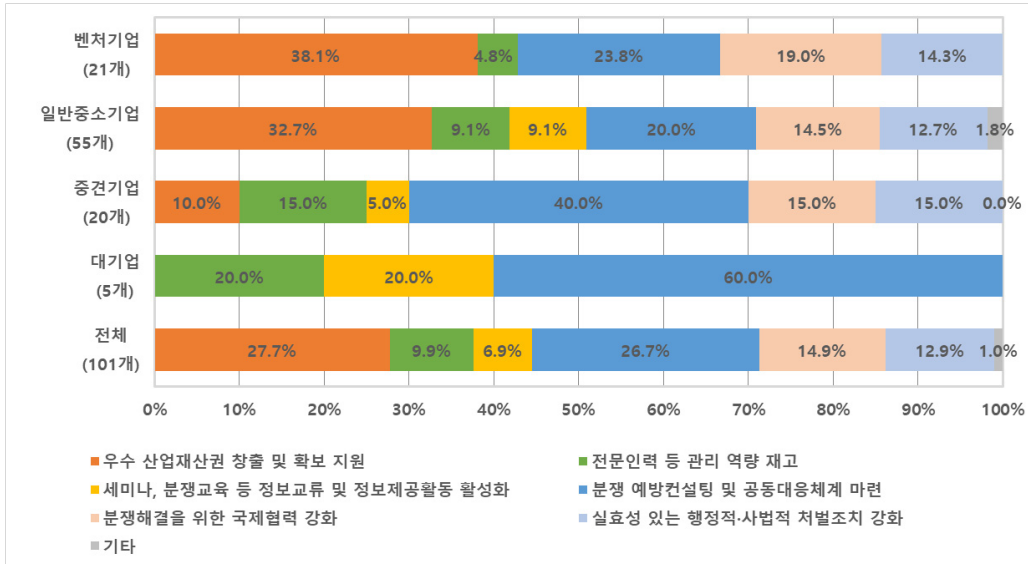
* 괄호 안은 전체 분쟁 190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VI 관련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 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지원과 분쟁 예방 컨설팅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 필요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이 각각 27.7%와 26.7%로 높음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0%와 40%로 가장 높음

○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는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지원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이 각각 32.7%와 38.1%로 가장 높아, 기업 유형별 차이를 보임

[그림 2-11] 기업유형별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정부 요청 사항(1순위)



□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지재권 보호 관련 사업

[표 2-4]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지재권 보호 관련 사업(복수응답)

(단위: %)

	전체 (101개)	대기업 (5개)	중견기업 (20개)	일반 중소기업 (55개)	벤처 기업 (21개)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	60.4	60.0	60.0	56.4	71.4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50.5	40.0	55.0	41.8	71.4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19.8	40.0	25.0	14.5	23.8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10.9	0.0	15.0	10.9	9.5
NPE 소송알림 서비스	5.9	20.0	10.0	1.8	9.5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19.8	20.0	20.0	14.5	33.3
해외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45.5	0.0	60.0	41.8	52.4
없음	6.9	20.0	0.0	9.1	4.8

-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및 해외 지식재산 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0.4%, 50.5%, 45.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NPE 소송알림 서비스(5.9%), 동종기업 간 협의체 지원사업(10.9%)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알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6.9%로 나타나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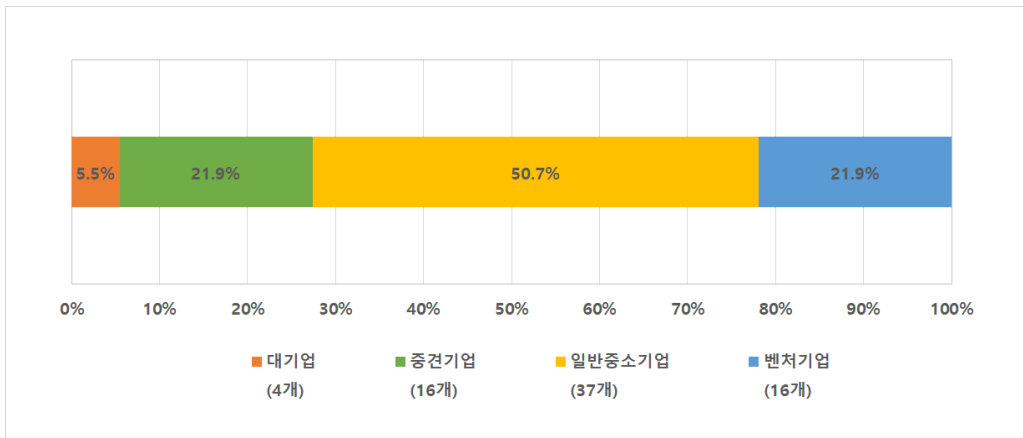
제2절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 현황

I 피침해 분쟁 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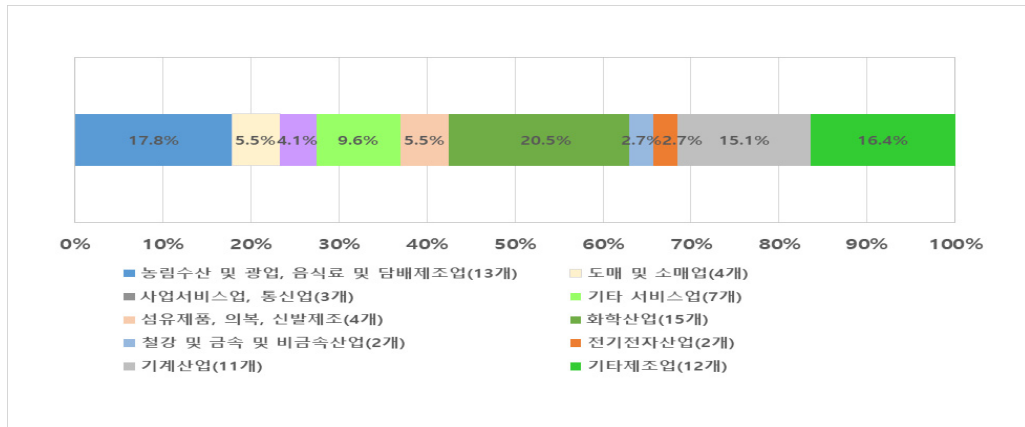
- (기업유형) 최근 5년간 지식재산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73개 기업(72.3%)이 피침해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
- 피침해 경험이 있는 73개 기업 중 지식재산 관리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비중은 7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14년 조사) 피침해 기업 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비중은 63.5%

| 그림 2-12 | 피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



- (산업분류) 피침해 분쟁 기업의 업종은 화학산업과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이 각각 20.5%(15개)와 17.8%(13개)로 높은 비중
- 기타제조업(12개), 기계산업(11개), 기타서비스업(7개)이 그 뒤를 이음

|그림 2-13| 피침해 분쟁 기업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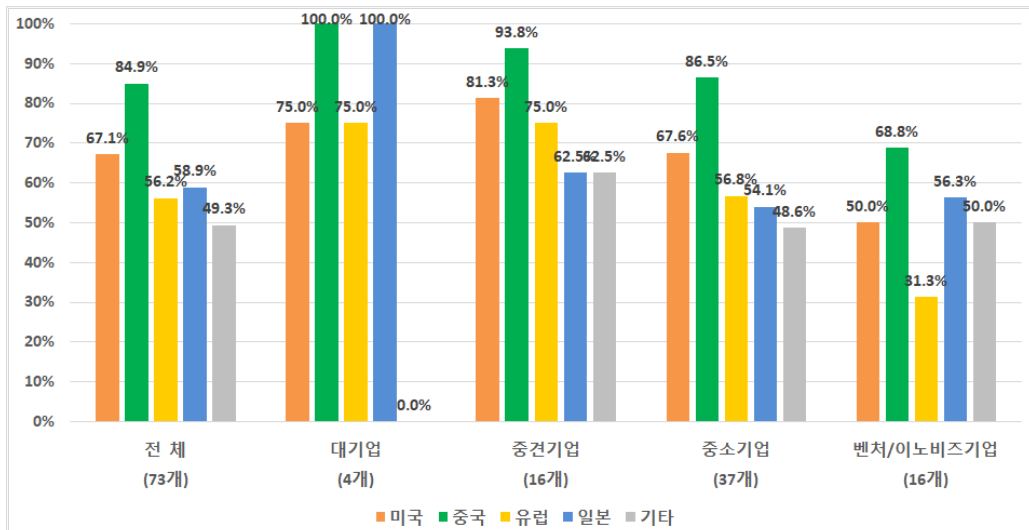


□ (거래국가) 73개 피침해 분쟁기업의 거래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인 경우가 각각 84.9%, 67.1%, 58.9% 순으로 나타남

※ ('14년 조사)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82.9%로 가장 많고, 미국 70.7%, 유럽 61.0%, 일본 53.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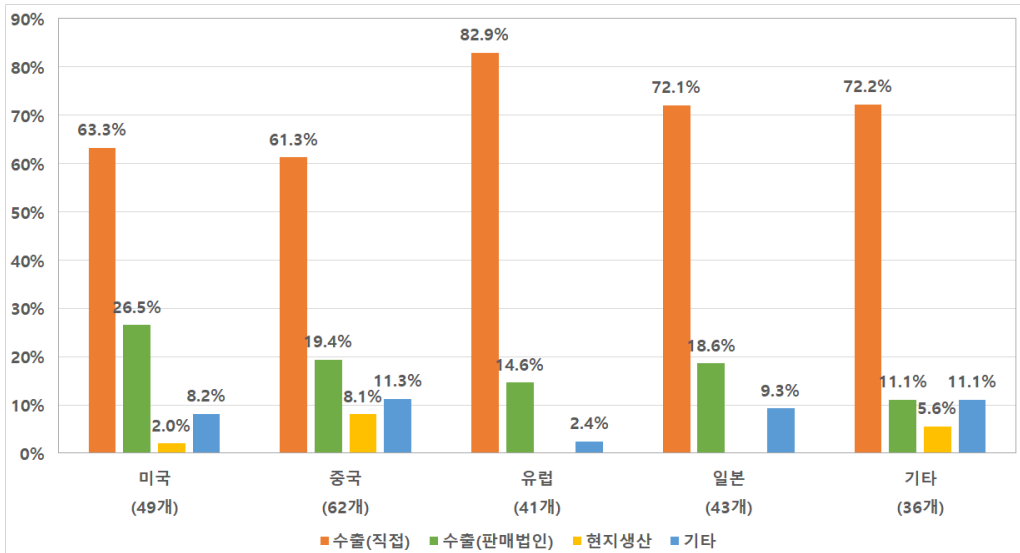
○ 거래국가가 중국인 경우는 모든 기업 유형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4| 피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국가(복수응답)



- (사업형태) 피침해 분쟁기업의 사업형태를 직접수출,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 현지생산으로 구분하면,
 - 직접 수출인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유럽에서의 비중이 높음(82.9%)
 -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인 경우는 거래국가가 미국인 경우의 26.5%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 현지 생산의 형태는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지만, 거래국가가 중국과 기타국가인 경우 각각 8.1%와 5.5%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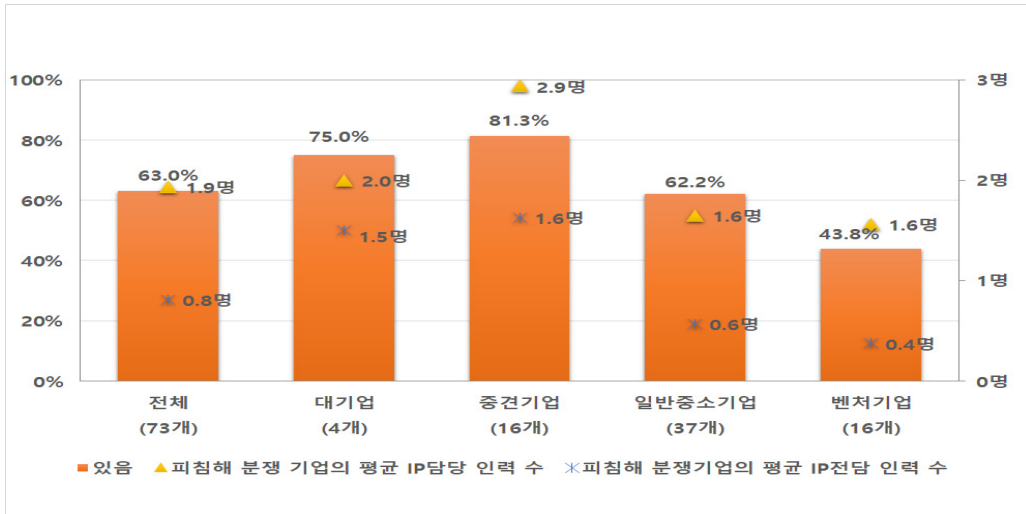
[그림 2-15] 피침해 분쟁 기업의 거래국가별 사업형태(복수응답)



II 피침해 분쟁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

- (담당부서 및 인력) 피침해 분쟁기업 중 산업재산권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비중은 63%, 평균 담당 인력 수는 1.9명(평균 전담인력 0.8명)으로 나타남

[그림 2-16] 피침해 분쟁기업의 IP담당부서 및 관리인력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담당부서 보유비율은 각각 62.2%와 43.8%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 평균 담당인력 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2.9명으로 일반 중소기업(1.6명)과 벤처기업(1.6명)에 비해 많음
-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피침해 분쟁기업 중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비중은 중국의 경우 93.2%로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80.8%와 74.0%로 그 뒤를 이음
- 특허/실용신안을 등록한 비중은 미국 41.1%, 중국 42.5%, 일본 41.1%로 비슷한 반면, 상표를 등록한 비중은 중국에서 84.9%로 타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임
- ※ ('14년 조사) 피침해 분쟁 기업이 중국, 미국, 일본에서 산재권을 등록한 비중은 각각 80.5%, 65.9%, 63.4%

- 중견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비중이 각각 100%, 100%, 81.3%, 93.8%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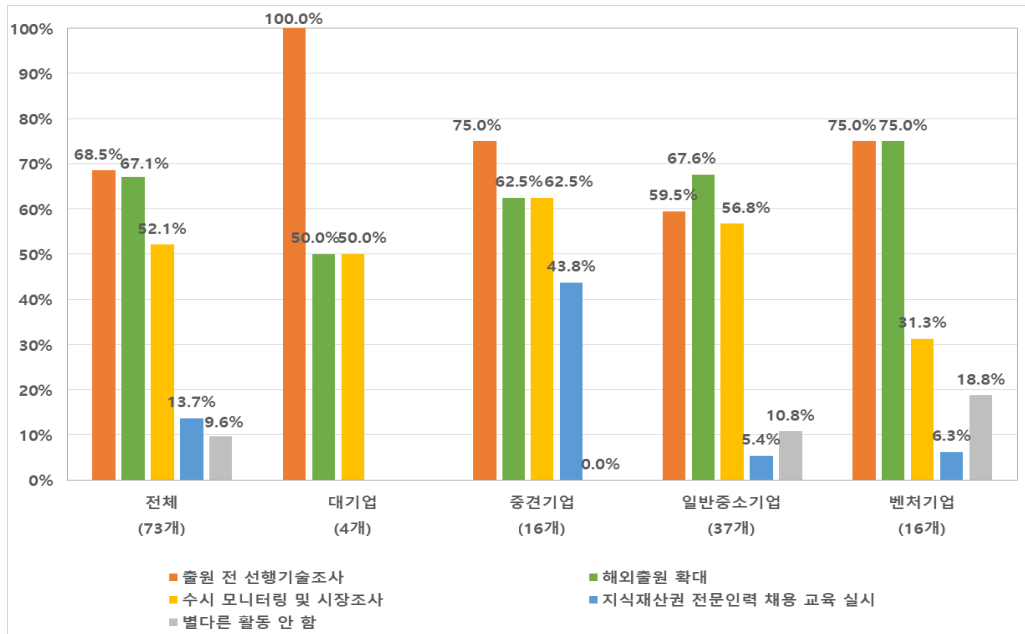
| 표 2-5 | 피침해 분쟁기업의 국가별 산재권 보유 비율

(단위: %)

국가	유형	전체 (73개)	대기업 (4개)	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37개)	벤처기업 (16개)
미국	산재권	80.8	100.0	100.0	73.0	75.0
	특허/실용신안	41.1	50.0	68.8	21.6	56.3
	상표	63.8	100.0	87.5	67.6	68.8
	디자인	31.5	50.0	37.5	32.4	18.8
중국	산재권	93.2	100.0	100.0	89.2	93.8
	특허/실용신안	42.5	75.0	56.3	27.0	56.3
	상표	84.9	100.0	93.8	81.1	81.3
	디자인	43.8	50.0	37.5	48.6	37.5
유럽	산재권	68.5	100.0	81.3	62.2	62.5
	특허/실용신안	31.5	50.0	50.0	18.9	37.5
	상표	60.3	100.0	68.8	56.8	50.0
	디자인	23.3	50.0	37.5	21.6	6.3
일본	산재권	74.0	100.0	93.8	59.5	81.3
	특허/실용신안	41.1	50.0	56.3	24.3	62.5
	상표	63.0	100.0	75.0	51.4	68.8
	디자인	21.9	50.0	31.3	16.2	18.8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분쟁 예방 활동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와 해외출원 확대를 선택한 비중은 각각 68.5%와 67.1%로 타 활동에 비해 높음
- 반면,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3.7%로 낮은 편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43.8%로 타 기업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음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피침해 분쟁기업의 9.6%, 특히 벤처기업의 18.8%를 차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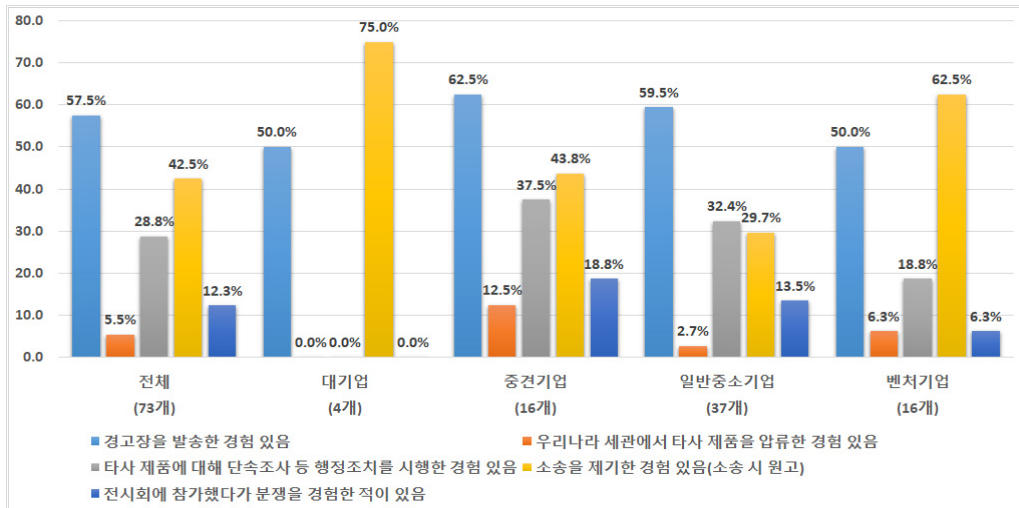
[그림 2-17] 피침해 분쟁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Ⅲ 피침해 분쟁기업의 세부 분쟁유형

- 73개 피침해 분쟁기업이 최근 5년간 경험한 분쟁 유형은 [그림 2-18]과 같음
 -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각각 57.5%와 42.5%로 높고, 타사 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28.8%로 그 뒤를 이음
 - ※ ('14년 조사) 경고장 발송(75.6%), 소송(61.0%),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43.9%)
 -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경고장을 발송한 비율은 중견기업에서 높고(62.5%),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각각 75.0%, 62.5%)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 제품을 압류(12.5%)하거나 타사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비율(37.5%)은 중견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높음

[그림 2-18] 피침해 분쟁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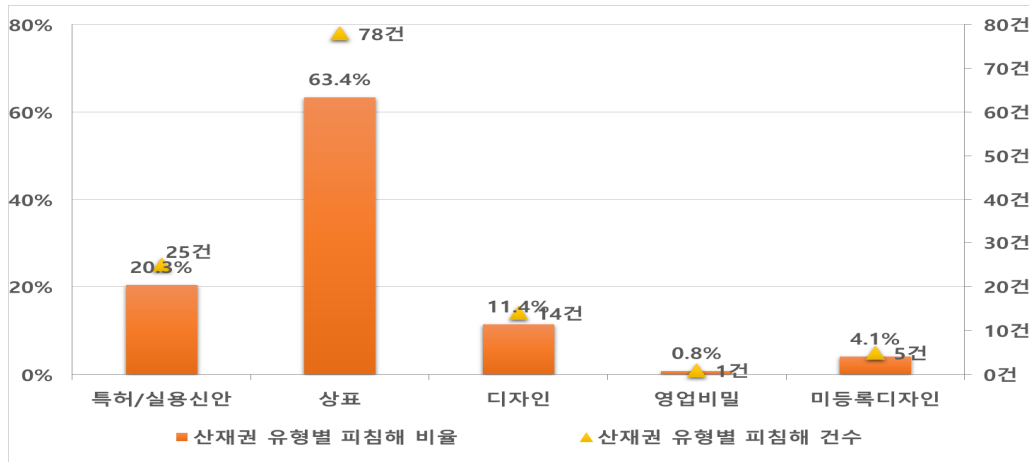


IV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본 조사에서는 각 피침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기업(73개 기업) 당 피침해 분쟁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사건 3건까지 해당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123건의 피침해 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사되었음.

- (권리유형)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상표분쟁이 78건(63.4%)으로 가장 빈번
 -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25건(20.3%), 디자인 분쟁은 14건(11.4%)
 - ※ ('14년 조사) 피침해 분쟁 중 상표, 특허, 디자인 분쟁 비중은 각각 65.7%, 22.4%, 11.9%
 -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와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각각 5건과 1건으로 조사됨

|그림 2-19| 피침해 분쟁 사건의 권리유형 비율 및 건수



□ (권리유형 별 피침해 분쟁 발생국가) 피침해 분쟁 123건 중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이 51건(41.5%)으로 가장 많음

※ ('14년 조사)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비중은 60.3%,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은 45.8%

○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특허분쟁이 상표분쟁 빈도보다 적지 않은 반면, 중국과 기타국가의 경우는 상표분쟁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표 2-6| 피침해 분쟁의 발생국가 및 권리유형

단위: (건수(%))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23 (100)	7 (5.7)	78 (63.4)	9 (7.3)	5 (4.1)	24 (19.5)
권리유형	특허/실용신안	25 (20.3)	3 (2.4)	12 (9.8)	4 (3.3)	3 (2.4)	3 (2.4)
	상표	78 (63.4)	3 (2.4)	51 (41.5)	3 (2.4)	2 (1.6)	19 (15.4)
	디자인	14 (11.4)	-	12 (9.8)	2 (1.6)	-	-
	영업비밀	1 (0.8)	-	1 (0.8)	-	-	-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4.1)	1 (0.8)	2 (1.6)	-	-	2 (1.6)

* 괄호 안은 피침해 분쟁 123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 (기업유형 및 업종별 피침해 분쟁 발생국가) 중소, 중견, 벤처기업 모두 중국에서 피침해 발생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음
- 피침해 분쟁 중 일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8%(76건)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일반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건수는 46건(37.4%), 중견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건수는 18건(14.6%)로 높은 비중
 - ※ ('14년 조사) 중견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비중은 32.8%로 가장 높은 비중
- 피침해 분쟁 건에서 기업의 업종은 기타제조업이 20.3%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과 화학산업이 각각 18.7%, 기계산업 13.8%, 기타 서비스업 11.4% 순으로 나타남

표 2-7 | 기업유형 및 업종별 피침해 분쟁 발생국가

단위: (건수(%))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체		123 (100)	7 (5.7)	78 (63.4)	9 (7.3)	5 (4.1)	24 (19.5)
기업유형	대기업	4 (3.3)	-	2 (1.6)	-	-	2 (1.6)
	중견기업	23 (18.7)	0 (0)	18 (14.6)	0 (0)	0 (0)	5 (4.1)
	일반중소기업	76 (61.8)	7 (5.7)	46 (37.4)	6 (4.9)	4 (3.3)	13 (10.6)
	벤처/이노비즈기업	20 (16.3)	-	12 (9.8)	3 (2.4)	1 (0.8)	4 (3.3)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3 (18.7)	2 (1.6)	16 (13)	2 (1.6)	-	3 (2.4)
	도매 및 소매업	6 (4.9)	-	4 (3.3)	-	-	2 (1.6)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2.4)	-	2 (1.6)	-	-	1 (0.8)
	기타 서비스업	14 (11.4)	-	7 (5.7)	-	1 (0.8)	6 (4.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7 (5.7)	-	6 (4.9)	-	-	1 (0.8)
	화학산업	23 (18.7)	2 (1.6)	15 (12.2)	1 (0.8)	-	5 (4.1)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2.4)	-	3 (2.4)	-	-	-
전기전자산업	2 (1.6)	-	2 (1.6)	-	-	-
기계산업	17 (13.8)	1 (0.8)	8 (6.5)	3 (2.4)	3 (2.4)	2 (1.6)
기타제조업	25 (20.3)	2 (1.6)	15 (12.2)	3 (2.4)	1 (0.8)	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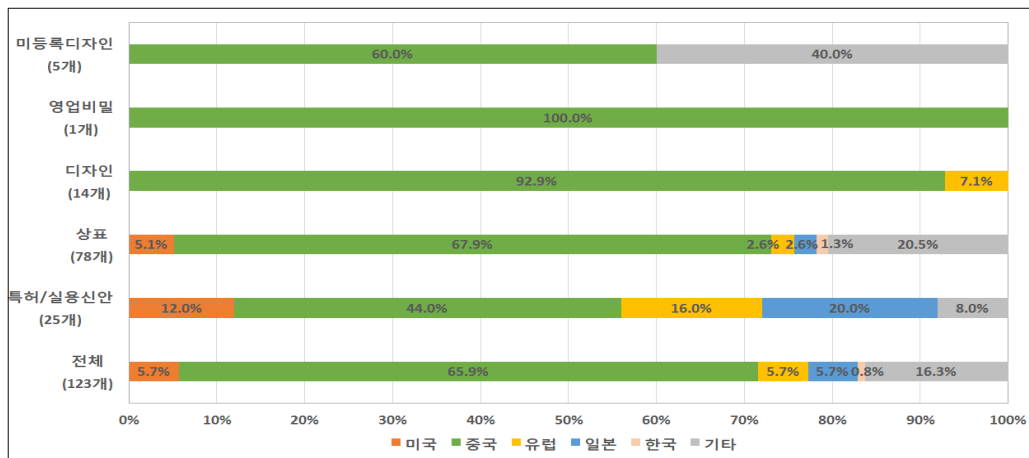
* 괄호 안은 피침해 분쟁 123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 (침해기업의 본사 소재지) 피침해 분쟁 시 상대기업(침해기업)의 국적은 65.9%가 중국으로 가장 많고, 기타 국가도 16.3%를 차지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모두 중국에서의 분쟁 비중이 높지만, 특허/실용신안 피침해 분쟁의 경우 타 권리유형에 비해 상대기업의 국적이 중국 외 타 국가(일본, 유럽, 미국)인 비중이 각각 20%, 16%, 12%로 타 권리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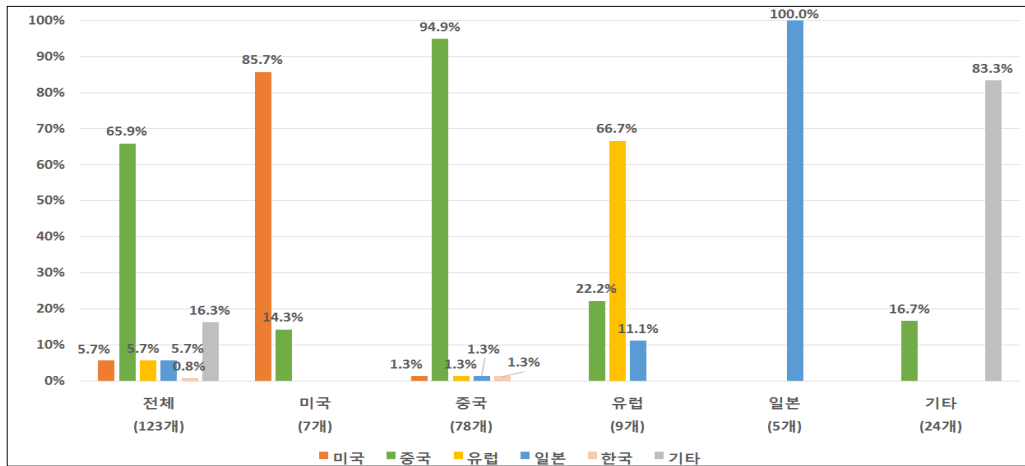
※ ('14년 조사) 침해기업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는 58.2%로 가장 높음

그림 2-20 | 피침해 분쟁의 권리유형별 상대기업의 본사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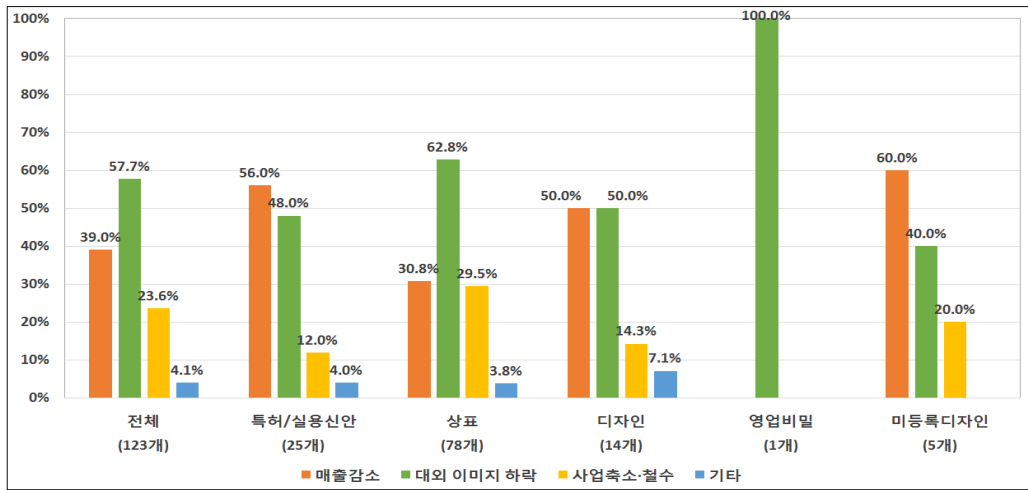
- (분쟁발생 국가별 상대기업의 국적)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상대기업은 중국기업이 대다수(94.9%)를 차지
- 미국과 유럽, 기타국가에서 발생한 피침해 분쟁의 상대기업이 중국 국적인 경우도 각각 14.3%, 22.2%, 16.7%로 타 국가에서도 중국기업에 의한 지재산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21 | 피침해 분쟁발생 지역별 상대기업의 국적



- (권리유형별 피해형태) 123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피해형태는 대외 이미지 하락 (57.7%)과 매출 감소(39.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14년 조사) 피해형태는 대외이미지 하락(64.2%), 매출감소(44.8%)
- 피침해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해당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이러한 피해는 특히 상표 분쟁에서 비중이 높음(29.5%)
 - ※ ('14년 조사) 피해형태로 사업철수 및 축소를 꼽은 비중은 4.5%
- 피해형태가 매출감소라고 응답한 비중은 특허/실용신안 분쟁에서의 56%로 상표 및 디자인 분쟁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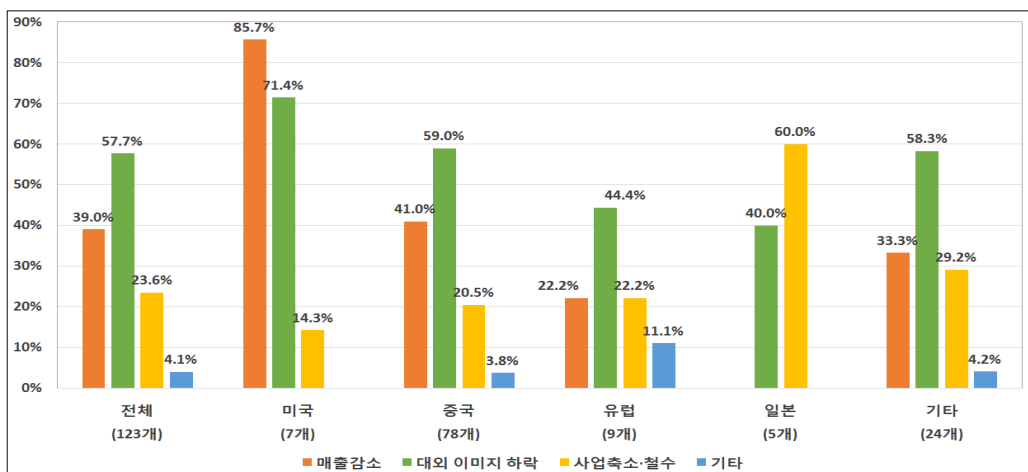
| 그림 2-22 | 권리 유형별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 (분쟁발생 지역별 피해형태) 피침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형태는 분쟁이 발생한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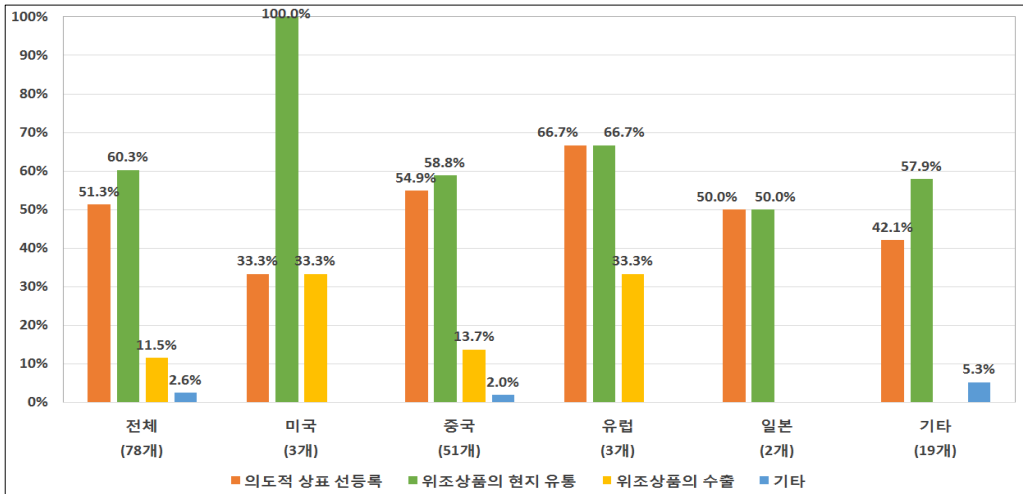
- 중국과 유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외 이미지 하락이 주요 피해형태로 나타났으나(각각 59.0%, 44.4%), 미국에서 피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매출감소(85.7%)가 가장 큰 피해형태로 나타남
- 일본에서 발생한 피침해 분쟁의 경우 사업축소 및 철회의 비중이 60%로 타 국가에서 발생한 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2-23 |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 (상표권인 경우, 피해형태)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권리유형이 상표권인 사건 78건에 대해, 그 피해형태를 세분화함

| 그림 2-24 | 분쟁발생 지역별 상표권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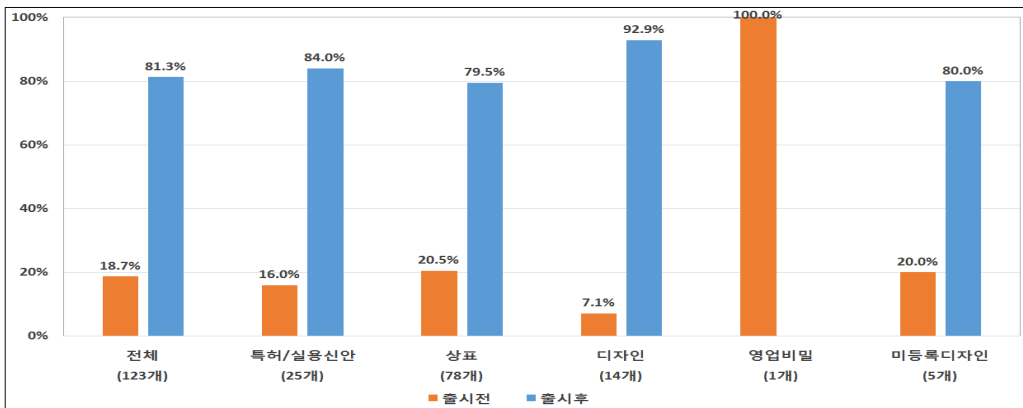
○ 상표권 분쟁의 경우 피해형태가 위조상품의 현지유통과 의도적 상표 선 등록인 경우가 각각 60.3%와 51.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14년 조사)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61.4%), 의도적 상표권 선등록(36.4%)

□ (피해시점) 123건의 피침해 분쟁의 피해시점은 제품 출시 후가 81.3%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제품 출시 전에 유출된 경우도 18.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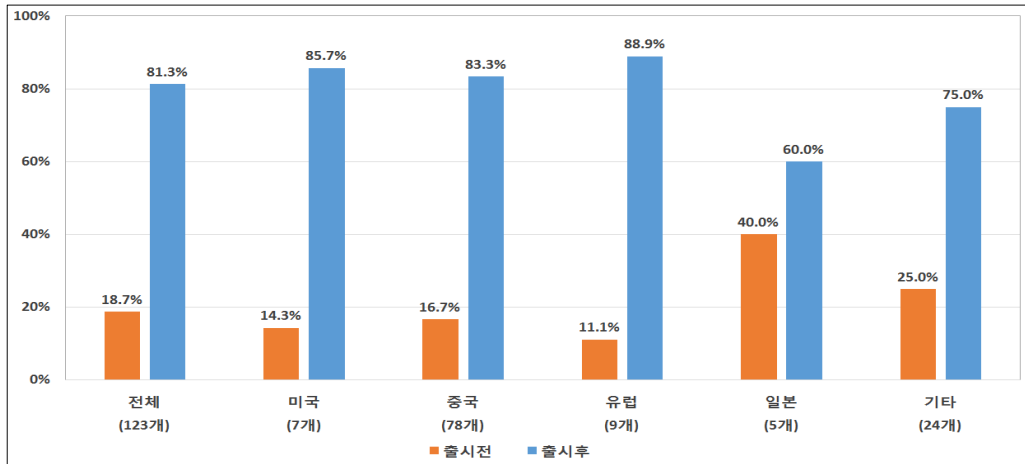
※ ('14년 조사) 피해시점이 제품 출시 전인 경우는 3.0%

| 그림 2-25 | 권리유형별 피해시점



- 분쟁 발생국가 별 피해시점을 보면, 제품 출시 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일본(40%)과 기타 국가(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그림 2-26 |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피해시점



- 123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시장조사 과정(48%)에서와 거래처의 신고(27.6%)로 피침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거래처의 신고(47.8%), 시장조사 과정(28.4%)
- 시장조사 과정에서 피침해를 인지한 비중이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자사제품의 피침해를 탐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 가능
- 소비자의 신고로 피해를 인지한 비중은 이전 조사(1.5%)에 비해 크게 증가한 10.6%로 나타났고, 특히 상표 피침해에서의 비중이 12.8%로 높음

그림 2-27 | 권리유형별 피침해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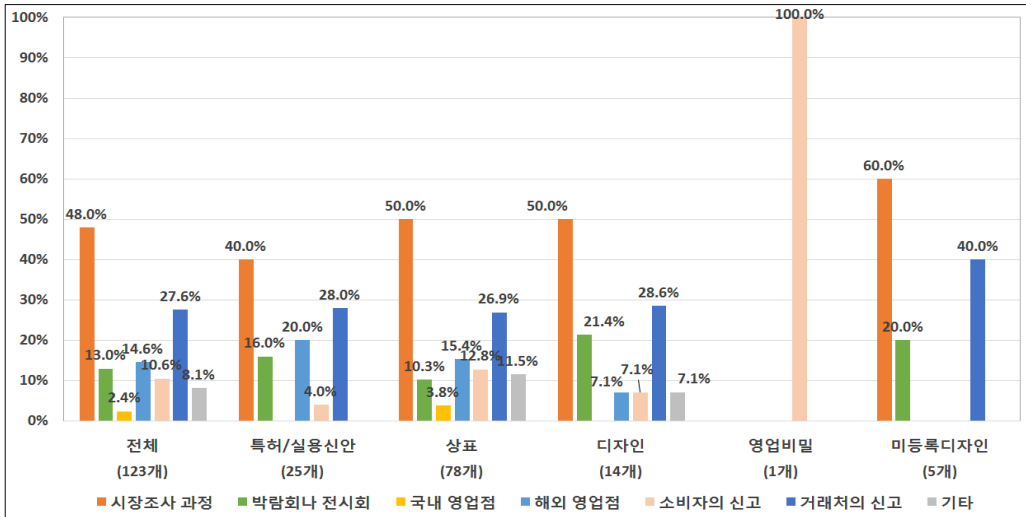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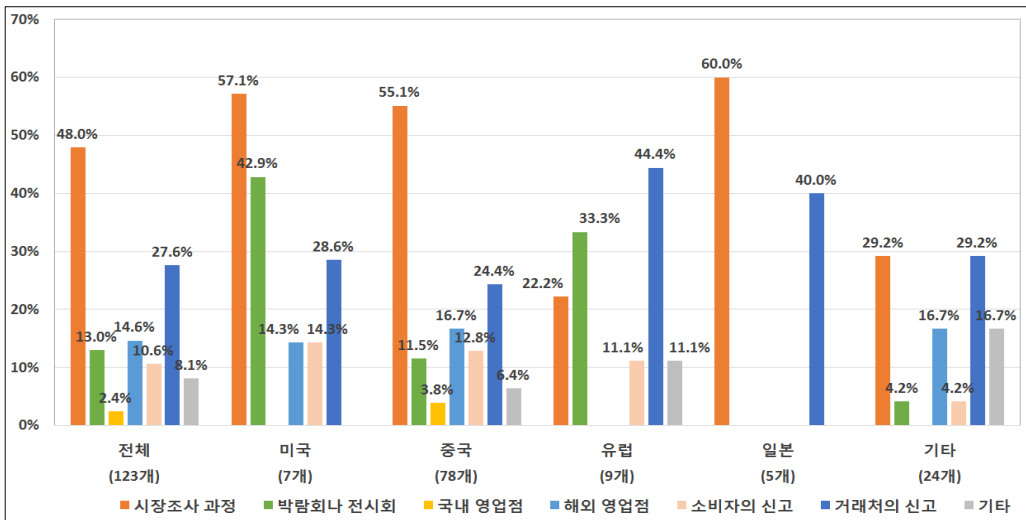


그림 2-28 |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인지 경로



- 분쟁발생 지역을 구분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시장조사 과정에서와과 거래처의 신고로 피침해를 인지한 비중이 높음 (각각 57.1%, 55.1%, 60.0%)
- 유럽의 경우 거래처의 신고로 인지한 경우(44.4%)와 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 인지한 경우(33.3%)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럽에서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피침해 탐지를 위한 적극적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피해 규모: 자사손실액) 피침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119건의 평균 자사손실액(기대수익 손실 포함)¹¹⁾은 약 4억 8천만원으로 집계됨 (자사손실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106건)의 평균은 약 5억 4천만원)

※ ('14년 조사) 피침해 분쟁 42건의 평균 자사손실액은 약 1억 9천만원

○ 권리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 피침해 시 자사손실액은 평균 9억 4백만원으로 상표(4억 7백만원) 및 디자인(1억 5천 3백만원) 피침해 분쟁 손실액과 큰 차이를 보임

○ 발생국가 별로는 피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의 자사손실액이 평균 14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평균 6억 천만원), 중국(평균 5억원), 기타국가(평균 2억 2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2-8】 피침해 분쟁 피해규모(자사손실액)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4~6천만원	8~10천만원	1~2억원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19	13	24	7	6	2	23	44	480.2	
권리 유형	특/실	23	3	4	2	0	0	5	9	903.8
	상표	76	9	19	1	4	2	12	29	406.6
	디자인	14	1	0	4	2	0	5	2	152.9
	영업비밀	1	0	0	0	0	0	0	1	500.0
	상품형태	5	0	1	0	0	0	1	3	562.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6	0	2	0	0	0	1	3	1,436.7
	중국	76	7	15	4	5	2	16	27	496.0
	유럽	8	0	0	1	0	0	3	4	610.1
	일본	5	1	1	1	0	0	1	1	147.0
	기타	24	5	6	1	1	0	2	9	217.1

* 자사손실액이 1천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건은 제외함

□ (피해 규모: 손해배상금, 합의금)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손해배상금¹²⁾ 및 합의금¹³⁾을 수령한 경우는 각각 6건(4.9%)과 12건(9.8%)으로 나타남

11)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액

12)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기업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13)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 종결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6건) 중 특허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상표권 분쟁이었으며 6건에 대한 평균 배상액은 6억 6천만원으로 집계됨
- (합의금)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12건)는 특허 2건, 디자인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상표권 분쟁이었으며 12건에 대한 평균 합의금은 약 2억 7천만원으로 집계됨
- (대응비용) 피침해 분쟁 123건 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103건 (84%)이고, 평균 대응비용¹⁴⁾은 약 5천 5백만원으로 집계됨
 - ※ ('14년 조사) 61건 피침해 분쟁에서의 총 대응비용은 약 9천만원

【표 2-9】 피침해 분쟁 대응비용(총 대응비용)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4~6천만원	8~10천만원	1~2억원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03	58	18	9	1	7	10	54.7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19	4	4	1	0	3	7	151.8
	상표	69	42	13	8	0	3	3	35.4
	디자인	11	10	1	0	0	0	0	6.7
	영업비밀	1	0	0	0	0	1	0	150.0
	상품형태	3	2	0	0	1	0	0	28.3
분쟁 발생 지역	미국	5	1	0	1	0	2	1	109.8
	중국	64	39	13	5	0	2	5	43.9
	유럽	9	2	2	1	0	0	4	167.8
	일본	4	2	1	0	0	1	0	55.5
	기타	21	14	2	2	1	2	0	25.8

- 권리 유형으로 구분하면, 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비용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평균 1억 5천 2백만원으로, 상표(평균 3천 5백만원), 디자인(평균 6.7백만원)에 비해 많음
- 분쟁발생 국가를 구분하면, 분쟁이 유럽에서 발생한 경우의 평균 대응비용은 1억 6천 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미국(평균 1억 천만원), 일본(평균 5천 6백만원), 중국(평균 4천 4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14)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침해조사비용, 법률 자문비용(경고장 발송, 소송 자문 포함), 소송비용 등

□ (대응비용 중 소송비용)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39건(32%)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소송비용이 발생한 39건에 대한 평균 소송비용은 평균 8천만원으로 조사됨
 - ※ ('14년 조사)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8건)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5천만원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실용신안 분쟁 시 소송비용은 평균 1억 5천 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표(5천 7백만원)가 그 뒤를 이음
- 분쟁 발생 지역으로 구분 시, 유럽에서의 분쟁 시 평균 소송비용은 2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본(9천 5백만원), 중국(7천만원), 미국(5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2-10】 피침해 분쟁 대응비용(소송비용)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4~6천만원	8~10천만원	1~2억원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39	16	8	5	0	4	6	80.4
권리 유형	특/실	11	3	1	1	0	2	4	155.0
	상표	23	10	7	2	0	2	2	57.3
	디자인	2	2	0	0	0	0	0	2.1
	영업비밀	1	0	0	1	0	0	0	50.0
	상품형태	2	1	0	1	0	0	0	29.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3	0	2	0	0	1	0	49.9
	중국	23	12	5	2	0	1	3	69.9
	유럽	4	0	1	0	0	0	3	230.0
	일본	2	1	0	0	0	1	0	95.0
	기타	7	3	0	3	0	1	0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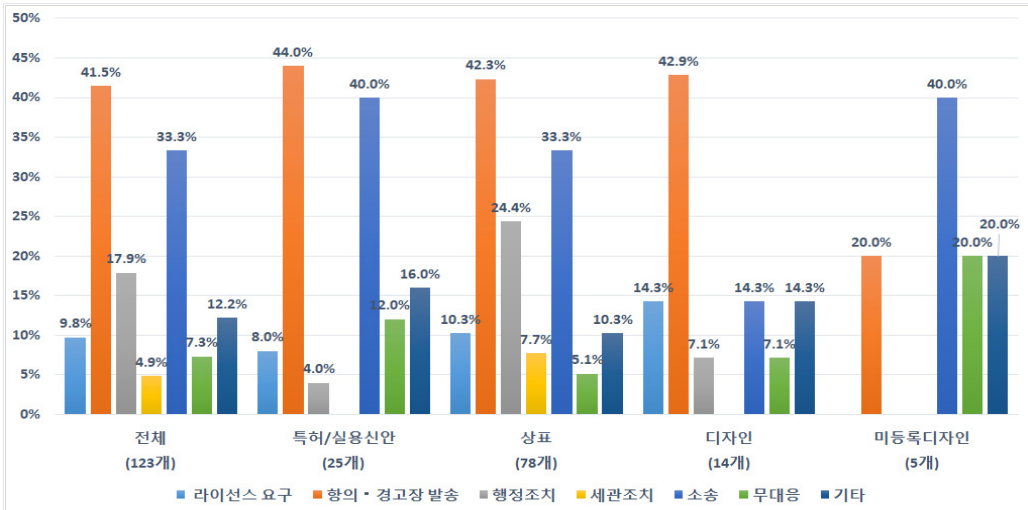
□ (피침해 대응활동) 123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취한 대응은, 항의·경고장 발송이 41.5%로 가장 많고, 소송(33.3%), 행정조치(17.9%), 라이선스 요구(9.8%) 순임

※ ('14년 조사)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35.8%), 행정조치(32.9%), 무대응(1.5%)

- 자사 지식재산이 침해되었을 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비중이 7.3%에 달하고, 특히 특허/실용신안 및 미등록 디자인 분쟁에서의 무대응 비중(12%, 20%)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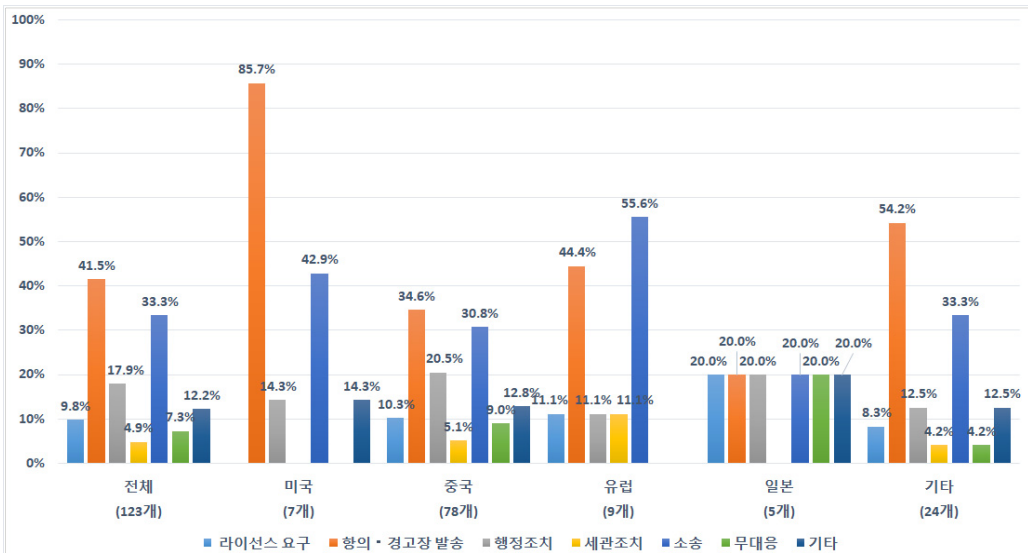
-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특허/실용신안(40%)과 미등록디자인(40%)의 경우 타 권리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고, 행정조치를 취한 비중은 상표 분쟁(24.4%)에서 높음

| 그림 2-29 | 권리유형별 피침해 대응 활동 (복수응답)



- 피침해 대응활동은 분쟁 발생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항의·경고장을 발송한 비율이 85.7%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음

| 그림 2-30 | 발생국가별 피침해 대응 활동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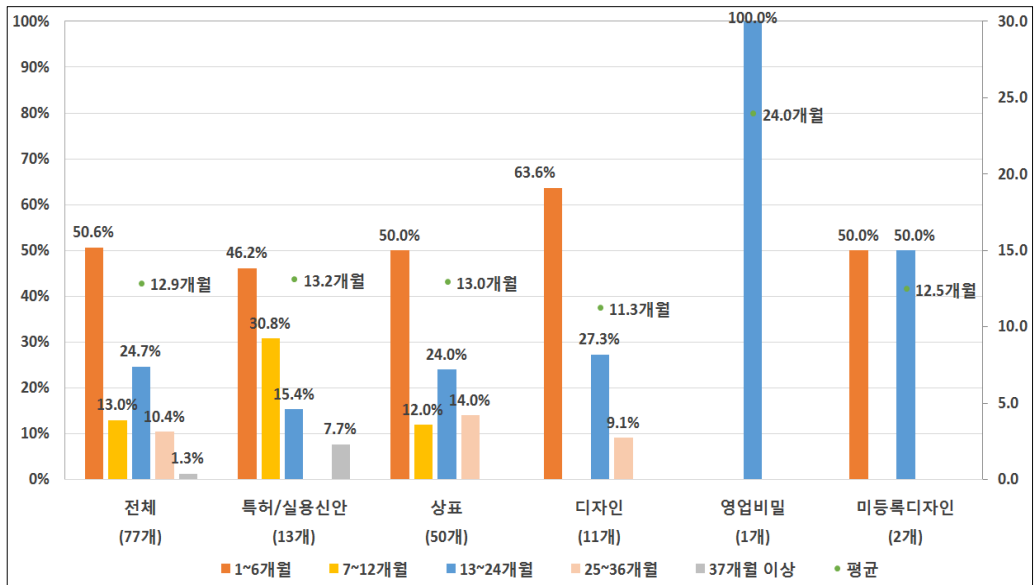


□ (분쟁기간: 종결사건)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조사시점에 분쟁이 종결된 사건은 77건이고, 이 경우 평균 분쟁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나타남

※ ('14년 조사) 종결된 피침해 분쟁 33건의 평균 분쟁기간은 10.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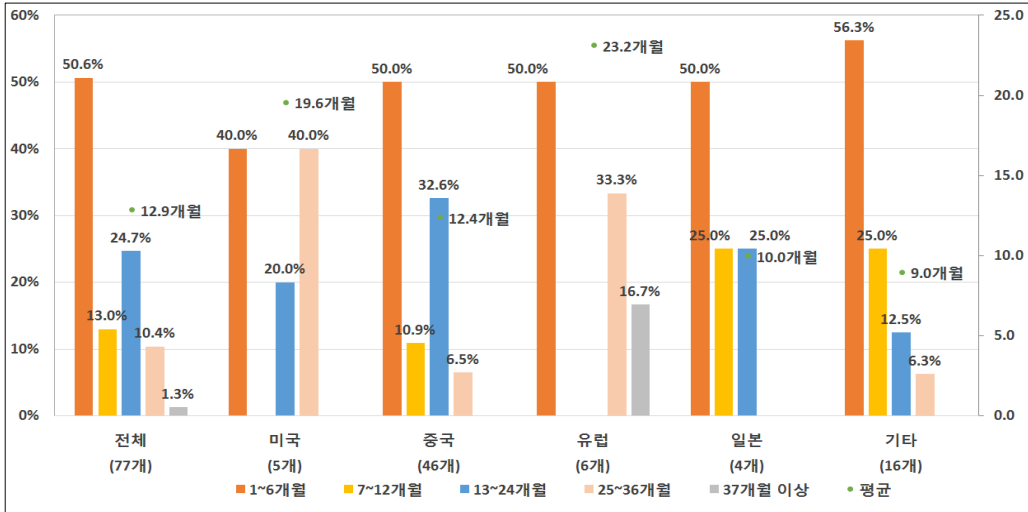
- 전체의 50.6%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었고, 2년 초과인 경우는 11.7%를 차지함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실용신안 분쟁기간이 13.2개월, 상표 13개월, 디자인 11.3개월 순으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31] 권리유형별 피침해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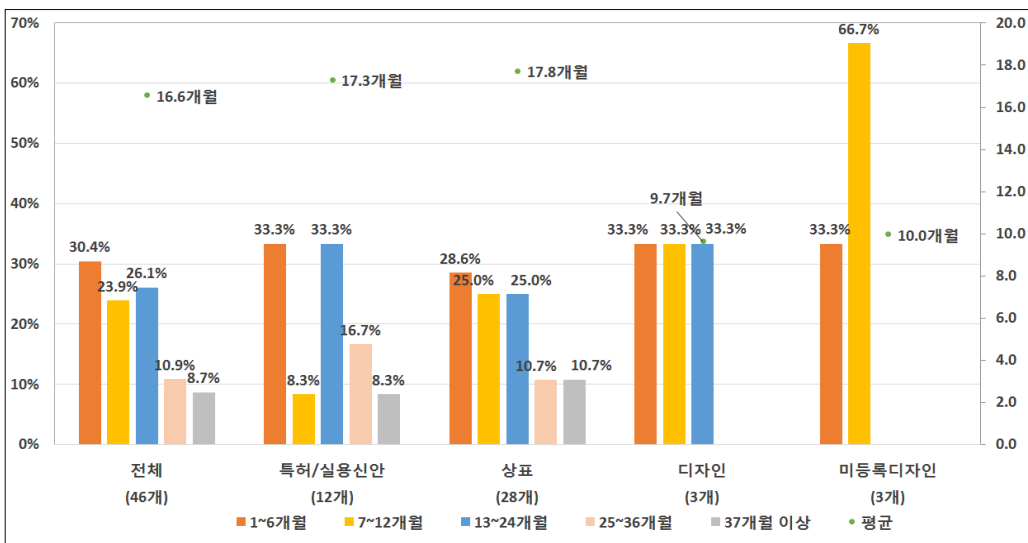
- 분쟁 발생국가를 구분하면, 유럽의 경우 23.2개월로 가장 길고, 미국 19.6개월, 중국 12.4개월, 일본 10개월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2|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 (분쟁기간: 진행사건)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조사시점에 분쟁이 진행 중인 46건을 보면, 평균 16.6개월 동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0.4%의 피침해 분쟁이 비교적 최근(6개월 이내)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33| 권리유형별 피침해 분쟁 기간(진행 중인 경우)



□ (분쟁 종결형태) 123건의 피침해 분쟁은 시장진입 저지로 종결된 경우가 29건 (23.6%)으로 가장 많음

※ ('14년 조사) 소송 진행 중(29.9%), 시장진입저지(14.9%)

【표 2-11】 피침해 분쟁 종결 형태(복수응답)

(단위: 비중(%))

구분	협상			시장 진입 저지	소송				무대응	기타	
	합의금, 손배금 수령	라이선 스 체결	협상 진행 중		소송 승소	소송 패소	소송 취하	소송 진행 중			
전 체 (123건)	8.1	7.3	9.8	23.6	14.6	4.9	4.1	10.6	17.9	12.2	
권리 유형	특허/실용 (25건)	12.0	12.0	16.0	0.0	4.0	8.0	8.0	20.0	16.0	20.0
	상표 (78건)	7.7	6.4	6.4	32.1	19.2	2.6	3.8	7.7	17.9	7.7
	디자인 (14건)	0.0	7.1	0.0	28.6	7.1	7.1	0.0	7.1	21.4	21.4
	영업비밀 (1건)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상품형태 (5건)	0.0	0.0	40.0	0.0	0.0	20.0	0.0	20.0	20.0	20.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7건)	14.3	14.3	42.9	0.0	28.6	0.0	0.0	0.0	14.3	28.6
	중국 (78건)	6.4	6.4	6.4	24.4	16.7	2.6	3.8	10.3	21.8	11.5
	유럽 (9건)	11.1	0.0	11.1	11.1	22.2	11.1	0.0	33.3	0.0	11.1
	일본 (5건)	20.0	20.0	0.0	20.0	0.0	0.0	20.0	0.0	40.0	0.0
	기타 (24건)	8.3	8.3	12.5	33.3	4.2	12.5	4.2	8.3	8.3	12.5

○ 피침해 분쟁 중 15.4%는 협상으로 종결되었고, 협상 결과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종결된 경우는 8.1%, 라이선스 체결로 종결된 경우는 7.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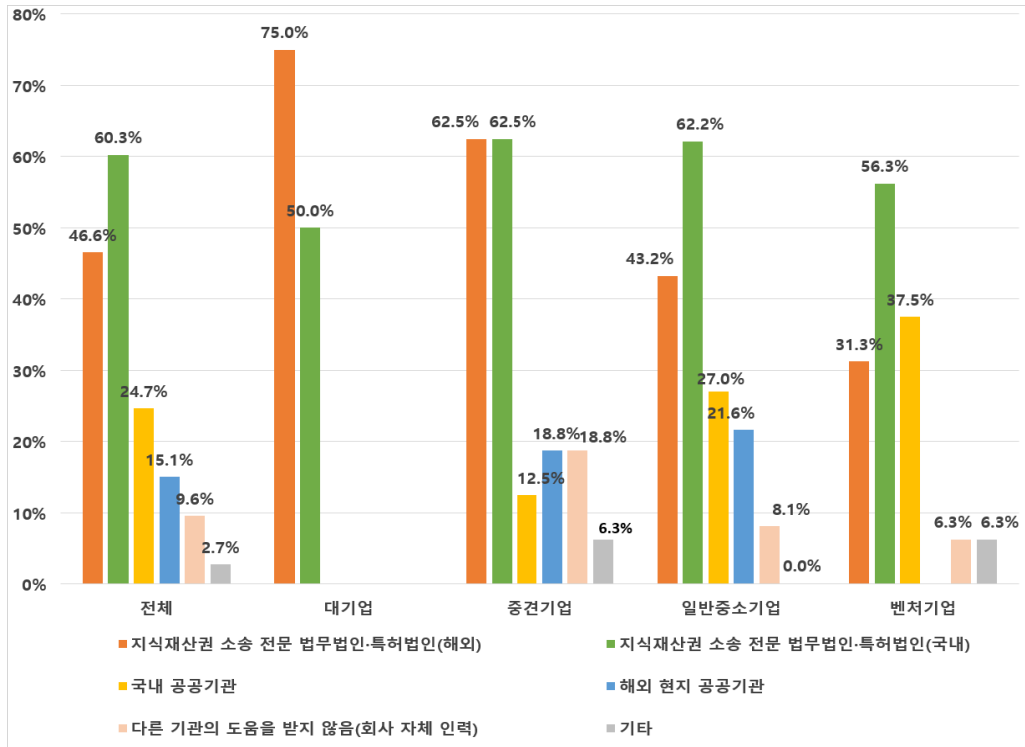
○ 피침해 분쟁 중 23.6%는 소송으로 종결되었고, 소송 승소는 14.6%, 패소는 4.9%, 소송 취하는 4.1%로 나타남

- 조사시점에서 협상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9.8%와 10.6%임
- 이 밖에 소송비용 부담, 인력부족으로 인해 피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비중도 17.9%에 달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 분쟁에서의 비중이 각각 21.4%와 20.0%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상표 피침해 분쟁의 경우 시장진입 저지를 통해 종료된 비중이 32.1%로 타 권리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 특허/실용신안 피침해 분쟁의 경우 타 권리유형에 비해 협상으로 종결(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수령, 라이선스 체결)되거나, 소송 및 협상이 진행 중인 비중이 높음

V 피침해 분쟁기업의 대응전략 및 애로사항

-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전문 법무특허법인(국내 60.3%, 해외 46.6%)에 관련 업무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국내 법무·특허법인 61.0%, 해외 법무·특허법인 46.3%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24.7%이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응한 경우는 9.6%로 나타남
- 대기업은 국내보다 해외 법무·특허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비중이 높음(75%)
- 국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27%)과 벤처기업(37.5%)에서 비중이 높음

|그림 2-34| 피침해 분쟁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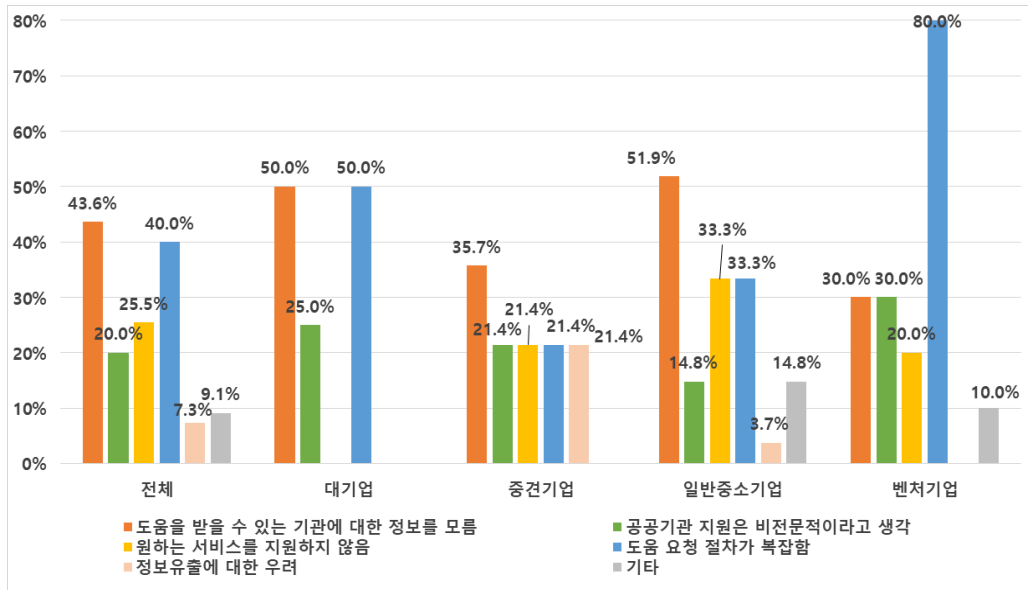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모름(43.6%), 절차가 복잡함(40%)을 선택한 비중이 높음

※ ('14년 조사) 기관 정보를 모름(43.8%), 도움요청 절차 복잡(21.9%)

○ 이 밖에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인 비중도 7.3%를 차지함

○ 특히, 중소기업의 51.9%가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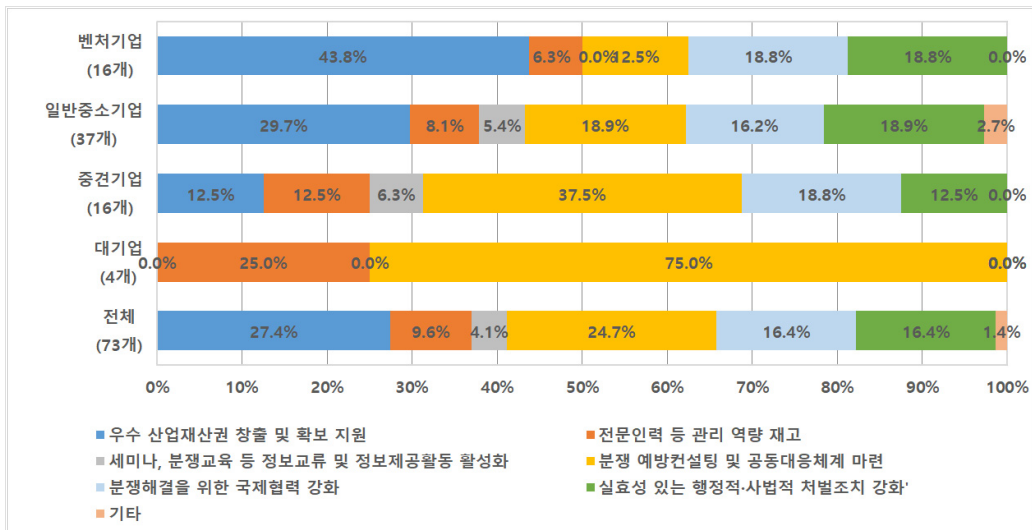
| 그림 2-35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VI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및 사업으로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지원과 분쟁예방 컨설팅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각각 27.4%와 24.7%로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36] 피침해 분쟁 기업의 정부 요청 사항(1순위)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꼽은 비중이 75%로 높고,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3.8%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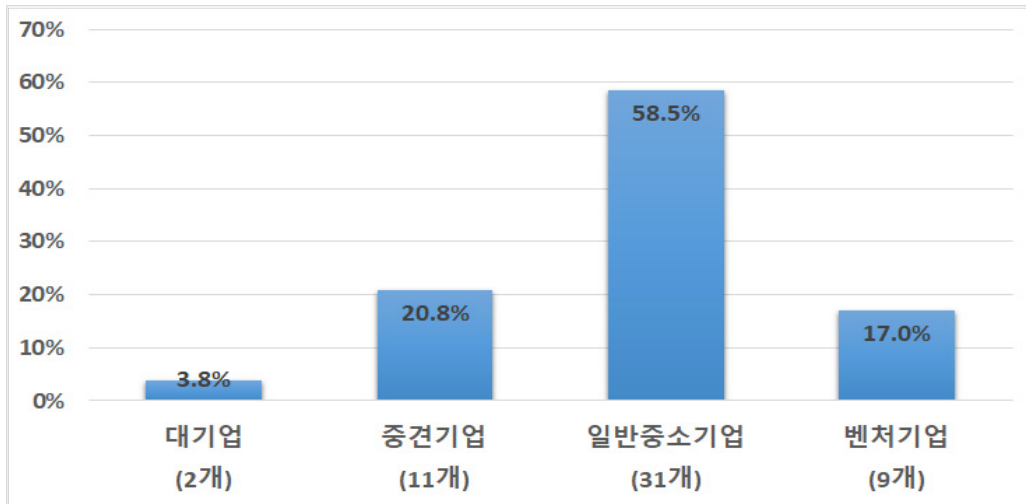
제3절

지식재산 침해 분쟁 현황

I 침해 분쟁 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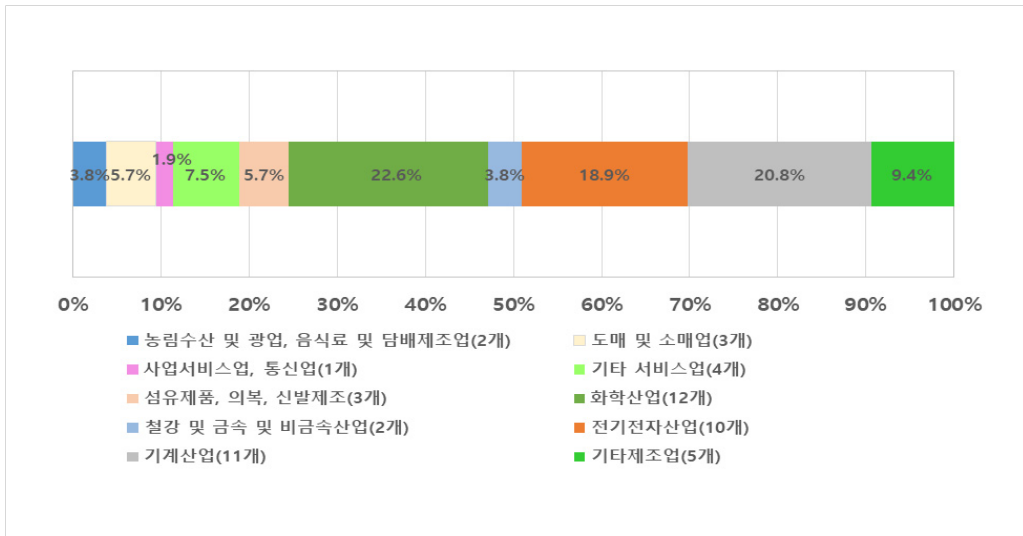
- (기업유형) 지식재산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53개(52.5%)는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하 침해분쟁)을 경험함
- 침해분쟁 기업의 기업유형을 보면, 일반 중소기업이 5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0.8%와 17%로 그 뒤를 이음

| 그림 2-37 | 침해 분쟁 기업의 기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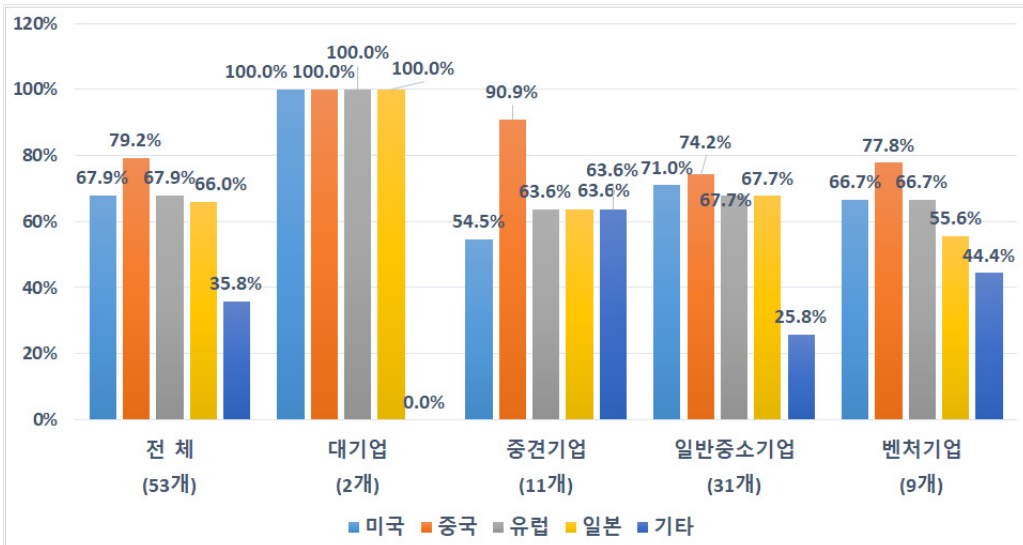
□ (업종) 업종별로는 화학산업(12개, 22.6%)이 가장 많았으며, 기계산업(20.8%)이 그 뒤를 이음

| 그림 2-38 | 침해 분쟁 기업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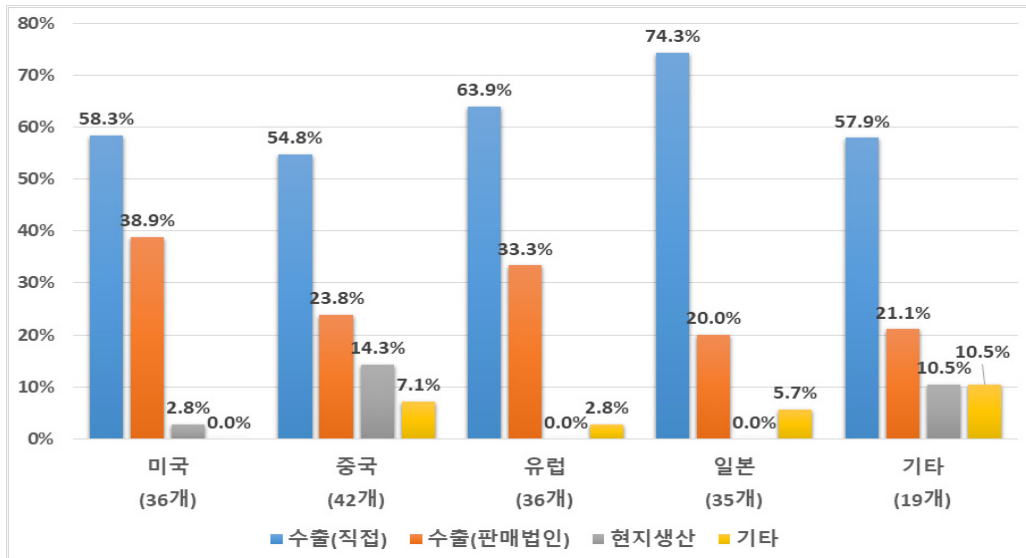
□ (거래국가) 53개 침해분쟁 기업의 거래국가는 중국이 79.2%로 가장 많고, 미국 (67.9%), 유럽(67.9%), 일본(66%) 순임

| 그림 2-39 | 침해 분쟁 기업의 거래국가(복수응답)



- (사업형태) 53개 침해분쟁 기업의 사업형태는 직접수출과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인 경우가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을 차지
- 거래국가가 중국과 기타국가인 경우 사업형태가 현지생산인 비중은 각각 14.3%와 7.4%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40| 침해 분쟁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II 침해분쟁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

- (지식재산 담당부서 및 인력) 53개 침해분쟁 기업의 73.6%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담당인력¹⁵⁾(전담인력 포함)은 2.2명(평균 전담인력 1.1명)

※ ('14년 조사) 평균 담당인력(겸임인력 포함)은 1.7명, 이 중 전담인력¹⁶⁾은 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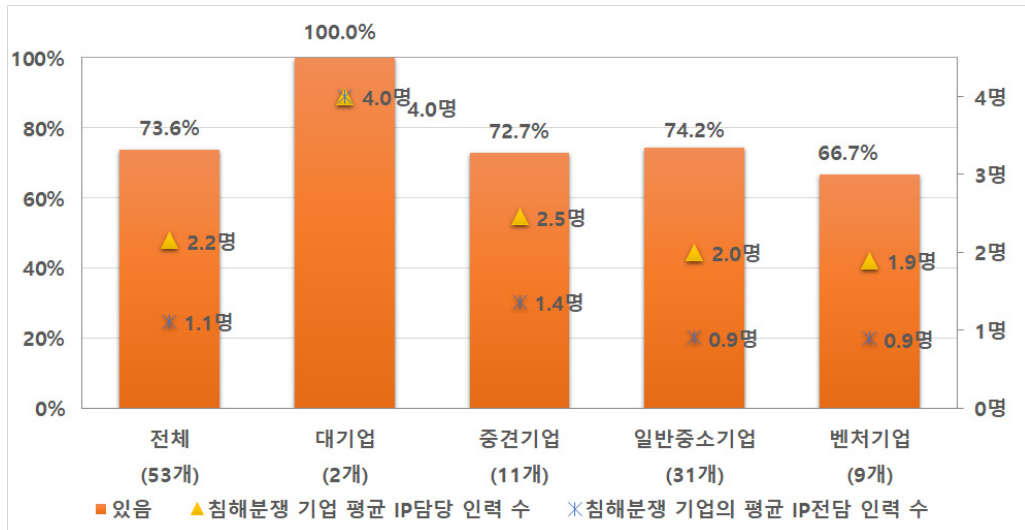
- 대기업(2개)을 제외하면, 담당부서 보유비율은 일반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5) 산업재산권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 산업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산업재산권 동향 조사, 특허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산업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함

16)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

- 평균 담당인력 수는 중견기업에서 2.5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각각 2.0명과 1.9명

| 그림 2-41 | 침해분쟁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부서 및 인력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침해분쟁 기업 중 중국, 유럽, 미국에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92.5%, 86.8%, 84.9%로 조사됨
 - ※ ('14년 조사) 침해분쟁 기업이 산재권을 보유한 비율은 미국(47.8%), 중국(49.3%), 유럽(37.3%), 일본(49.3%)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상표보유 비중이 높음
- 특허/실용신안 보유 비중은 중국에서 높고(56.6%), 상표 보유비중은 미국에서 높음(71.7%)

| 표 2-12 | 침해분쟁 기업의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단위: %)

국가	유형	전체 (53개)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31개)	벤처기업 (9개)
미국	산재권	84.9	100.0	100.0	80.6	77.8
	특허/실용신안	49.1	50.0	72.7	41.9	44.4
	상표	71.7	100.0	81.8	67.7	66.7
	디자인	32.1	100.0	27.3	35.5	11.1
중국	산재권	92.5	100.0	100.0	87.1	100.0
	특허/실용신안	56.6	100.0	63.6	51.6	55.6
	상표	67.9	100.0	90.9	61.3	55.6
	디자인	39.6	100.0	18.2	41.9	44.4
유럽	산재권	86.8	100.0	100.0	83.9	77.8
	특허/실용신안	45.3	50.0	63.6	35.5	55.6
	상표	66.0	100.0	72.7	67.7	44.4
	디자인	24.5	100.0	27.3	25.8	0.0
일본	산재권	77.4	100.0	81.8	74.2	77.8
	특허/실용신안	49.1	50.0	63.6	48.4	33.3
	상표	56.6	100.0	54.5	51.6	66.7
	디자인	22.6	100.0	18.2	22.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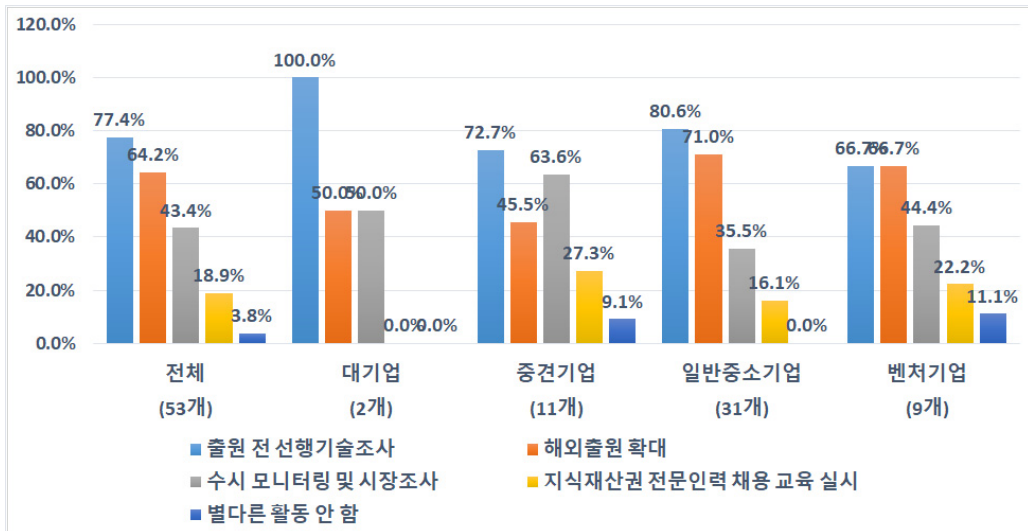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침해분쟁 기업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77.4%)와 해외출원확대(64.2%)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년 조사) 해외출원 확대(47.8%),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조사(43.3%),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29.9%)

○ 그 밖에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43.4%), 교육 실시(18.9%),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3.8%를 차지

○ 중견기업의 경우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비율(63.6%)이 해외출원 확대 비율(45.5%)보다 높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비중(27.3%)은 타 기업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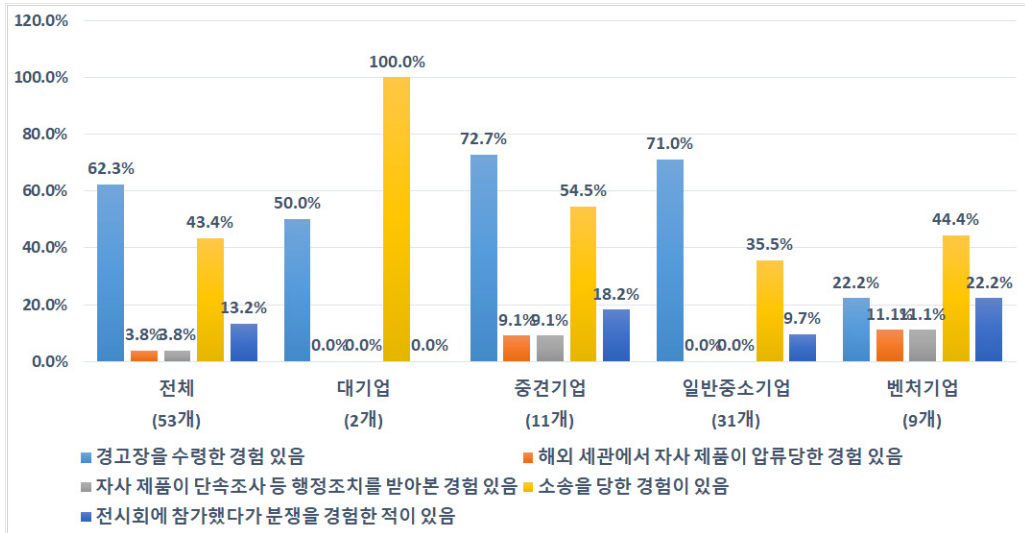
| 그림 2-42 | 침해분쟁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III 침해 분쟁기업의 세부 분쟁유형

- 침해분쟁 기업의 62.3%는 타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경고장 수령(82.1%), 피소 (44.8%), 전사회분쟁(10.4%)
- 타 기업에 의해 피소를 당한 비율은 43.4%이고,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견기업에서 피소비율이 높음(54.5%)
- 전사회에 참가했다가 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비중은 13.2%이고, 특히 벤처기업(22.2%)과 중견기업(18.2%)에서 비중이 높음

[그림 2-43] 침해분쟁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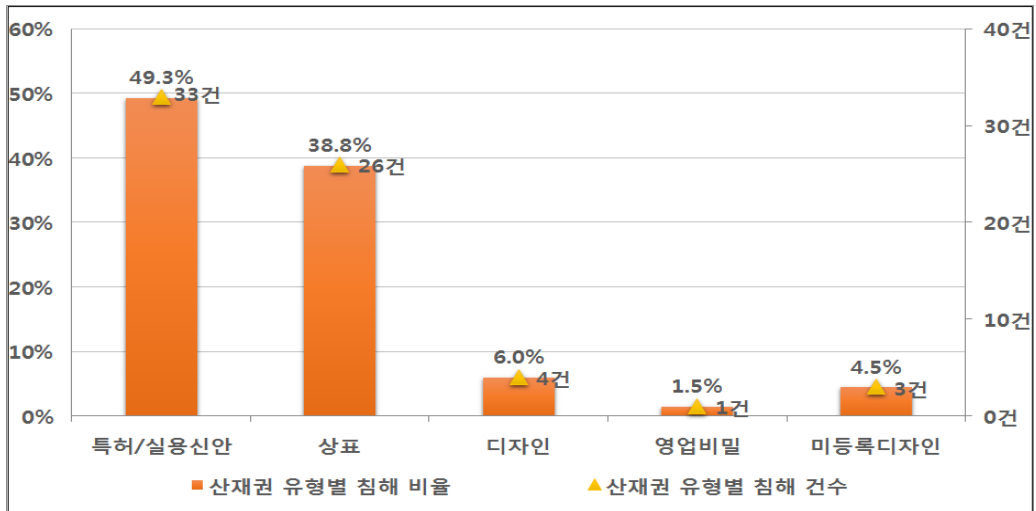


IV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본 조사에서는 각 침해분쟁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침해분쟁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사건 3건까지 해당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67건의 침해 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사되었음.

- (권리유형) 침해 분쟁을 경험한 53개 기업의 세부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7건의 침해 사건이 조사됨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실용신안 침해분쟁이 전체의 5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표(38.8%), 디자인(6.0%) 순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특허 (67.0%), 상표 (26.1%), 디자인 (5.7%)
 - 미등록 디자인과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각각 3건과 2건

| 그림 2-44 | 침해분쟁 사건의 권리유형



□ (분쟁발생 국가) 침해분쟁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이 31.3%로 가장 많고, 중국(26.9%)이 그 뒤를 이음

※ ('14년 조사) 미국 43.2%, 기타국가 17%, 일본 14.8%, 유럽 14.8%

○ 권리 유형을 구분하면, 특허침해 분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23.9%), 상표침해 분쟁은 중국에서(19.4%), 디자인 및 미등록 디자인 침해분쟁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표 2-13 | 권리유형 및 발생 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단위: 건수(%))

구분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체	67 (100)	21 (31.3)	18 (26.9)	12 (17.9)	7 (10.4)	9 (13.4)	
권리유형	특허/실용신안	33 (49.3)	16 (23.9)	4 (6.0)	7 (10.4)	2 (3.0)	4 (6.0)
	상표	26 (38.8)	5 (7.5)	13 (19.4)	4 (6.0)	0 (0.0)	4 (6.0)
	디자인	4 (6.0)	0 (0.0)	1 (1.5)	1 (1.5)	2 (3.0)	0 (0.0)
	영업비밀	1 (1.5)	0 (0.0)	0 (0.0)	0 (0.0)	0 (0.0)	1 (1.5)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3 (4.5)	0 (0.0)	0 (0.0)	0 (0.0)	3 (4.5)	0 (0.0)

* 괄호 안은 침해 분쟁 67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 (기업유형) 침해분쟁 67건 중 기업유형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4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비중은 각각 23.9%와 22.4%로 유사
 - ※ ('14년 조사) 중견기업 26.9%, 중소기업 57.7%, 벤처기업 10.6%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분쟁이 미국에서 발생한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고, 중견기업은 유럽과 일본, 벤처기업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음
- (주요업종별 분쟁발생 국가) 침해분쟁 사건의 업종을 구분하면 전기전자 산업과 화학 산업이 각각 17.9%(12건)로 가장 많음
 - 이 밖에 기계산업(16.4%), 기타 제조업(11.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9%) 순으로 나타남
 -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과 기계산업 침해분쟁은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화학 산업은 유럽에서, 전기전자 산업은 미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음

[표 2-14] 기업유형 및 분쟁 발생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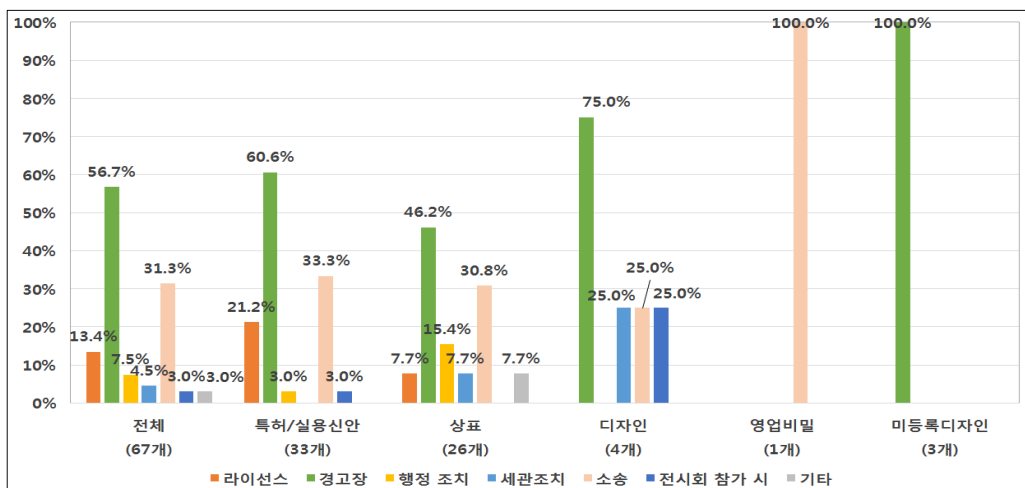
		사건 수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67 (100)	21 (31.3)	18 (26.9)	12 (17.9)	7 (10.4)	9 (13.4)
기업 유형	대기업	5 (7.5)	2 (3)	1 (1.5)	1 (1.5)	0 (0)	1 (1.5)
	중견기업	16 (23.9)	2 (3)	3 (4.5)	4 (6)	4 (6)	3 (4.5)
	일반 중소기업	31 (46.3)	12 (17.9)	9 (13.4)	5 (7.5)	1 (1.5)	4 (6)
	벤처/INNO-BIZ 기업	15 (22.4)	5 (7.5)	5 (7.5)	2 (3)	2 (3)	1 (1.5)

주요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4 (6)	0 (0)	4 (6)	0 (0)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5 (7.5)	1 (1.5)	3 (4.5)	1 (1.5)	0 (0)	0 (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3)	2 (3)	0 (0)	0 (0)	0 (0)	0 (0)
	기타 서비스업	5 (7.5)	1 (1.5)	0 (0)	1 (1.5)	1 (1.5)	2 (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9)	2 (3)	3 (4.5)	0 (0)	0 (0)	1 (1.5)
	화학산업	12 (17.9)	3 (4.5)	1 (1.5)	5 (7.5)	1 (1.5)	2 (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3)	0 (0)	0 (0)	1 (1.5)	1 (1.5)	0 (0)
	전기전자산업	12 (17.9)	9 (13.4)	0 (0)	1 (1.5)	2 (3)	0 (0)
	기계산업	11 (16.4)	3 (4.5)	5 (7.5)	1 (1.5)	0 (0)	2 (3)
	기타제조업	8 (11.9)	0 (0)	2 (3)	2 (3)	2 (3)	2 (3)

* 괄호 안은 침해 분쟁 67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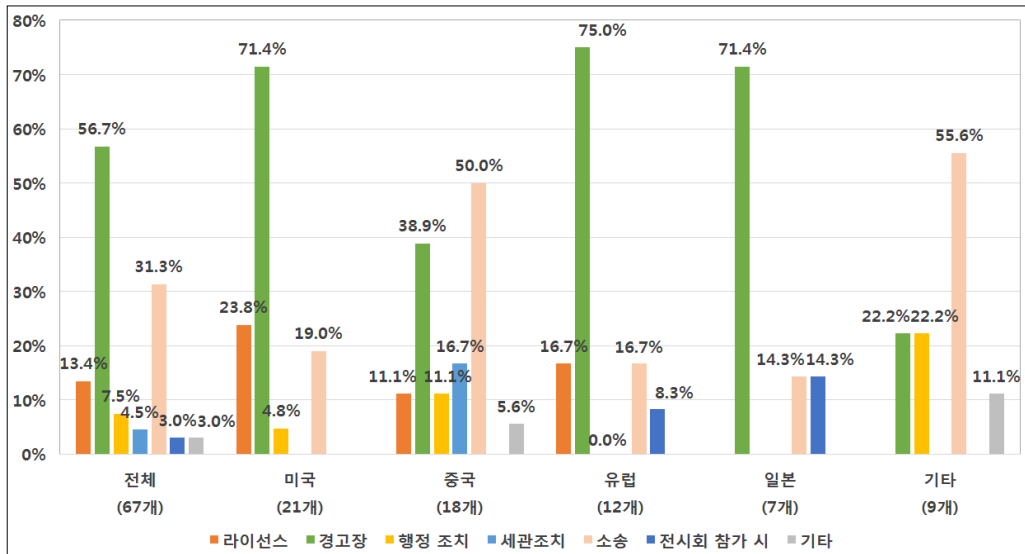
□ (분쟁 시작형태) 침해분쟁 67건의 시작 형태는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45] 침해분쟁의 시작 형태 (권리유형별)



- 상대기업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31.3%를 차지하고 있고,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는 13.4%를 차지함
 - ※ ('14년 조사) 경고장 수령 68.2%, 피소 21.6%, 라이선스 요구 3.4%
- 이 밖에, 세관조치는 4.5%, 전시회 참가 3.0%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함
- 상대기업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비중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1.2%로 타 권리유형에 비해 높고, 행정조치가 시작형태인 경우는 상표에서 15.4%로 타 권리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등록 디자인 침해 3건의 경우 모두 상대기업이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됨
- 침해분쟁 시작형태는 분쟁이 발생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경고장 발송으로 시작된 경우(각각 71.4%, 75%, 71.4%)가 대부분인데 반해, 중국과 기타국가의 경우는 바로 소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각각 50%와 55.6%로 더 많음
- 세관조치를 통해 분쟁이 시작된 경우는 중국(16.7%)에서 비중이 높음

[그림 2-46] 침해분쟁의 시작 형태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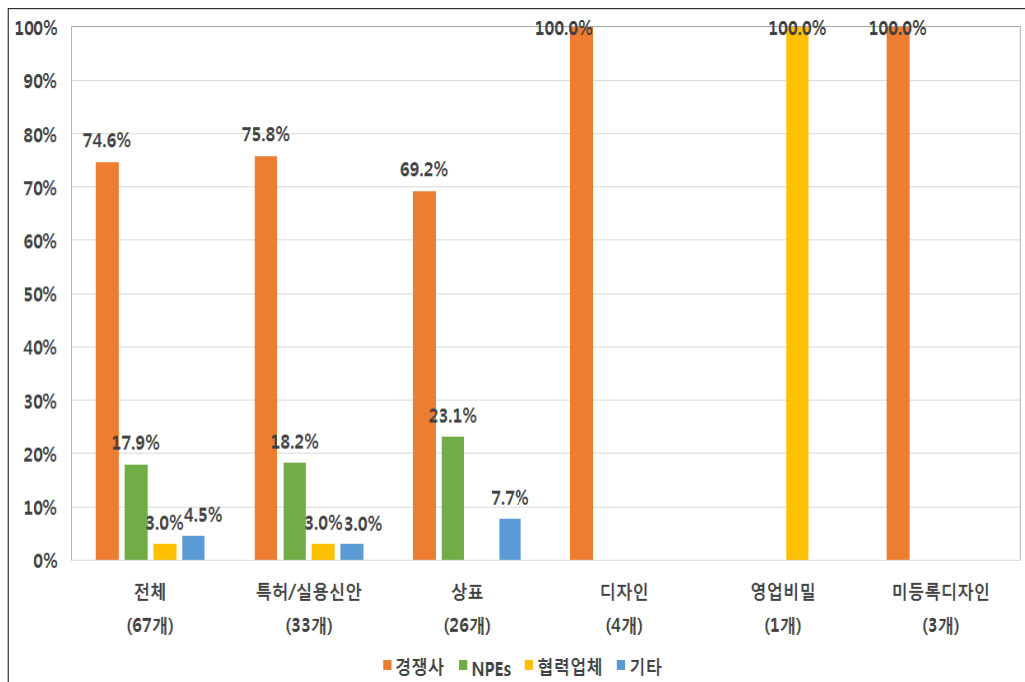
□ (상대기업 유형) 67건의 침해 분쟁에서 우리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업(기관)의 유형은 경쟁사인 경우가 74.6%로 대부분을 차지함

※ ('14년 조사) 해외 경쟁사 78.4%, NPE 17.0%, 협력업체 3.4%

○ 상대방이 NPE인 경우는 17.9%를 차지하고 있고, 권리유형이 특허/실용신안인 경우와 상표인 경우 각각 18.2%와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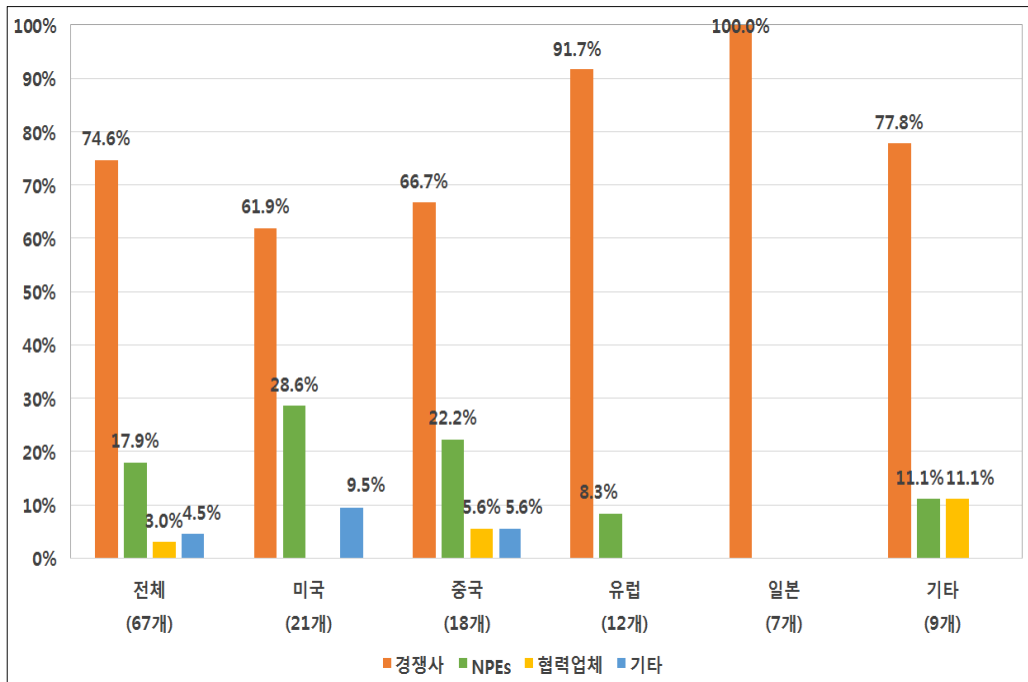
○ 영업비밀 침해분쟁(1건)의 경우 협력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그림 2-47 |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권리유형별)



○ 분쟁발생 국가를 구분하면, NPEs가 침해주장을 한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28.6%, 2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경쟁사가 침해를 주장한 비중은 일본과 유럽에서 각각 100%와 91.7%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 그림 2-48 |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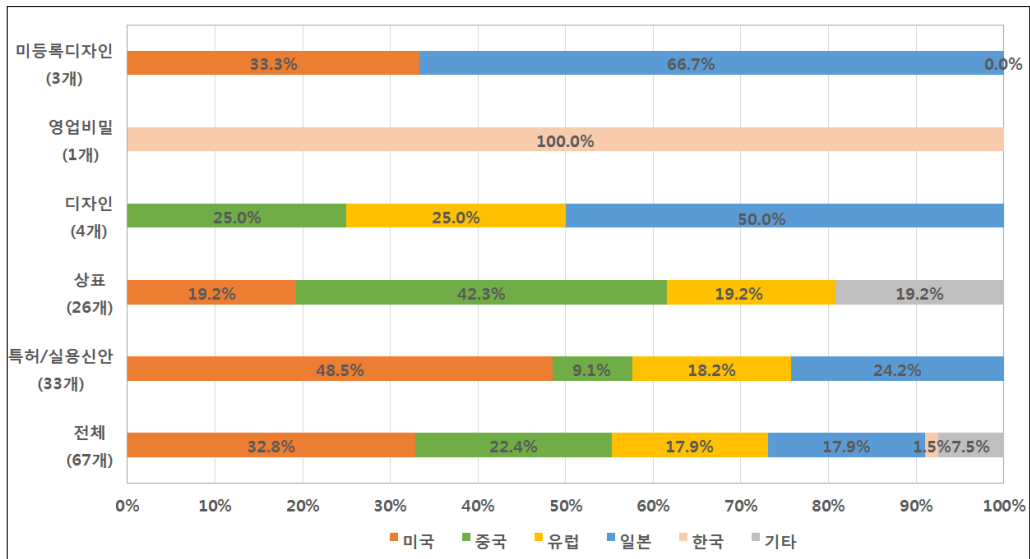
□ (상대기업 국적) 침해분쟁에서 상대기업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는 32.8%로 가장 높고, 중국은 22.4%로 그 뒤를 이음

※ ('14년 조사) 상대기업의 국적 미국 46.6%, 유럽 22.7%, 일본 21.6%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상대기업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가 48.5%로 매우 높고, 상표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42.3%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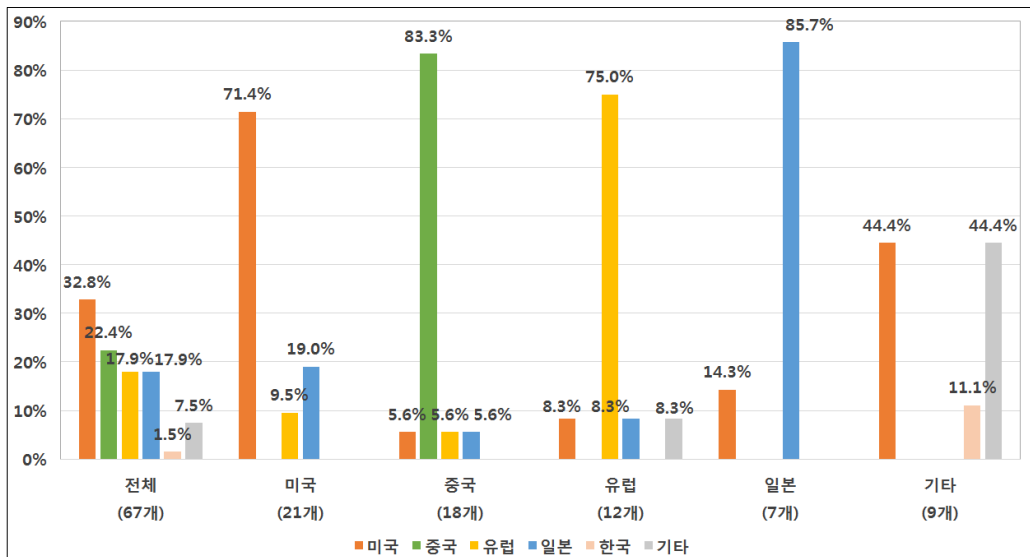
○ 디자인의 경우 상대기업의 국적이 일본과 유럽인 경우가 각각 50%와 25%로 타 권리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림 2-49 | 상대 기업의 국적 (권리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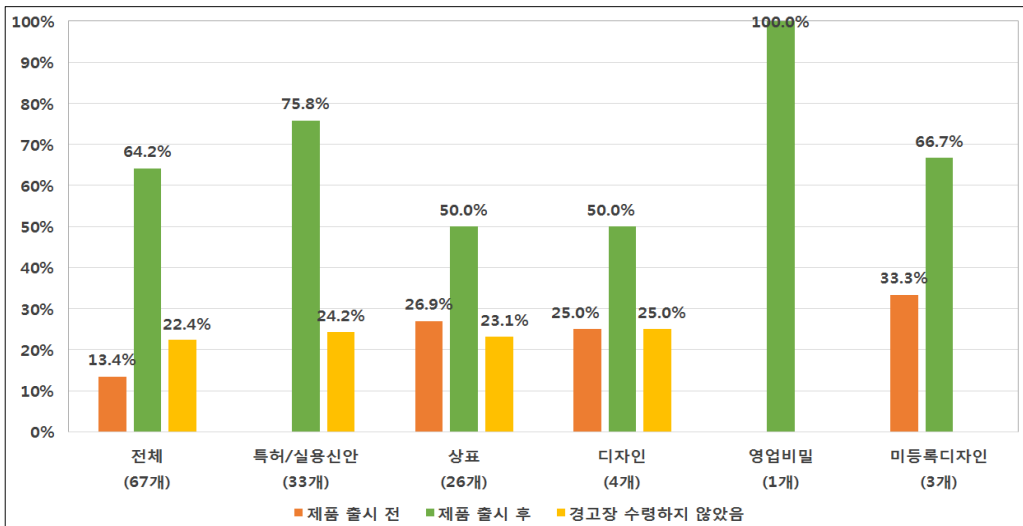
- 분쟁발생 지역을 구분하면, 대체로 분쟁상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상대기업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가 1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림 2-50 | 상대기업의 국적 (분쟁발생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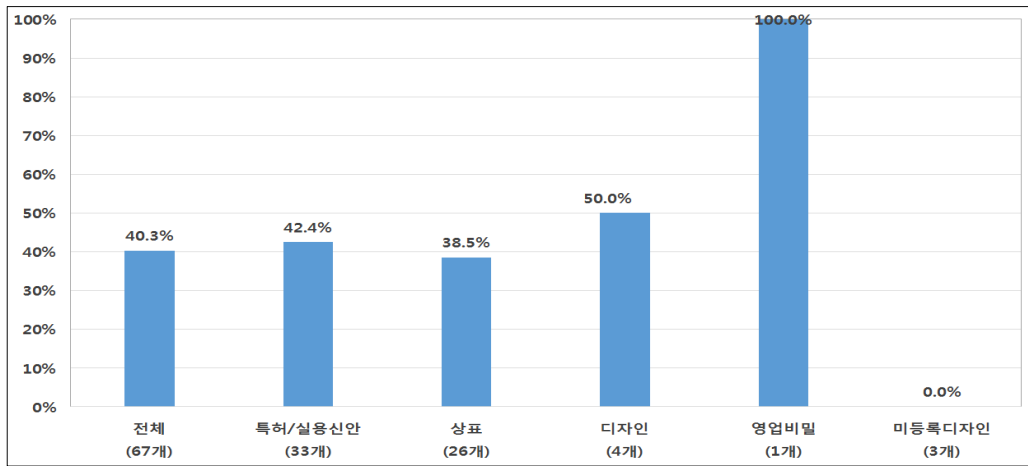
- (경고장 수령 시점) 침해분쟁 사건에서 제품 출시 후에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는 64.2%, 출시 전에 수령한 경우는 13.4%로 조사됨
 - ※ ('14년 조사) 출시 후 72.7%, 출시 전 12.5%, 수령하지 않음 14.8%
- 제품 출시 전에 경고장을 수령한 비중은 상표(26.9%), 디자인(25.0%)에서 높게 나타남
- 특허침해 분쟁의 경우 모두 제품 출시 후에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51 | 침해분쟁의 경고장 수령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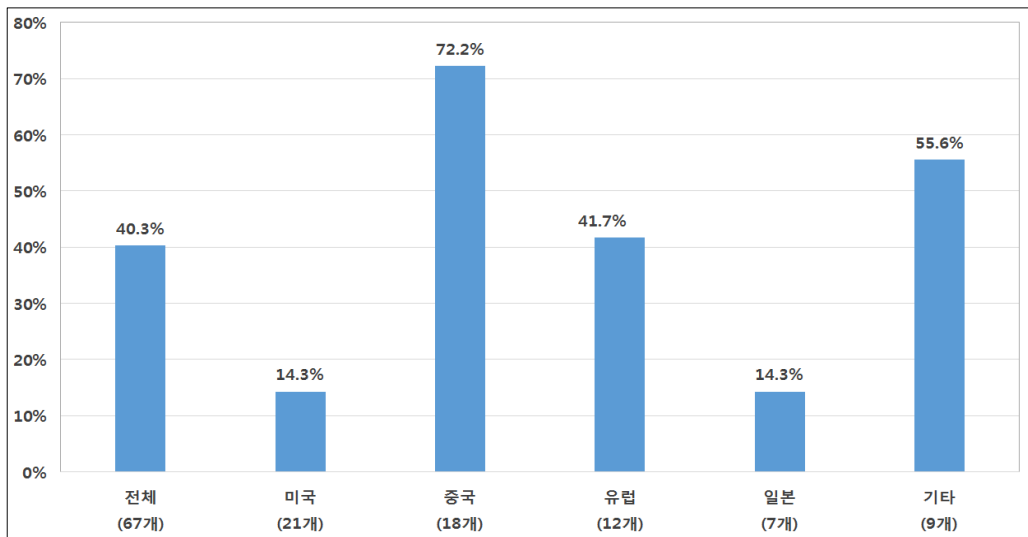
- (소송 여부) 67건의 침해분쟁에서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는 40.3%
 - ※ ('14년 조사) 소송으로 진행 47.7%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소송으로 진행된 비중은 디자인의 경우 50.0%로 특허/실용신안 42.4%, 상표 38.5%에 비해 높음

|그림 2-52| 침해분쟁 시 소송 진행 비중 (권리유형별)



- 분쟁발생 지역을 구분하면, 침해분쟁 시 소송으로 진행된 비중은 중국에서 72.2%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고, 미국(14.3%)과 일본(14.3%)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53| 침해 분쟁 시 소송 진행 비중 (발생국가별)



- (대응비용) 67건의 침해분쟁 중 57건(85%)에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대응비용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조사됨

※ ('14년 조사) 평균 대응비용 82.5백만원, 특허분쟁 대응비용 1억원

| 표 2-15 | 침해 분쟁 총 대응비용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2천만 원 미만	2~4천 만원	4~6천 만원	6~8천 만원	8~10천 만원	1~2억 원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57	28	6	5	1	2	4	11	225.9
권리 유형	특허	24	6	2	1	1	1	3	10	489.8
	실용	1	0	1	0	0	0	0	0	20.0
	상표	25	20	3	1	0	0	0	1	30.0
	디자인	3	1	0	1	0	1	0	0	46.7
	영업비밀	1	0	0	0	0	0	1	0	100.0
	상품형태	3	1	0	2	0	0	0	0	36.7
발생 지역	미국	17	7	2	1	0	0	1	6	547.5
	중국	17	10	4	1	0	0	0	2	53.3
	유럽	9	6	0	0	0	1	1	1	63.6
	일본	6	1	0	3	1	0	0	1	129.2
	기타	8	4	0	0	0	1	2	1	164.2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권인 경우 평균 대응비용이 약 4억 9천만원으로 상표(3천만원), 디자인(4천 7백만원)과 큰 차이를 보임
- 분쟁 발생 국가를 구분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대응비용은 약 5억 5천만원으로 타 국가(중국 5천 3백만원, 유럽 6천 4백만원, 일본 1억 3천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
- (소송비용) 67건의 침해분쟁 중 약 39%(26건)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평균 소송비용은 약 2억 2천만원으로 조사됨
 - ※ ('14년 조사) 평균 소송비용 78백만원, 특허 소송비용 95백만원, 상표 소송비용 14백만원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특허 소송비용은 평균 4억 6천만원으로 타 권리유형과 큰 차이를 보임
- 발생지역을 구분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 3건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10억 6천만원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임 (중국 54.8백만원, 유럽 66백만원)

| 표 2-16 | 침해 분쟁 소송비용

(단위: 건수,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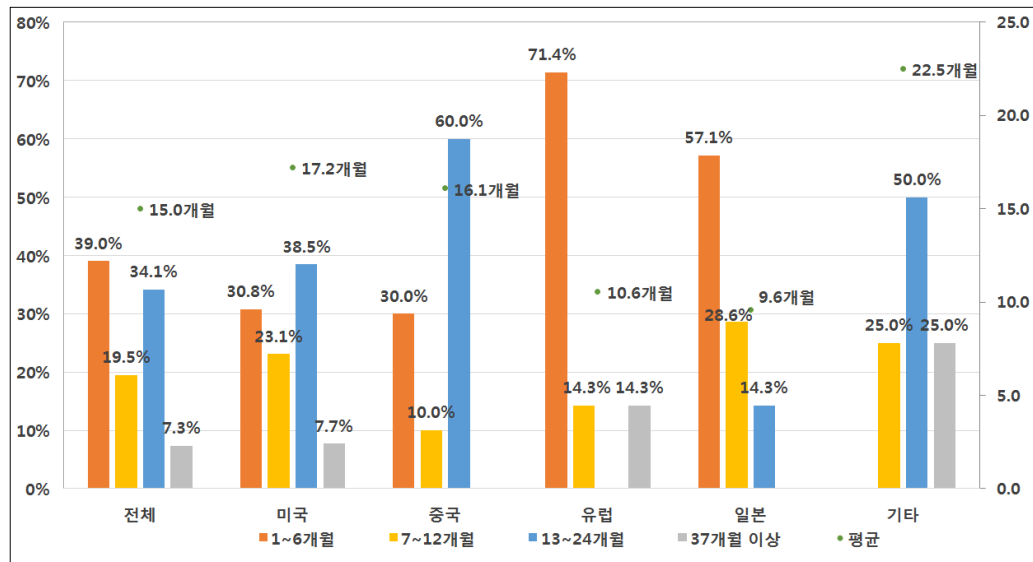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4~6천만원	6~8천만원	8~10천만원	1~2억원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26	11	4	1	1	1	1	7	221.0
권리 유형	특허	11	2	1	1	0	0	1	458.2
	실용	1	0	1	0	0	0	0	20.0
	상표	11	8	2	0	0	0	0	49.3
	디자인	2	1	0	0	1	0	0	32.5
	영업비밀	1	0	0	0	0	1	0	80.0
	상품형태	0	0	0	0	0	0	0	-
분쟁 발생 지역	미국	3	0	0	0	0	0	1	1,063
	중국	14	9	3	0	0	0	0	54.8
	유럽	5	2	0	1	1	0	0	66.0
	일본	1	0	0	0	0	0	0	555.0
	기타	3	0	1	0	0	1	0	301.7

- (합의금 지불) 67건의 침해분쟁 중 합의금을 지불한 2건(특허, 상표)의 평균 합의금은 3천만원으로 조사됨
- (손해배상금 지불) 67건의 침해분쟁 중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2건(특허, 실용신안)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약 4천 7백만원으로 조사됨
- (라이선스 비용) 67건의 침해분쟁 중 합의 후 라이선싱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5건(특허)(미국 4건, 유럽 1건)으로 평균 라이선스 비용은 12억 7천만원으로 조사됨
- (분쟁기간: 종결된 경우) 67건의 침해분쟁 중 조사시점에 종결된 41건의 평균 분쟁기간은 15.0개월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가 6개월 이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남
 - ※ ('14년 조사) 평균 분쟁기간 9.1개월
- 권리유형을 구분하면, 평균 분쟁기간은 특허의 경우 17.8개월로 상표 12.7개월, 디자인 13.3개월과 차이를 보임
- 분쟁 발생 지역을 구분하면, 기타국가와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분쟁기간은 각각 22.5개월과 17.2개월로 중국 16.1개월, 유럽 10.6개월, 일본 9.6개월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됨

| 표 2-17 | 침해분쟁 소요 기간 (권리유형별, 종결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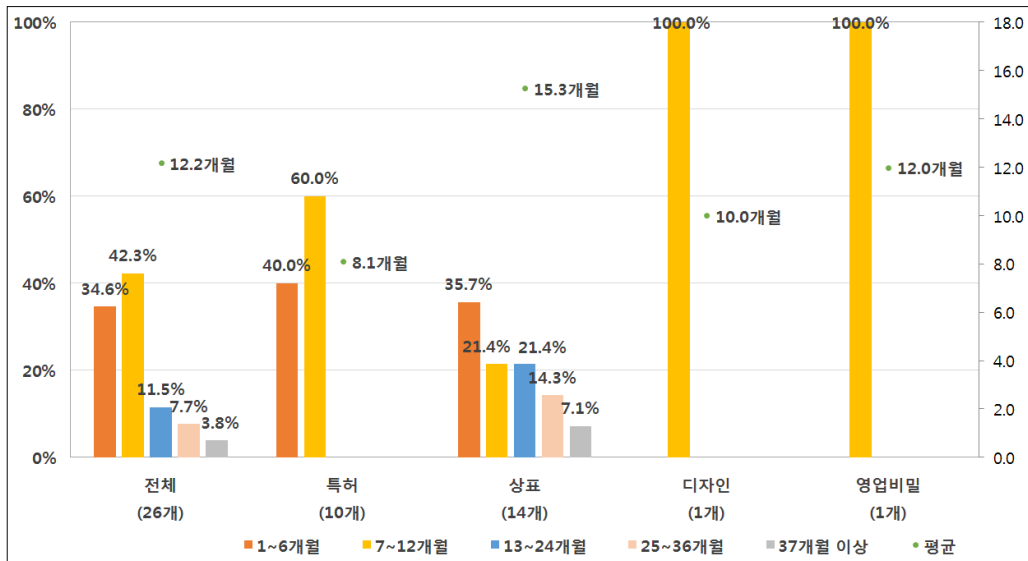
구분	빈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체	41	39.0	19.5	34.1	7.3	15.0	
권리 유형	특허	22	36.4	18.2	31.8	13.6	17.8
	실용신안	1	0.0	100.0	0.0	0.0	12.0
	상표	12	41.7	8.3	50.0	0.0	12.7
	디자인	3	33.3	33.3	33.3	0.0	13.3
	상품형태	3	66.7	33.3	0.0	0.0	7.0

| 그림 2-54 | 침해분쟁 소요 기간(발생국가별, 종결된 경우)



□ (분쟁기간: 진행 중인 경우) 67건의 침해분쟁 중 조사시점에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는 26건으로 평균 12.2개월 동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4.6%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됨

| 그림 2-55 | 침해분쟁 소요 기간(권리유형별, 진행 중인 경우)



□ (분쟁 종결 형태) 67건의 침해분쟁 사건 중 협상으로 종결된 비율은 22.4%, 소송으로 종결된 비중은 22.4%로 조사됨

※ ('14년 조사) 협상 40%, 소송 36.4%

○ 협상 후 합의금을 지불한 비중은 6.0%,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16.4%

-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특허의 경우 21.9% 높고, 발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인 경우 라이선스 계약 비중이 각각 23.8%와 28.6%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음

○ 소송 후 승소로 종결된 경우는 16.4%, 중간에 합의 등을 통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는 4.5%로 조사됨

- 침해분쟁이 중국에서 발생한 경우 소송 승소로 종료된 비중은 38.9%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음

| 표 2-18 | 침해분쟁 종결 형태 (복수응답)

(단위: 비중(%))

구분	협상			시장 진입 저지	소송				기타		
	합의금, 손배금 지불	라이 선스 체결	협상 진행중		소송 승소	소송 패소	소송 취하	소송 진행중	침해사실 없음증명	무대응	
전 체 (67건)	6.0	16.4	7.5	1.5	16.4	1.5	4.5	19.4	19.4	4.5	
권리 유형	특허 (32건)	6.3	21.9	9.4	-	12.5	3.1	6.3	15.6	15.6	9.4
	실용신안 (1건)	-	-	-	-	100.0	-	-	-	-	-
	상표 (26건)	3.8	7.7	7.7	3.8	19.2	-	3.8	23.1	26.9	-
	디자인 (4건)	-	25.0	-	-	25.0	-	-	25.0	-	-
	영업비밀 (1건)	-	-	-	-	-	-	-	100.0	-	-
	상품형태 (3건)	33.3	33.3	-	-	-	-	-	-	33.3	-
분쟁 발생 지역	미국 (21건)	9.5	23.8	14.3	-	4.8	-	4.8	9.5	23.8	9.5
	중국 (18건)	-	5.6	-	-	38.9	-	5.6	33.3	22.2	-
	유럽 (12건)	8.3	8.3	8.3	-	8.3	-	-	25.0	16.7	8.3
	일본 (7건)	14.3	28.6	-	-	-	-	14.3	-	14.3	-
	기타 (9건)	-	22.2	11.1	11.1	22.2	11.1	-	22.2	11.1	-

- 조사시점에서 협상 및 소송이 진행 중인 비중은 각각 7.5%와 19.4%
- 침해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도 19.4%를 차지함
- 침해분쟁 67건 중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4.5%이고,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분쟁 3건임

V 전시회 분쟁 현황

- (전시회 분쟁 여부 및 국가) 53개 침해분쟁 기업 중 4개(7.5%) 기업이 전시회 분쟁¹⁷⁾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2건은 유럽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건의 분쟁이 발생함

※ ('14년 조사) 침해분쟁기업 중 전시회 분쟁을 겪은 기업의 비중 10.4%

[표 2-19] 전시회 분쟁 건수 및 국가

(단위: 건)

구분	전체기업	전시회분쟁 경험 있음	중국	유럽	일본
전 체	53	4	1	2	1
기업유형	대기업	2	0	0	0
	중견기업	11	1	-	1
	일반중소기업	31	2	-	1
	벤처기업	9	1	1	-

- (전시회 압수 시 대응 형태) 전시회 분쟁을 경험한 4개 기업 중 전시회 분쟁에서 우리기업이 물품을 압수당한 경우, 50%(2건)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전시회에서 철수했다고 응답함

※ ('14년 조사)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철수 42.9%

VI 침해 분쟁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및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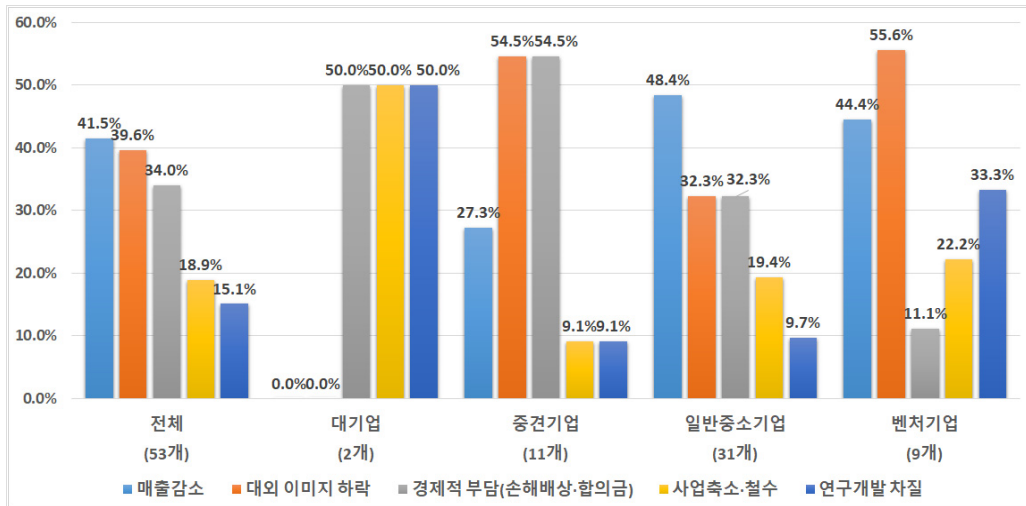
- (침해분쟁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 침해분쟁 기업 53개 중 75.5%는 분쟁 시 국내 법무법인·특허법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함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1%고 일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17) 우리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시품을 압수당하거나 전시를 중지당하는 것을 의미

- (침해분쟁으로 인한 피해유형) 침해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매출감소(41.5%)와 대외 이미지 하락(3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손해배상 및 합의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4%)과 사업 축소 및 철수(18.9%)라고 응답한 비중이 그 뒤를 이음

| 그림 2-56 | 침해분쟁으로 인한 피해유형 (복수응답)



VII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 (침해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침해분쟁 기업은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분쟁 예방 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이 35.8%로 가장 많음
-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지원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26.4%이고, 특히 벤처기업에서의 비중이 높음

| 표 2-20 | 침해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비중(%))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전체 (53개)	기업유형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31개)	벤처기업 (9개)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6.4	0.0	9.1	29.0	44.4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재고	9.4	0.0	18.2	9.7	0.0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7.5	50.0	0.0	9.7	0.0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35.8	50.0	45.5	32.3	33.3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9.4	0.0	9.1	9.7	11.1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11.3	0.0	18.2	9.7	11.1

□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지원사업) 침해분쟁 기업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은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62.3%)과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60.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표 2-21 |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사업

정부 지원사업	전체 (53개)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1개)	일반 중소기업 (31개)	벤처/INNO- BIZ 기업 (9개)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	60.4	50.0	54.5	58.1	77.8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62.3	0.0	63.6	61.3	77.8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26.4	0.0	36.4	22.6	33.3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17.0	0.0	18.2	19.4	11.1
NPE 소송알림 서비스	7.5	0.0	18.2	3.2	11.1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22.6	0.0	27.3	16.1	44.4
해외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45.3	0.0	63.6	35.5	66.7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사례

제1절 전시회 참가와 PCT 특허출원

제2절 특수관계인에 의한 상표 선점과 중국 상표법 제15조의 제척기간의 문제

제3절 모방품 형사/행정 단속 및 그 한계

제4절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및 선점 상표 재출원 시기 결정의 문제

- 본 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 대표사례 4건에 대해 세부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¹⁸⁾

제1절

전시회 참가와 PCT 특허출원

I 사건의 배경

- LED 조명 기구를 생산하는 국내 중견 기업 A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발생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 LED 조명 시장의 확대와 함께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었음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project가 시작되면서, 내륙의 신규 2선, 3선 도시들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LED 가로등 조명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
 - 더 나아가 중국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및 일대일로 project의 육상 실크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도 신규 도로 건설이 늘어나고 LED가로등 조명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중국에서는 매년 여러 도시에서 조명 관련 제품 박람회/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A사 역시 중국 및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기 시작함.

18) 본 사례연구는 지심특허(유성원 변리사)에서 수행함

II 사건의 발단

- A사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열렸던 전시회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발열 구조를 채택한 LED 가로등 조명 제품을 최초로 발표하고 전시하였음
- A사는 전시회 참가하기 직전,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PCT 출원을 완료하고 전시회에 참가하였음.
 - A사는 오랜 기간 내부의 특허팀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던 회사로서 항상 외국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PCT 출원을 완료하고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음.
- 한편, A사의 상하이 전시회에서 발표했던 새로운 LED 가로등 조명 신제품은 성공적으로 런칭되었으며, 여러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얻었음.
- 그로부터 약 4~5개월 뒤, 광저우에서도 조명 제품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지난 상하이에서의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광저우 박람회에도 참가하였음.
 - 그런데, A사가 광저우 박람회에 참가하여 발견한 것은 지난번 상하이 전시회에서 발표했던 신제품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모방한 제품이 다른 중국 회사에 의해서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었음.
 -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상하이 전시회에서 전시했던 신제품이 여러 중국회사에게 노출되었고, LED 가로등 조명 제품의 특성 상, 외관 디자인과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발열 구조가 주된 기술적 특징인데, 이는 외관 상으로 드러나 있어 쉽게 파악이 가능하여 단기간에 중국 회사들에 의하여 모방 제품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사안을 보고 받은 A사의 경영진은 중국 회사들의 몰지각한 모방행위에 격노하였고, 즉시 전시회 참가 전 출원해놓았던 PCT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진입을 지시함.
 - A사의 특허팀은 해당 PCT출원의 중국 발명특허 국내단계진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중국 발명특허 국내 단계 진입 후, 첫 번째 심사의견통지를 받는데에만 1년이 넘게 걸렸으며, 이후에도 약 2회의 심사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국내단계 진입

후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야 등록이 되었음.

- 그 사이, 모방품을 만들었던 중국 회사는 이미 다른 디자인과 발열 구조를 채택한 신제품을 내놓았으며, 기존 모방품은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 증거 확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음.

III 사안의 문제점 - PCT출원의 중국 발명특허 진입과 권리보호 공백

- A사는 PCT출원에 대하여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면서 발명특허로 진입하였는데, A사 LED 가로등 조명 기술의 특성 상, 외관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외관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여 유행이 빨리 지나간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기술 수명이 짧아 긴 존속기간 보다는 짧은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더라도 매우 빠른 권리 등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발명특허는 전면 실질심사를 통해 등록될 뿐 아니라, 심사거절이유 통지가 전기전자/기계 분야는 약 2~3회, 화학/재료 분야는 3~5회, 바이오/제약 분야는 4~6회 정도로 상당히 여러번 발생하여 한국의 특허심사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는 심사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1회의 거절이유통지 이후 바로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와는 상당히 다른 심사실무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술 수명이 짧고 유행이 빠른 제품의 기술이 발명특허로 중국에 진입할 경우, 권리 등록이 늦어져 기술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킴.
 - 또한, 중국은 출원 계속 중인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등록 후에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증거법 상 출원 중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증거를 사전에 공증대리인을 통하여 공증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 측의 심사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권리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권리등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 때문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출원 중인 기술에 대하여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권리 등록 및 행사가 중요한데, PCT 출원을 통하여 중국에 발명특허로 진입하는 경우 권리 등록 자체가 매우 늦어져서 실질적인 지식재산보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IV 시사점 - 기술수명이 짧은 권리의 신속한 권리화 전략

-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적인 특징이 외부로 드러나 있어 모방이 쉬운 제품의 경우 신속한 권리화가 가장 우선적인 지식재산보호전략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PCT가 아닌 파리조약을 통한 직접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파리조약에 의한 진입 시 발명특허로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과 동시에 이중으로 진입하는 것이 기술보호 전략 상 필요함
 - 중국의 실용신안은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시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후 약 3~4개월 후 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수명이 짧고 외부 노출이 쉬운 기술일수록 실용신안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해야 함.
- A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특허팀이 운영되어 왔던 회사이고, 해외출원 프로세스 역시 오랜 기간 정립이 되어 왔던 회사이지만, 주로 미국과 유럽을 위한 해외 출원 프로세스이었고, 중국 특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세스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미국 이상으로 중요해진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외출원 프로세스의 정립이 시급함.
 - 특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출원 시 기계적으로 PCT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무 역시 지양되어야 하며, 기술 수명, 제품 마케팅 전략, 회사의 판로 개척 수단 등에 따라서 다양한 해외 지재권 진입 전략이 고려되어야 함.

제2절

특수관계인에 의한 상표 선점과 중국 상표법 제15조의 제척기간의 문제

I 사건의 배경

- 2008년 경, 의료기기업체 B사는 중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함.
 - 당시 중국 법인 설립 및 초기 사업 셋팅을 위해서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 X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X를 현지 법인 총경리로 임명함.
 - X는 현지 법인 총경리로 일하면서, B사의 베이징 법인 설립에 여러가지로 관여하였는데, 이 때 B사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관리가 아직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B사의 회사 메인브랜드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중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
 - 2년 정도 후, X는 B사 베이징 법인을 퇴사한 후, 베이징 왕징에 사무실을 둔 "베이징 XX 과기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의료 기기 사업을 시작함.
- 한편, X는 자신이 B사의 메인브랜드에 대한 중국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한국 B사의 중국 대리점 총판이라고 홍보하였고, B사의 거의 모든 제품의 상표, 포장, 책자, 홍보브로셔, 제품의 구성, 제품 디자인 등을 그대로 베껴서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함
 - 특히, 중국이나 해외에서 열리는 의료 박람회에 매년 참가하면서 B사 메인브랜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방하여 홍보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의 의료업계에서 B사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됨.

II 사건의 경과

- B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X와 몇차례 접촉하여 협상을 하였고, 협상 끝에 X가 소유한 B사의 메인브랜드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 사용권을 허여 받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하게 됨.
- 또한, B사는 2014년 경 메인브랜드를 약간 변형한 상표를 중국에 출원하였고, 중국에서 등록결정을 받게 됨. (사실 X의 선등록상표 때문에 거절될 사유를 안고 있었지만, 심사관의 간과로 등록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위 사용권 협상은 B사의 사용 권한만 합의하였을 뿐, X의 영업활동을 중지시키는 요구까지는 관철시키지 못함.
- 한편, X의 사세가 확장되면서 중국 내 영업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되었고, B사 역시 중국 시장이 중요해지면서 B사와 X는 시장에서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음.
- 2015년 경 B사도 국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회사 내부에 특허팀이 새로 조직되었으며,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본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 그리고, 첫번째 대응 방안으로 X 보유 상표에 대한 상표 무효심판을 검토하게 됨.

III 중국 상표법 제15조와 제척기간

- 중국은 2014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상표법 제15조 제2관을 신설하였는데, 신설된 법률에 의하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내부 인력이었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상표가 출원된 경우, 이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중국 상표법은 2014년 개정 전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상표 선점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으나 특수관계인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좁고 특수관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 2014년 개정에 의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그 입증 역시 쉽게 완화하여 특수관계인에 의한 악의적 상표 선점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회사 내부 직원이나 대리인 관계 뿐 아니라, 제품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 서로 사업 제안을 주고 받아서 상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관계만 입증하더라도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실제로 상당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B사의 검토결과 X는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관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무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
 - 특히, X는 B사 중국 법인 설립 시절, 중국 법인의 총경리를 맡아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각 종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회계 증빙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X의 특수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하지만,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관은 사익적 규정에 해당하여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규정인데, 안타깝게도 B사가 상표무효심판을 검토하던 2016년에는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상태여서 무효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됨
- 한편, B사에서 상기와 같이 무효심판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X는 오히려 B사가 후출원하여 보유하고 있던 메인브랜드의 변형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였고,
 - B사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5년의 제척기간 규정 도과라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상표법 제15조 및 상표법 제10조, 제32조, 제7조 등을 주장하여 X가 보유한 메인브랜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음.
- 하지만, 예상대로 상기 무효심판들은 모두 제15조 사유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B사의 패소로 심결이 나왔고,
 - 이에 B사는 북경시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에 불복하여 상표무효

심판의 PENDING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IV 반부정당경쟁 소송을 통한 반격

- 상기와 같이 무효심판에서는 제15조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최종적인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간 X의 영업활동을 비추어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음.
- 이에 B사에서는 반격 카드로서 X의 영업활동에 대한 여러 증거 수집을 통해 X를 상대로 한 반부정당경쟁소송을 베이징시 조양구 기층인민법원에 2016년 말에 제기하였음.
- 특히, X는 자신의 홈페이지 및 여러 제품 홍보 브로셔에서 적극적으로 B사의 한국 총판이라고 홍보해 왔으며, B사 특유의 핑크색 계열의 디자인과 제품 형태 등을 전혀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B사 제품과의 오인혼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왔음.
- 더 나아가, B사의 시술 기구의 구성, 모양, 디자인, 패키지 등 어느 것 하나 거의 차이 없이 그대로 베낀 제품을 여러 의료기기 박람회/전시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중국 내 의원 등에 상당 수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음
- 이에 박람회/전시회에서의 홍보 행위를 공증인을 통하여 모두 사실공증 절차를 밟아 증거로 수집하고, 중국 내 여러 병의원의 협조를 구하여 상기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를 공증인을 통하여 구매 공증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음.

V 시사점 - 현지 법인 설립과 조선족 동포 에이전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문제점

-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에 대부분 현지 조선족 동포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거의 모든 절차에서 통역 및 행정적 절차의 처리 등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동포 에이전트를 의존하여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처리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같은 절차를 단순일임하여 처리하여 회사의 중요한 상표권, 특허권 등이 현지 에이전트 명의로 등록되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이는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신생기업일수록 매우 자주 나타나며, 회사 브랜드의 상표권이 선점되어 나중에 큰 비용을 치루게 됨.
- 따라서, 현지 법인 설립 시, 동포 에이전트들에게 도움은 받되 반드시 지식재산 등록 업무, 세무관련 업무 등 중요한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컨트롤하여야 하며, 본사에 중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두어 현지 인력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거래처, 내부임원, 투자자, 현지 판매상 등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관의 해석상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선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효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무효심판은 해당 상표선점자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제기를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협상이 장기화되어 자칫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한편, 상표선점자가 상표를 직접 사용하여 한국 산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격 카드로서 반부정당경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반부정당경쟁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상표사용 중지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레버리지로 하여 상대방에게 선점된 상표의 양수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음.

제3절

모방품 형사/행정 단속 및 그 한계

I 사안의 배경

- 국내 미용 의료기기 회사 C사는 피부미용 신기술을 채택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
 - 특히, C사의 기술은 기존의 화학적 요법을 물리적 요법으로 대체한 것인데, 기술이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어서 피부미용 시장에서의 큰 인기를 끌게 됨
- 한편, C사는 시장에서의 큰 인기에 힘입어 여러 해외 국가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됨.
 -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가 매우 까다로워 C사의 계획에 따른 시장 진출이 여의치 않게 됨.
- 이에 우회적으로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판매상을 통해 소량 유통을 시도하였음.

II 사안의 경과

- 이 당시, C사와 같은 원리의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의료기기들은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도 중국 내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 특히 한국산 미용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중국 여성소비자들이 소량 우회유통을 통해 소개되던 C사의 제품을 많이 찾기 시작함.

- C사 제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중국 내 여러 회사에서 C사 브랜드를 부착한 모조품들을 내놓기 시작.
 - C사 모조품들은 오프라인 병의원 판매망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징둥 등 온라인에서도 상당수가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품보다는 모조품에 의해서 C사가 더 유명해지기 시작함
- 이에 C사는 모조품에 의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였는데,
 - C사의 경우 중국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출원하지 않았고, 상표권과 디자인권만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III 형사/행정 단속의 준비 및 실행

- 한편, C사의 검토 결과,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침해 중지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으나, C사 제품이 아직 중국에서 의료기기 품목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은 거의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C사는 민사소송보다는 공안국/공상국을 통한 형사/행정단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현지 조사기관을 통한 모조품 생산 기업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C사의 제품을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해외 유명 의료기기 기업들의 모조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광저우 지역 공장 지대 일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광저우 외곽 지역에 약 4개 공장에서 C사 제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시술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C사는 현지 조사/단속 업체를 통하여 공안국/공상국에 의한 형사/행정 단속을 신청하였으며, 공안국/공상국 및 현지 단속업체는 비밀리에 대대적인 형사 단속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였음.

- 형사/행정 단속 전략은 공안국 주도 하에 이른 새벽부터 진행되었으며, 광저우 공안국 소속 SWAT 1개 중대 120여명의 대원이 4개 공장으로 30명 씩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인 진압 및 단속이 실행됨.
- 우선, 새벽 5시에 4개 공장 대표자들의 자택을 습격하여 대표자 및 일가족 전원을 체포하였으며, 아침 8시에는 4개 공장을 동시에 습격하여 공장 직원들 전원을 진압하여 체포하고 9시부터 단속업체 직원 및 C사 직원들이 진입하여 공장 내부의 모조품을 전수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됨.
- 광저우의 4개 공장의 직원들은 공안국 SWAT 대원들에게 모조품 전수 조사 작업이 종료된 오후 2시까지 억류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 단속업체 직원과 C사 직원들은 각 공장에서 약 120여개의 모조품을 발견하였음.
- 공장에서 발견된 120여개의 모조품에 의한 피해액만 계산하더라도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IV 형사단속에서의 유사상표 모조품의 문제

- 그런데, 상기 120여개의 모조품은 C사의 상표를 있는 그대로 동일한 형태로 부착한 제품이 약 20개 정도였고, 나머지 100개 정도는 C사의 상표 중 영문 철자 한두개를 변형한 유사영역에 속하는 상표를 부착한 것이었음.
- C사의 직원들은 유사영역에 속하는 상표 역시 C사의 상표의 글씨체, 로고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어서 실질적 동일 수준의 상표라고 판단하고 단속 물품 리스트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안국/공상국 공무원에게 요청하였음
- 그러나 중국 공안국/공상국 공무원은 해당 상표를 상세히 살펴보니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이 있다는 이유로 단속 물품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통보를 함.

- 이에 당황한 C사 직원들은 현장에서 항의를 해보았으나, 중국 공안국/공상국 공무원의 태도는 완강하여 변형 유사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압수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 중국에서 상표침해죄는 중국 형법 제2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록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종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하고 있어 동일 영역의 상표의 침해만 침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는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으며, 2004년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 “형법 제213조에서 의미하는 동일한 상표란, 도용된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또는 도용된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없어 일반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표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완전한 동일 뿐 아니라, 유사영역에 속하지만 실질적 동일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침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내놓음
- 하지만, 실제 공안국의 형사단속 실무에서는 위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이 의미하는 “일반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표”라는 것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완전한 동일 수준의 상표만 단속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래서, 형사 단속만 믿고 모든 모조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C사는 모조품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실제 유사영역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들은 단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해당 공장들이 더욱 은밀하게 모조품 생산행위를 할 수 있는 학습을 시켜주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됨
- 또한, 단속 당시 발견된 유사영역 상표의 모조품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해야 하나, 현장에 공증인을 동행하지 않아, 유사영역 상표의 모조품의 존재 및 그 수량을 공증된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V 시사점 - 형사 단속의 한계와 민사소송의 병행의 입체적 전략의 필요성

-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형사/행정 단속은 실제로는 완전 동일 수준의 모조품만 단속이 되고 유사영역 수준의 모조품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규모의 공안국 병력을 동원한 형사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모조품 업체가 유사영역 수준의 모조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결과 및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그래서, 공안국 병력을 동원한 형사 단속 시에도,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한 현장 공증인을 대동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를 통해 단속에서 발견된 모든 모조품들의 수량 및 관련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의 공장을 습격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 현지 인력들의 완강한 물리적 저항 및 위협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을 병행하여 공안국 무장병력이 함께 출동하는 것이 안전함.

제4절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및 선점 상표 재출원 시기 결정의 문제

I 중국 주요 상표 브로커 현황

- 한류 드라마의 큰 성공과 함께 중국 내 한국 문화 산업 및 외식/패션/뷰티 산업이 크게 각광받으며 많은 중국 시장 진출 시도를 이끌어 내게 됨.
-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지재권 확보 인식 부족을 틈 탄 다수의 중국 상표 선점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현상도 발생 하였음.
- 특히, 식품/외식 산업 상표들을 전문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김광춘을 비롯한 여러 상표 브로커들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상표를 무기로 막대한 양도비용을 요구하면서 우리 기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진출 자체를 포기 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를 가장 많이 선점하고 있는 상표브로커들의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김광춘 및 범 김광춘 계열
 - 김광춘은 가장 악질적인 상표 브로커로서 대량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고 이를 원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대표적인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 김광춘은 아래 기업 신용 정보 사이트에도 나타난 ‘심양신사격림무역유한회사’ 등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자회사를 통한 상표 무단선 점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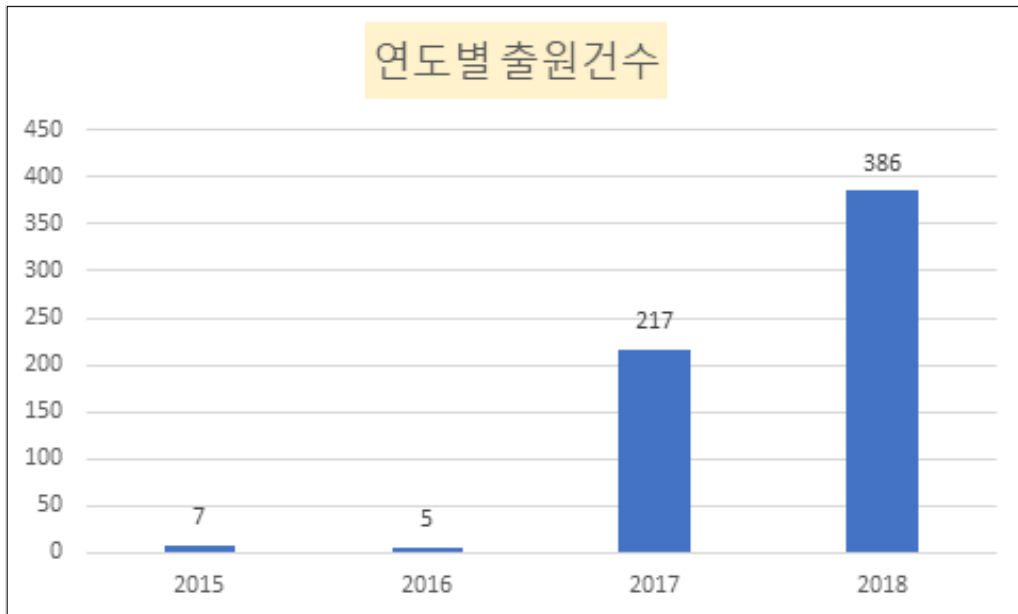
- 정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한국 기업의 상표가 가장 극심하게 무단 선점이 되었던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이며, 2015년에는 김광춘을 법정 대표자로 하여 8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명의로 다시 무단 상표 출원을 일삼고 있음.
- 또한, 김광춘은 한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양도 의사표시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게는 상표권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상표 브로커 “사업”을 전방위적으 전개하고 있음.
- 상표 브로커 김광춘은 2011년 심양신사격림무역유한회사(이하, ‘신사격림’이라 약칭함)을 시작으로 2015년에 자회사를 대거 설립하였으며 자회사 일부의 명칭은 한국 상표명을 그대로 모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1월에 설립한 일부 회사는 대표자를 郑花로 변경하여 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모니터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즉, 각 자회사들의 변경된 대표자들, 각 자회사에서 다시 분회사를 설립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색하여 김광춘을 근원지로 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 행위를 모니터링해야 함.

【표 3-1】 김광춘 및 범 김광춘계 자회사 누적 중국 상표 출원 건수 비교

기업명	설립일	상표 출원건수	비고
金光春	-	761	프랜차이즈에 주력
沈阳绅士格林贸易有限公司	2011-05-10	326	프랜차이즈, 대기업 상호명 등 다양
北京泉湖贸易有限公司	2015-09-25	233	한국 기업 상표 비중 적음
北京净王科技有限公司	2015-05-27	113	화장품 분야 집중
北京驰名会教育咨询有限公司	2015-02-09	621	프랜차이즈
利家(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2015-09-25	325	한국 기업 상표 비중 적음
伊巴都(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2015-10-12	229	프랜차이즈
自然别曲(北京)餐饮管理有限公司	2015-09-25	81	프랜차이즈
北京芭黎贝甜企业管理有限公司	2015-01-09	96	프랜차이즈 상표 중심, 현재 金光春에서 郑花(정화)로 대표자 변경
北京炸鸡情侣餐饮管理有限公司	2016-02-17	49	프랜차이즈 상표 중심, 현재 金光春에서 张新(장신)으로 대표자 변경
총 계			2834

- 김광춘 및 범 김광춘계 회사들은 타 브로커들에 비해 절대적인 출원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능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향후 최소 3년 이상은 유사 또는 동일상표의 타분류 출원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다행스러운 점은 김광춘을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선고 청구에서 승소결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 2017년 이후부터는 한국 기업의 영문 상표를 그대로 선점하는 형태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중문 상표를 출원하거나 좋은 의미의 중국어 네이밍 또는 임의의 영어 알파벳 3글자 조합 출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영문 상표를 출원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2018년 최근까지도 그 이전에 출원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선고를 통해 기각된 상표들을 2차, 3차로 출원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음
- 석가장전애전자상무유한회사(石家庄专爰电子商务有限公司)
- 석가장전애전자상무유한회사(이하, '석가장'이라 약칭함)은 2015년 2월 12일에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赵冉(짜오란). 경영범위는 건축, 기차부품, 화장품, 일상용품, 포장재료, 의류잡화 등의 수출입, 판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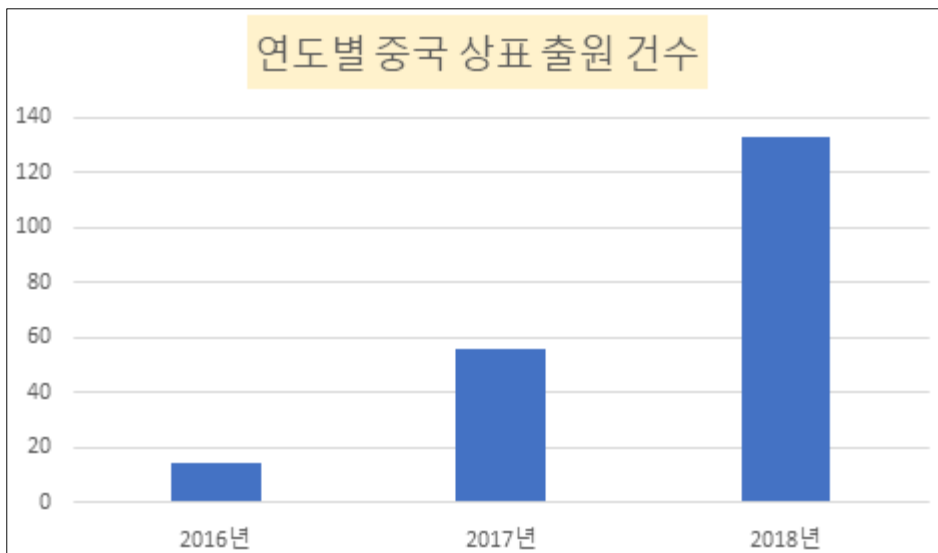
| 그림 3-1 | 석가장의 연도별 출원건수



- 석가장의 출원은 대부분 9류(안경), 14류(악세서리), 18류(가방), 25류(의류, 신발, 모자), 35류(수출입, 판매업)분야의 출원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 브랜드들도 다소 섞여 있긴 하나 대부분은 한국 의류 브랜드, 그 중에서도 신진 디자이너들의 영문 상표를 그대로 출원함.
- 2018년에는 그 출원 건수가 400건에 달해 2019년에 공고 또는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본 브로커에 대한 공동대응의 시의성 및 필요성은 매우 높음.
- 패션 업계 종사자라면 중국 상표브로커 ‘석가장전애전자상무유한회사(이하 석가장으로 약칭)’에 주목해야 함.
- 석가장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패션 분야의 기업형 상표 브로커이며, 출원 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상표를 출원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텍스트나 로고를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상표들을 띄어쓰기 없이 결합한 형태 또는 원래 상표명에서 소문자 또는 대문자의 띄어쓰기 조합을 달리한 형태 등 변형을 꾀하고 있음.

- 상표 브로커 석가장이 이처럼 띄어쓰기 없는 형태로 출원하는 주된 이유는 심사관에게 혼란을 주어 해당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 함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며, 석가장의 상표 출원이 정량적으로도 늘어나고 정성적으로도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의가 필요.
- 라예귀(罗礼贵)
 - 라예귀는 개인으로서 중국기업신용정보조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으나, 보통의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와는 달리 실제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중국 및 해외의 동종 업계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있음.
 - 라예귀는 타오바오에 “luoligui(罗礼贵)의 중국어 병음 표기)”라는 점주명으로 입점해 있으며, 하기와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타오바오에서 등급이 높은 판매자로서 개점 기간이 “8年”으로 운영기간이 매우 오래 되었음

| 그림 3-2 | 라예귀의 연도별 중국상표 출원건수



- 라예귀는 2016년부터 출원을 시작하여 2018년에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음

- 출원 분야는 대부분 구체관절인형이 속하는 상품분류 제28류이며, 그 판매업인 35류도 종종 출원하고 있음.
- 라예귀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상표를 선점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반적인 상표 브로커의 행태와 달리 실제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모조품을 오랜 동안 제조 판매해 오던 자가 타인의 상표들을 대량으로 무단 출원하여 상표권을 선점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는 점. 실제로 해당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신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점, 상표들을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기업들의 출원 시점이 지연된 점 등으로 인해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브로커임.

II 상표브로커 대응 무효심판의 법적 논리 및 연속된 최근의 승소

- 최근의 법개정 및 심리기준 개정을 통해서 보면, 중국 상표국은 명확한 사용의사 없이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수집하여 선점하는 것이 확인되면, 선점된 상표의 주지저명도에 상관없이 상표를 거절하거나 무효시키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됨.
- 이는 최근 개정된 2017년 상표 심리 기준에서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더욱 명확하여졌음.
- 상기 심리기준에 의하면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란 계쟁상표 출원인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진실한 사용의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출원인의 실제 사용행위가 없고, 부당이득을 도모할 목적만 가지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상표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 수수료 등을 요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심리 기준 발표 당시부터 최근 중국 대량 상표 브로커 상대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살펴보면, 김광춘, 심양신사격림과 같이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상대로 상표법 제44조를 근거로한 무효심결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4조가 무효사유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사유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입법 상 미비가 있는데, 이 때문에 대량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44조가 아닌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 제7조를 근거로 이의결정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김광춘을 비롯한 여러 대량의 수익추구형 대량 상표선점 브로커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III 선점 상표의 재출원 시기 결정의 문제

- 하지만, 대부분의 상표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출원하거나 등록받아 놓은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상표와 지정상품으로 재출원을 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상표법은 무효심판 청구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대상상표가 무효되거나 거절된 경우, 독점적 출원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브로커가 자신의 상표에 이의/무효심판이 제기된 후 즉시 재출하는 경우,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또 다시 해당 상표를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제기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해야만 상표브로커에 의한 반복적인 상표선점을 예방할 수 있음.

IV 선점 상표의 재출원 및 거절결정의 문제

- 하지만, 무효심판 제기 후 바로 즉시 해당 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심리보다 상표의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무효심판의 심리가 먼저 진행되어 선점상표의 무효심결이 먼저 나오지 않는 한, 재출원한 상표의 출원은 선행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함.

- 3~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상표국은 선행상표에 대하여 무효나 이의가 제기되어 있어서 선행상표의 무효 여부에 따라 재출원상표의 등록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출원 상표의 심사를 무효나 이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주는 태도를 보였으나,
- 최근에는 선행상표에 대하여 무효나 이의가 제기되어 있어 심사보류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괄 거절해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무효심판/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와 동시에 선점 상표를 재출원하는 경우,
 - 무효/이의에 대한 심리보다 상표의 심사가 먼저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상표의 거절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복심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비용적 부담이 추가되는 문제가 생긴.
-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브로커의 재출원에 의한 선점 피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이의신청 제기 이후 상표출원은 반드시 해야 함.
 - 즉, 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복심 절차를 감수하는 출원을 해야만 안전하게 브로커의 반복적 상표 선점 행위를 막을 수 있음.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I 지재권 분쟁 개요

- 분쟁유형 (침해, 피침해)
 -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72.3%가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경우(피침해)로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경우(52.5%)보다 많음
 - 중견기업의 경우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80%로 중소기업(67.3%)과 벤처/이노비즈 기업(76.2%)의 경우보다 많음
 - 산업을 구분하면, 침해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90.9%로 전체에서의 비중(52.5%)보다 높음
- 세부 분쟁유형
 - (경고장)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43.6%로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34.7%)보다 많음
 - (국경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제품을 압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5%, 해외 세관에서 자사제품이 압류당한 비중은 2%
 - (행정조치)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0.8%
 - (소송) 분쟁기업 중 최근 5년간 타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31.7%로 피소 비중(22.8%)보다 높음
 - (전시회 분쟁) 분쟁기업 중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겪은 비중은 9.9%로 나타남

□ 특허보증 경험

- 응답기업 중 최근 5년간 특허보증¹⁹⁾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4.8%,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명²⁰⁾을 요구받은 비중은 28.7%로 나타남
- 산업을 구분하면,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비율은 화학산업(38.9%)에서, 비침해 증명을 요구받은 비중은 전기전자산업(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은 미국이 56%로 가장 높고, 중국(48%), 유럽(40%), 일본(28%) 순임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25개 기업), 향후 납품제품으로 인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금액 한도 없음)해야 하는 경우가 56%로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4%)보다 높았음

□ 분쟁 기업의 IP보유 및 관리 현황

- (IP 담당부서 및 인력) 분쟁경험이 있는 기업 중 지식재산권 담당부서²¹⁾가 있는 비중은 64.6%, 평균 담당인력²²⁾은 1.9명, 이 중 전담인력은 평균 0.8명
- (해외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응답기업이 각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비율은 중국이 91.1%로 가장 높고, 미국(79.2%), 유럽(71.3%), 일본(70.3%), 기타국가(50.5%) 순
-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분쟁경험 기업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활동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음(72.3%)

19)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바이어에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

20) 바이어가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와 타 기업의 특허 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21)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와 겸임부서 모두 포함

22) 산업재산권 담당부서, 인력: 산업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산업재산권 동향 조사, 특허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산업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

II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 권리유형

- (피침해 분쟁)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상표분쟁 63.4%, 특허 20.3%, 디자인 11.4%
- (침해 분쟁) 67건의 침해 분쟁 중 특허분쟁이 49.3%, 상표(38.8%), 디자인(6.0%)

□ 발생국가

- (피침해 분쟁) 중국 63.4%, 기타국가 19.5%
 - 중국에서의 상표분쟁 41.5%, 기타국가 상표분쟁 15.4%
- (침해 분쟁) 미국 31.3%, 중국 26.9%
 -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23.9%, 중국에서의 상표분쟁 19.4%

□ 기업 유형

- (피침해 분쟁) 일반 중소기업이 61.8%로 대다수를 차지
 - 일반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37.4%, 중견기업의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14.6%
- (침해 분쟁) 일반 중소기업 46.3%, 중견기업 23.9%, 벤처기업 22.4%
 - 중소기업의 미국에서의 침해분쟁 17.9%, 중소기업의 중국에서의 침해분쟁 13.4%

□ 업종

- (피침해 분쟁) 기타제조업이 20.3%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과 화학산업이 각각 18.7%, 기계산업 13.8%, 기타 서비스업 11.4% 순
- (침해 분쟁) 전기전자와 화학산업이 17.9%로 가장 많고, 기계산업(16.4%), 기타 제조업(11.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9%) 순

□ 대응활동 및 시작형태

- (피침해 분쟁 대응) 피침해에 대해 항의·경고장 발송 41.5%, 소송 33.3%, 행정조치

17.9%, 라이선스 요구 9.8% 순

- 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특허(40%)와 미등록디자인(40%)에서 높고, 행정조치를 취한 비중은 상표 분쟁(24.4%)에서 높음

- (침해 분쟁 시작형태)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56.7%
 - 상대기업이 바로 소송제기 31.3%, 라이선스 요구 13.4%
 - (미국, 유럽, 일본) 경고장 발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음
 - (중국) 바로 소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50%로 더 많음

□ 상대기업 국적

- (피침해 분쟁) 중국 65.9%, 기타 16.3%
 - (특허) 중국 44%, (상표) 중국 67.9%
- (침해 분쟁) 미국 32.8%, 중국 22.4%
 - (특허) 미국 48.5%, (상표) 중국 42.3%

□ 피해 시점(피침해) 및 경고장 수령시점(침해)

- (피침해 분쟁) 제품 출시 후 81.3%, 출시 전 18.7%
- (침해 분쟁) 제품 출시 후 64.2%, 출시 전 13.4%

□ 피해인지 경로

- (피침해 분쟁) 시장조사 과정(48%), 거래처의 신고(27.6%)
 - (유럽) 시장조사 과정(22.2%)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피침해 탐지를 위한 적극적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유추

□ 대응비용

- (피침해 분쟁) 84%에서 대응비용 발생, 평균 55백만원
 - (특허) 152백만원, 상표(평균 35백만원), 디자인(평균 6.7백만원)
 - (유럽) 168백만원, (미국) 110백만원, (일본) 56백만원, (중국) 44백만원

- (침해 분쟁) 85%에서 대응비용 발생, 평균 226백만원
 - (특허) 490백만원, 상표(30백만원), 디자인(47백만원)
 - (미국) 443백만원, (중국) 50.3백만원, (유럽) 47.7백만원, 일본 110.7백만원
- 소송비용
 - (피침해 분쟁) 32%에서 소송비용 발생, 평균 80백만원
 - (특허) 155백만원, (상표) 57백만원
 - (유럽) 230백만원, (일본) 95백만원, (중국) 70백만원, (미국) 50백만원
 - (침해 분쟁) 39%에서 소송비용 발생, 평균 221백만원
 - (특허) 458백만원, 상표 49.3백만원
 - (미국) 1,063백만원, (중국) 54.8백만원, (유럽) 66백만원
- 피해규모 (자사손실액)
 - (피침해 분쟁) 평균 480백만원 (119건)
 - (특허) 904백만원, (상표) 407백만원, (디자인) 153백만원
 - (미국) 1,437백만원, (유럽) 610백만원, (중국) 496백만원
-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 (피침해 분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는 각각 6건(4.9%)과 12건(9.8%)
 - (손배금) 평균 664백만원 (특2, 상4)
 - (합의금) 평균 269백만원 (특2, 디1, 상9)
 - (침해 분쟁)
 - (합의금 지불) 합의금을 지불한 2건(특허)의 평균 합의금은 30백만원
 - (손해배상금 지불)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2건(특허)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46.8백만원
 - (라이선스 비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5건(특허)(미국 4건, 유럽 1건)으로 평균 라이선스 비용은 1,270백만원

□ 분쟁기간

- (피침해 분쟁) 조사시점에 분쟁이 종결된 사건은 77건, 평균 분쟁기간은 평균 12.9개월
- (침해 분쟁) 조사시점에 종결된 41건의 평균 분쟁기간은 15.0개월

□ 종결형태

- (피침해 분쟁) 123건의 피침해 분쟁은 시장진입 저지로 종결된 경우가 29건(23.6%)으로 가장 많음
 - 피침해 분쟁 중 15.4%는 협상으로 종결되었고, 협상 결과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 종결된 경우는 8.1%, 라이선스 체결로 종결된 경우는 7.3%
 - 피침해 분쟁 중 23.6%는 소송으로 종결되었고, 소송 승소는 14.6%, 패소는 4.9%, 소송 취하는 4.1%
- (침해 분쟁) 67건의 침해분쟁 사건 중 협상으로 종결된 비율은 22.4%, 소송으로 종결된 비중은 22.4%
 - 협상 후 합의금을 지불한 비중은 6.0%,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16.4%
 - 소송 후 승소로 종결된 경우는 16.4%, 중간에 합의 등을 통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는 4.5%

제2절

시사점

□ 피침해 분쟁의 특징

- 피침해 분쟁 123건 중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인 경우는 78.1%로 대다수를 차지
- 피침해 분쟁은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 피침해 분쟁 123건 중 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 63.4%,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이 전체의 41.5%
 - ※ ('14년 조사) 중국에서의 피침해 분쟁 비중은 60.3%,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은 45.8%
 - 미국과 유럽, 기타국가에서 발생한 피침해 분쟁의 상대기업이 중국 국적인 경우도 각각 14.3%, 22.2%, 16.7%로 타 국가에서도 중국기업에 의한 지적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침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지고 있음
 - 피침해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해당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응답 비중은 '14년 조사에서는 4.5%였으나, '18년도 조사에서는 23.6%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피해는 특히 상표 분쟁에서 비중이 높음(29.5%)
 - 상표권 분쟁의 경우 주로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 등으로 인해 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타 분쟁에 비해 심각(사업축소 및 철수)하기 때문에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

□ 침해분쟁의 특징

- 침해분쟁 67건 중 기업유형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인 경우는 68.7%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침해분쟁의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 미국 31.3%, 중국 26.9%,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23.9%
- 특허/실용신안 침해분쟁이 전체의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표 (38.8%), 디자인(6.0%) 순
- 특허침해 분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23.9%), 상표침해 분쟁은 중국에서(19.4%), 디자인 및 미등록 디자인 침해분쟁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생
- 특허분쟁은 고액의 대응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비용이 예상
 - 침해분쟁의 평균 대응비용은 226백만원, 특허의 경우 490백만원 소요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산업과 화학산업(17.9%)이 가장 많았고, 기계산업(16.4)이 뒤를 이음
- 특히,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은 NPEs가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맞소송 등의 일반적 특허소송 전략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지원 (NPEs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됨
-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 양상 변화에 따른 분쟁지원 정책의 차별화 필요
 - 중국의 기술발전 및 지재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피침해 분쟁의 상대국가에서 침해분쟁*의 상대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14년 조사에는 침해분쟁이 발생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에 불과 (미국 43.2%)했으나, '18년 조사에서는 26.9%로 대폭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 또한, 특허보증에 필요한 수출국의 경우 '14년 조사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5%였으나, '18년 조사에서는 48%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중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침해분쟁 시 소송 비중도 중국은 타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데,
 - 침해분쟁의 경우,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경고장 발송으로 시작된 경우(각각 71.4%, 75%, 71.4%)가 대부분인데 반해, 중국은 바로 소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 50%로 더 많음
- 또한, 침해 분쟁 시 소송으로 진행된 비중은 중국의 경우 72.2%로 미국(14.3%)과 일본(14.3%)에서 진행된 침해분쟁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소송비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중소·벤처기업 분쟁대응 시 지원 필요

- 국제 지적권 분쟁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분쟁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
 - 해외에서 IP분쟁을 겪은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은 '08년 25%에서 크게 증가하여 '18년 75.3%로 집계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피침해 분쟁기업의 9.6%, 특히 벤처기업의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서의 지적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예방 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견기업에는 분쟁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특허보증 등 불공정 계약에 노출

- 벤처기업의 경우 과도한 특허보증을 요구받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비중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중견기업의 경우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비중(71.4%)이 모든 손해를 보상(금액 한도 없음)하는 경우(28.6%)보다 높는데 반해,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각각 58.3%와 75%로 타 기업유형에 비해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특허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특허 분쟁 시 막대한 분쟁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허보증 시 향후 잠재적 특허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특허보증 요구 시 협상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분에 따른 분쟁지원 방향 차별화

- 침해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90.9%로 전체에서의 비중(52.5%)보다 높아, 전자산업에서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이는 특허보증에서도 나타나는데, 납품 시 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했던 비중이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45.5%로 전체산업에서의 비중(28.7%)에 비해 높아, 전기전자산업에서 의도하지 않은 침해로 인한 분쟁위험이 높음을 시사
- 반면, 화학산업과 기타 제조업에서는 피침해 분쟁 발생 비중(각각 83.3%와 85.7%)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즉,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침해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화학산업은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유럽에서 지재권 피침해 탐지를 위한 지원 필요

- 123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피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로로 시장조사 과정(48%)에서와 거래처의 신고(27.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유럽의 경우 거래처의 신고로 인지한 경우(44.4%)와 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 인지한 경우(33.3%)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럽에서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피침해 탐지를 위한 적극적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
- 따라서, 유럽의 경우 기업의 적극적 피침해 탐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재권 분쟁 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24.7%에 불과
- 국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모름(43.6%), 절차가 복잡함(40%)을 선택한 비중이 높아, 홍보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첨 부

첨부1 설문조사표

첨부2 산업분류표

첨부3 통계표

첨부 1

설문조사표

지식재산권 해외 보호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2018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조사개요>

본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및 관련 법·제도의 활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피침해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 정책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주)코리아메이타네트웍(KDN) 전화 : 02-2183-9134 (윤창용 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전화: 02-2189-2650

<발송방법>

조사표 발송은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문시양식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ip.re.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135-9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4 KDN 빌딩
팩스: 02-512-0777, E-mail : kdn22@kdn21.co.kr

기업명		기업(본사) 소재지	
성명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E-mail	

1. 일반 현황

1.1. 귀사의 기업유형 · 주요 거래 국가 · 사업 형태 등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시)

기업유형	① 대기업 ② 일반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벤처기업/INNO-BIZ기업					
거래 국가 (복수응답)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유럽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기타1 ()	<input type="checkbox"/> 기타2 ()
사업 형태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출(직접) <input type="checkbox"/> 수출(판매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지생산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임

1.2. 귀사가 종사하고 있는 주요 업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V표시)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1. 농업, 임업 및 어업	<input type="checkbox"/>
2. 광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4. 음료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5. 담배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input type="checkbox"/>
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input type="checkbox"/>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input type="checkbox"/>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input type="checkbox"/>
14.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7. 1차 금속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1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input type="checkbox"/>
1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1. 전기장비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5. 가구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6. 기타 제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2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input type="checkbox"/>
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input type="checkbox"/>
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input type="checkbox"/>
30.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31. 도매 및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32. 운수 및 창고업	<input type="checkbox"/>
33. 숙박 및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34. 정보통신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35. 금융 및 보험업	<input type="checkbox"/>
36. 부동산업	<input type="checkbox"/>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3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3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input type="checkbox"/>
40. 교육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input type="checkbox"/>
45. 국제 및 외국기관	<input type="checkbox"/>

※ 본 조사는 해외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 분쟁 중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영업비밀 침해·피침해와 상품형태(미등록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귀사의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담당인력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전담, 겸임)*	지식재산권 담당 인력	
	① 있음	총 인력(겸임인력 포함)
② 없음	이 중 전담인력**	명

* 지식재산권 담당부서 또는 인력은 지식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지식재산권 동향 조사, 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지식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1.4. 귀사의 해외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X 표시)

보유국가 관리유형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1 (국가: __)		기타 2 (국가: __)		기타 3 (국가: __)	
	특허/실용신안	O	X	O	X	O	X	O	X	O	X	O	X	O
상표	O	X	O	X	O	X	O	X	O	X	O	X	O	X
디자인	O	X	O	X	O	X	O	X	O	X	O	X	O	X

1.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귀사의 사전예방활동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 ② 해외출원 확대
- ③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 ④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채용·교육 실시
- ⑤ 별다른 활동 안 함

1.6. 2014년 ~ 현재까지의 경험 중 가장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보증과 관련된 귀사의 경험에 대해 문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보증요구 받은 경험	있음	①	(특허보증요구 받은 경우)	미국	①
	없음	②		중국	②
납품 제품에 포함된 귀사의 특허가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아래 설명 참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	있음	①	특허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	유럽	③
	없음	②		일본	④
				기타(국가: __)	⑤
(특허보증요구 받은 경우)	향후 납품제품으로 인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요구) 내용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의 내에서 보상 (금액 한도 있음)				①
	관련된 모든 손해를 보상 (금액 한도 없음)				②

※ 특허보증: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바이어에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
 ※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증명: 바이어가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와 타 기업의 특허 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1.7. 2014년 이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에 대해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분쟁경험 여부		
분쟁 유형 (복수 응답)	경고장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 있음 ①
		경고장을 수령한 경험 있음 ②
	국경조치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 제품을 압류한 경험 있음 ③
		해외 세관에서 자사 제품이 압류당한 경험 있음 ④
	행정조치	타사 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경험 있음 ⑤
		자사 제품에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아본 경험 있음 ⑥
	소송	소송을 제기한 경험 있음 (소송 시 원고) ⑦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음 (소송 시 피고) ⑧
	전시회 분쟁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음 ⑨

II. 지식재산권 피침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해외기업이 침해

지식재산권 피침해란?	해외에서 출원/등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미등록디자인을 해외기업이 도용함으로써 유무형의 피해(매출액 감소, 이미지 악화 등)를 초래한 것	
조사의 범위	2014년 이후 시작·진행·종료된 산업재산권 피침해 관련 분쟁 경험 (예를 들어, 2010년에 분쟁이 시작되었어도 현재까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에 포함)	

2.1. 해당 지역에서 해외 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건수에 대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발생 권리유형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1 (국가:___)	기타2 (국가:___)	기타3 (국가:___)
특허/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상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디자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영업비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2.2. 해외 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대응현황을 각 사건별로 아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 사건 3건까지 기입)

구분	A사건	B사건	C사건
권리 유형 (복수응답)	※ 보기 : ① 특허/실용신안 ② 상표 ③ 디자인 ④ 영업비밀 ⑤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분쟁 발생 지역	※ 보기 : ① 미국 ② 중국 ③ 유럽 (국가명 기입) ④ 일본 ⑤ 기타 (국가명 기입)		
침해 기업 본사 소재지	※ 보기 : ① 미국 ② 중국 ③ 유럽 (국가명 기입) ④ 일본 ⑤ 한국 ⑥ 기타 (국가명 기입)		
피해 형태 (복수응답)	※ 보기 : ① 매출감소 ② 대외 이미지 하락 ③ 사업축소·철수 ④ 기타_____		
[상표권인 경우] 피해 형태 (복수응답)	※ 보기 : ① 의도적 상표 선등록 ②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 ③ 위조상품의 수출 ④ 기타_____		
피해 (유출) 시점	※ 보기 : ① 제품출시 전 (R&D 단계 포함) ② 제품 출시 후		
피해 인지 경로	※ 보기 : ① 시장조사 과정 ② 박람회나 전시회 ③ 국내 영업점 ④ 해외 영업점 ⑤ 소비자의 신고 ⑥ 거래처의 신고 ⑦ 기타_____		
피해 규모	①자사손실액_____백만원	①자사손실액_____백만원	①자사손실액_____백만원
	②손해배상액_____백만원	②손해배상액_____백만원	②손해배상액_____백만원
대응 비용	③합 의 금_____백만원	③합 의 금_____백만원	③합 의 금_____백만원
	① 자사손실액 (기대수익손실 포함) ② 손해배상액 수령액 ③ 합의금 수령액		
대응 비용	① 자사손실액: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액		
	② 손해배상액: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기업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응 비용	② 합의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 종결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총 대응비용_____백만원	총 대응비용_____백만원	총 대응비용_____백만원
대응 비용	이 중 소송비용_____백만원	이 중 소송비용_____백만원	이 중 소송비용_____백만원
	※ 분쟁 대응비용: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침해조사비용, 법률 자문비용(경고장 발송, 소송 자문 포함), 소송비용 등		
피침해 대응 (복수응답)	※ 보기 : ① 라이선스 요구 ② 항의·경고장 발송 ③ 행정조치(단속조사 등) ④ 세관조치 (물품 압류 등) ⑤ 소송 ⑥ 무대응 ⑦ 기타 (구체적으로)		

분쟁 기간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진행중인 경우) _____개월	(진행중인 경우) _____개월	(진행중인 경우) _____개월
분쟁 종결 형태 (복수응답)	※ 보기		
	협상	합의금·손해배상금 수령 (소송 도중 협상으로 종결한 경우 포함)	①
		라이선스 체결 (소송 도중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 포함)	②
		협상 진행 중	③
	행정 및 세관조치	시장 진입 저지	④
	소송	소송 승소 (손해배상액 수령·라이선스 체결 등)	⑤
		소송 패소	⑥
		소송 취하 (소송 도중 특허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⑦
		소송 진행 중	⑧
	기타	소송비용 부담,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대응	⑨
해당 칸에 직접 작성		⑩	

2.3. 해외 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귀사가 도움을 요청한 기관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해외)
- ②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국내)
- ③ 국내 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 ④ 해외 현지 공공기관
- ⑤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음(회사 자체 인력)
- ⑥ 기타 (_____)

2.4. 해외 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귀사가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름
- ② 공공기관 지원은 비전문적이라고 생각
- ③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④ 도움 요청 절차가 복잡함
- ⑤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 ⑥ 기타 (_____)

Ⅲ. 지식재산권 침해: 해외기업이 귀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지식재산권 침해란?	해외기업이 출원/등록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미등록 디자인을 귀사가 침해했다고 주장	
조사의 범위	2014년 이후 시작·진행·종료 된 지식재산권 피침해 관련 분쟁 경험 (예를 들어, 2010년에 분쟁이 시작되었어도 현재까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에 포함)	

3.1. 해외기업이 귀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수에 대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발생 지역 권리유형	분쟁발생 지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1 (국가:___)	기타2 (국가:___)	기타3 (국가:___)	
특허/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상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디자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영업비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3.2. 해외기업이 귀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아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 사건 3건까지 기입)

구분	A사건	B사건	C사건
침해 권리 유형 (복수응답)	※ 보기 :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상표 ④ 디자인 ⑤ 영업비밀 ⑥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분쟁 발생 지역	※ 보기 : ① 미국 ② 중국 ③ 유럽 (국가명 기입) ④ 일본 ⑤ 기타 (국가명 기입)		
분쟁 시작 형태 (복수응답)	※ 보기 : ① 라이선스 요청 등 협상 제안 ② 경고장 수령 ③ 행정 조치 (단속조사 등) ④ 세관조치 (물품 압류 등) ⑤ 소송 ⑥ 전사회 참가 시 압수, 경고 등 ⑦기타_____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 보기 : ① 경쟁사 ② NPEs ③ 협력업체 ④ 대학 및 연구소 ⑤ 기타_____		
	※ NPE: 미국의 인텔렉추얼 벤처스 등과 같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라이선싱을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을 받는 수익구조를 가진 업체		

침해주장 기업 본사 소재지	* 보기 : ① 미국 ② 중국 ③ 유럽 (국가명 기입) ④ 일본 ⑤ 한국 ⑥ 기타 (국가명 기입)		
경고장 수령 시점	* 보기 : ① 제품 출시 전 ② 제품 출시 후 ③ 경고장 수령하지 않았음		
소송 여부	* 보기 : ① 소송함 ② 소송하지 않음		
대응 비용	① _____ 백만원	① _____ 백만원	① _____ 백만원
	② _____ 백만원	② _____ 백만원	② _____ 백만원
	③ _____ 백만원	③ _____ 백만원	③ _____ 백만원
	④ _____ 백만원	④ _____ 백만원	④ _____ 백만원
	⑤ _____ 백만원	⑤ _____ 백만원	⑤ _____ 백만원
	* 보기 : ① 총 대응비용 ② 이 중 소송비용 ③ 판결 전 합의금 ④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⑤ 합의 후 라이선싱 비용		
	※ 분쟁 대응비용: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침해조사 비용, 법률 자문비용 (경고장 발송, 소송 자문 포함), 소송비용 등 ※ 손해배상금: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지급한 금액 ※ 합의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 종결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분쟁 종결 형태 (복수응답)	* 보기		
	협상	합의금·손해배상금 수령 (소송 도중 협상으로 종결한 경우 포함)	①
		라이선스 체결 (소송 도중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 포함)	②
		협상 진행 중	③
	행정 및 세관조치	시장 진입 지지	④
		소송	소송 승소 (손해배상액 수령·라이선스 체결 등)
	소송 패소		⑥
	소송 취하 (소송 도중 특허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⑦
	소송 진행 중		⑧
	기타	침해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내용증명)를 보냄	⑨
		무대응	⑩
해당 칸에 직접 작성		⑪	
분쟁 기간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종결된 경우) _____개월
	(진행 중인 경우) _____개월	(진행 중인 경우) _____개월	(진행 중인 경우) _____개월

3.3. 귀사가 경험한 전시회 분쟁(해외 전시회에 참가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시품을 압수당하거나 전시를 중지당하는 등)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분쟁경험 여부				
① 분쟁경험이 없음		② 분쟁경험이 있음 (있다면 가장 최근 사례에 대해 아래 질문에 답변)		
경험국가				
① 미국	② 중국	③ 유럽	④ 일본	⑤ 기타(_____)
전시회 압수 시 대응형태				
①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철수				
② 가치분, 가압류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에 항고(변호사 선임)				
③ 법원에 상대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④ 분쟁을 예상하여 비침해를 주장하는 방어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				
⑤ 기타(_____)				

3.4. 해외기업이 귀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사가 도움을 요청한 기관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해외)
- ②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국내)
- ③ 국내 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 ④ 해외 현지 공공기관
- ⑤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음(회사 자체 인력)
- ⑥ 기타 (_____)

3.5. 해외기업이 귀사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귀사의 손해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매출 감소
- ② 대외 이미지 하락
- ③ 손해배상·합의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④ 사업 축소 및 철수
- ⑤ 연구·개발에 차질
- ⑥ 기타 (_____)

IV. 산업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4.1.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이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2순위까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 ②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 ③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 ④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⑤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⑥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 ⑦ 기타 (_____)

4.2. 다음 중 사전에 알고 계셨던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시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 ②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③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KOTRA)
- ④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⑤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⑥ NPE 소송알람 서비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⑦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KOTRA)
- ⑧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사업 (KOTRA)

4.3. 산업재산권 침해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제도보안이 어떠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2

산업분류표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A (01~03)	농업, 임업 및 어업
	B (05~08)	광업
	C (10)	식료품 제조업
	C (11)	음료 제조업
	C (12)	담배 제조업
2. 도매 및 소매업	G (45~47)	도매 및 소매업
3.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J (58~63)	정보통신업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 건설업	F (41~42)	건설업
5. 기타 서비스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36~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H (49~52)	운수 및 창고업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K (64~66)	금융 및 보험업
	L (68)	부동산업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85)	교육 서비스업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94~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 화학산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산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 (24)	1차 금속 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 전기전자산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0. 기계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 기타 제조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 제품 제조업

첨부 3

통계표

<전체 분쟁 및 특허보증 현황>

1. 침해 및 피침해 경험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피침해	침해	피침해&침해
전 체		101	47.5	27.7	24.8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20.0	20.0
	중견기업	20	45.0	20.0	35.0
	일반중소기업	55	43.6	32.7	23.6
	벤처/이노비즈기업	21	57.1	23.8	19.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85.7	7.1	7.1
	도매 및 소매업	5	40.0	20.0	4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75.0	25.0	0.0
	기타 서비스업	9	55.6	22.2	22.2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50.0	33.3	16.7
	화학산업	18	33.3	16.7	5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50.0	50.0	0.0
	전기전자산업	11	9.1	81.8	9.1
	기계산업	16	31.3	31.3	37.5
	기타제조업	14	64.3	14.3	21.4
거래 국가	미국	67	46.3	26.9	26.9
	중국	82	48.8	24.4	26.8
	유럽	58	37.9	29.3	32.8
	일본	60	41.7	28.3	30.0
	기타	45	57.8	20.0	22.2

2. 전체 분쟁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01	66.3	81.2	57.4	59.4	44.6
기업 유형	대기업	5	80.0	100.0	80.0	100.0	0.0
	중견기업	20	70.0	90.0	65.0	60.0	65.0
	일반중소기업	55	67.3	78.2	58.2	56.4	40.0
	벤처/이노비즈기업	21	57.1	76.2	42.9	57.1	47.6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78.6	85.7	50.0	50.0	50.0
	도매 및 소매업	5	40.0	100.0	40.0	40.0	6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50.0	50.0	25.0	0.0	75.0
	기타 서비스업	9	44.4	77.8	33.3	55.6	55.6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66.7	83.3	50.0	33.3	66.7
	화학산업	18	66.7	88.9	66.7	72.2	38.9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50.0	75.0	50.0	75.0	25.0
	전기전자산업	11	63.6	72.7	63.6	63.6	36.4
	기계산업	16	75.0	81.3	75.0	81.3	37.5
	기타제조업	14	78.6	78.6	64.3	57.1	35.7

3. 분쟁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1) 미국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수출 (직접)	수출 (판매법인)	현지생산	프랜차이즈	기타
전 체		67	61.2	31.3	1.5	3.0	3.0
기업 유형	대기업	4	0.0	100.0	0.0	0.0	0.0
	중견기업	14	50.0	42.9	7.1	0.0	0.0
	일반중소기업	37	70.3	21.6	0.0	2.7	5.4
	벤처/이노비즈기업	12	66.7	25.0	0.0	8.3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1	63.6	27.3	0.0	0.0	9.1
	도매 및 소매업	2	0.0	50.0	0.0	0.0	5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50.0	0.0	0.0	50.0	0.0
	기타 서비스업	4	50.0	25.0	0.0	25.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50.0	50.0	0.0	0.0	0.0
	화학산업	12	75.0	25.0	0.0	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5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7	57.1	42.9	0.0	0.0	0.0
	기계산업	12	50.0	41.7	8.3	0.0	0.0
	기타제조업	11	81.8	18.2	0.0	0.0	0.0

3. 분쟁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2) 중국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수출 (직접)	수출 (판매법인)	현지생산	프랜차이즈	기타
전 체		82	62.2	17.1	9.8	6.1	4.9
기업 유형	대기업	5	80.0	0.0	20.0	0.0	0.0
	중견기업	18	38.9	33.3	16.7	0.0	11.1
	일반중소기업	43	67.4	14.0	9.3	4.7	4.7
	벤처/이노비즈기업	16	68.8	12.5	0.0	18.8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2	75.0	8.3	8.3	8.3	0.0
	도매 및 소매업	5	20.0	40.0	20.0	0.0	2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0.0	0.0	0.0	100.0	0.0
	기타 서비스업	7	71.4	14.3	0.0	14.3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5	40.0	20.0	20.0	0.0	20.0
	화학산업	16	62.5	25.0	6.3	0.0	6.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66.7	0.0	33.3	0.0	0.0
	전기전자산업	8	75.0	12.5	0.0	0.0	12.5
	기계산업	13	61.5	23.1	15.4	0.0	0.0
	기타제조업	11	72.7	9.1	9.1	9.1	0.0

3. 분쟁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3) 유럽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수출 (직접)	수출 (판매법인)	기타
전 체		58	77.6	20.7	1.7
기업 유형	대기업	4	100.0	0.0	0.0
	중견기업	13	76.9	23.1	0.0
	일반 중소기업	32	78.1	21.9	0.0
	벤처/이노비즈기업	9	66.7	22.2	11.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7	85.7	14.3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3	33.3	66.7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33.3	33.3
	화학산업	12	91.7	8.3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7	85.7	14.3	0.0
	기계산업	12	66.7	33.3	0.0
	기타제조업	9	100.0	0.0	0.0

3. 분쟁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4) 일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수출 (직접)	수출 (판매법인)	프랜차이즈	기타
전 체		60	73.3	18.3	1.7	6.7
기업 유형	대기업	5	80.0	20.0	0.0	0.0
	중견기업	12	58.3	33.3	0.0	8.3
	일반 중소기업	31	83.9	9.7	0.0	6.5
	벤처/이노비즈기업	12	58.3	25.0	8.3	8.3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7	71.4	14.3	0.0	14.3
	도매 및 소매업	2	0.0	50.0	0.0	50.0
	기타 서비스업	5	60.0	20.0	2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2	0.0	50.0	0.0	50.0
	화학산업	13	84.6	15.4	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10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7	85.7	0.0	0.0	14.3
	기계산업	13	76.9	23.1	0.0	0.0
	기타제조업	8	75.0	25.0	0.0	0.0

3. 분쟁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5) 기타국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수출 (직접)	수출 (판매법인)	현지생산	프랜차이즈	기타
전 체		45	100.0	24.4	8.9	13.3	2.2
기업 유형	중견기업	13	69.2	46.2	30.8	0.0	0.0
	일반 중소기업	22	118.2	13.6	0.0	13.6	4.5
	벤처/이노비즈기업	10	100.0	20.0	0.0	30.0	0.0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7	114.3	14.3	0.0	14.3	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3	66.7	0.0	33.3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0.0	0.0	0.0	166.7	0.0
	기타 서비스업	5	120.0	20.0	0.0	0.0	2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125.0	25.0	0.0	0.0	0.0
	화학산업	7	100.0	28.6	28.6	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0.0	20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4	175.0	0.0	0.0	0.0	0.0
	기계산업	6	100.0	33.3	16.7	0.0	0.0
	기타제조업	5	80.0	40.0	0.0	0.0	0.0

8.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단위: 개 사(빈도), %, 명(평균)]

		빈도	있음	담당인력 평균	전담인력 평균
전체		101	64.4	1.9	0.8
기업 유형	대기업	5	80.0	2.8	2.4
	중견기업	20	75.0	2.6	1.4
	일반중소기업	55	63.6	1.7	0.6
	벤처/이노비즈기업	21	52.4	1.6	0.5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64.3	2.1	1.1
	도매 및 소매업	5	40.0	1.6	0.6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75.0	1.3	0.8
	기타 서비스업	9	55.6	1.9	0.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66.7	1.5	0.2
	화학산업	18	66.7	1.9	1.1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25.0	1.8	0.5
	전기전자산업	11	90.9	2.0	1.2
	기계산업	16	56.3	2.1	1.0
	기타제조업	14	71.4	2.0	0.6

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1) 미국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빈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80	55.0	87.5	35.0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100.0	60.0
	중견기업	20	65.0	85.0	30.0
	일반중소기업	39	41.0	87.2	41.0
	벤처/이노비즈기업	16	75.0	87.5	18.8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30.8	100.0	30.8
	도매 및 소매업	4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100.0	0.0
	기타 서비스업	4	25.0	100.0	25.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5	20.0	100.0	0.0
	화학산업	15	53.3	93.3	53.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66.7	66.7	33.3
	전기전자산업	8	62.5	50.0	37.5
	기계산업	13	100.0	84.6	46.2
	기타제조업	12	66.7	83.3	41.7

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2) 중국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중국			
		빈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 체		92	51.1	82.6	42.4
기업 유형	대기업	5	80.0	100.0	60.0
	중견기업	20	55.0	90.0	30.0
	일반 중소기업	47	42.6	80.9	46.8
	벤처/이노비즈기업	20	60.0	75.0	4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14.3	100.0	42.9
	도매 및 소매업	5	0.0	100.0	4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33.3	66.7	0.0
	기타 서비스업	6	0.0	100.0	33.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33.3	100.0	16.7
	화학산업	16	62.5	87.5	68.8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66.7	66.7	33.3
	전기전자산업	9	77.8	55.6	22.2
	기계산업	16	87.5	75.0	43.8
	기타제조업	14	64.3	71.4	50.0

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3) 유럽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유럽			
		빈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 체		72	48.6	83.3	29.2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100.0	60.0
	중견기업	17	58.8	82.4	35.3
	일반 중소기업	36	36.1	86.1	30.6
	벤처/이노비즈기업	14	64.3	71.4	7.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9	11.1	100.0	33.3
	도매 및 소매업	3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33.3	66.7	0.0
	기타 서비스업	5	0.0	10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50.0	100.0	0.0
	화학산업	15	53.3	80.0	4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100.0	50.0
	전기전자산업	8	62.5	62.5	25.0
	기계산업	13	92.3	76.9	46.2
	기타제조업	10	50.0	80.0	20.0

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4) 일본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일본			
		빈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 체		71	60.6	78.9	26.8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100.0	60.0
	중견기업	18	61.1	77.8	27.8
	일반 중소기업	32	56.3	75.0	25.0
	벤처/이노비즈기업	16	68.8	81.3	18.8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0	20.0	100.0	10.0
	도매 및 소매업	2	50.0	5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50.0	50.0	0.0
	기타 서비스업	5	20.0	100.0	2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5	40.0	100.0	0.0
	화학산업	13	53.8	84.6	38.5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66.7	66.7	66.7
	전기전자산업	7	85.7	28.6	14.3
	기계산업	14	85.7	78.6	35.7
	기타제조업	10	90.0	80.0	40.0

9. 분쟁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5) 기타국가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기타			
		빈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 체		51	35.8	76.1	15.6
기업 유형	중견기업	12	58.3	66.7	20.8
	일반 중소기업	29	20.0	80.0	13.3
	벤처/이노비즈기업	10	52.0	76.0	16.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7	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4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30.0	70.0	10.0
	기타 서비스업	6	9.1	90.9	9.1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50.0	100.0	0.0
	화학산업	8	41.2	82.4	17.6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33.3	33.3
	전기전자산업	4	0.0	75.0	25.0
	기계산업	5	100.0	30.8	30.8
	기타제조업	8	52.9	64.7	29.4

10. 분쟁 경험 기업의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해외출원 확대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채용 교육 실시	별다른 활동 안 함
전 체		101	72.3	66.3	46.5	13.9	8.9
기업 유형	대기업	5	100.0	60.0	60.0	0.0	0.0
	중견기업	20	75.0	55.0	60.0	35.0	5.0
	일반중소기업	55	67.3	69.1	45.5	9.1	7.3
	벤처/이노비즈기업	21	76.2	71.4	33.3	9.5	19.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78.6	85.7	57.1	0.0	0.0
	도매 및 소매업	5	40.0	20.0	80.0	0.0	2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75.0	75.0	25.0	25.0	25.0
	기타 서비스업	9	22.2	44.4	33.3	0.0	33.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50.0	50.0	16.7	16.7	33.3
	화학산업	18	94.4	66.7	55.6	22.2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100.0	25.0	25.0	25.0	0.0
	전기전자산업	11	72.7	81.8	27.3	9.1	9.1
	기계산업	16	81.3	62.5	56.3	31.3	6.3
기타제조업	14	71.4	85.7	50.0	7.1	0.0	

11. 분쟁 경험 기업의 전체 분쟁 건수

[단위: 건(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합(%)
전 체		190	14.7	50.5	11.1	6.3	17.4	100
기업유 형	대기업	9	1.1	1.6	0.5	0.0	1.6	100
	일반중소기업	107	10.0	28.9	5.8	2.6	8.9	100
	중견기업	39	1.1	11.1	2.1	2.1	4.2	100
	벤처/이노비즈기업	35	2.6	8.9	2.6	1.6	2.6	1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7	1.1	10.5	1.1	0.0	1.6	100
	도매 및 소매업	11	0.5	3.7	0.5	0.0	1.1	1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5	1.1	1.1	0.0	0.0	0.5	100
	기타 서비스업	19	0.5	3.7	0.5	1.1	4.2	1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3	1.1	4.7	0.0	0.0	1.1	100
	화학산업	35	2.6	8.4	3.2	0.5	3.7	1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5	0.0	1.6	0.5	0.5	0.0	100
	전기전자산업	14	4.7	1.1	0.5	1.1	0.0	100
	기계산업	28	2.1	6.8	2.1	1.6	2.1	100
기타제조업	33	1.1	8.9	2.6	1.6	3.2	100	

		빈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합(%)
산재권 유형	특허/실용신안	58	10.0	8.4	5.8	2.6	3.7	100
	상표	104	4.2	33.7	3.7	1.1	12.1	100
	디자인	18	0.0	6.8	1.6	1.1	0.0	100
	영업비밀	2	0.0	0.5	0.0	0.0	0.5	100
	상품형태	8	0.5	1.1	0.0	1.6	1.1	100

12. 분쟁 경험 기업의 종결된 산재권 분쟁 기간

[단위: 건(빈도), %, 개월(평균)]

		빈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체		118	46.6	15.3	28.0	6.8	3.4	14.0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36	38.9	25.0	25.0	0.0	11.1	14.3
	상표	62	48.4	11.3	29.0	11.3	0.0	12.8
	디자인	14	57.1	7.1	28.6	7.1	0.0	12.3
	영업비밀	1	0.0	0.0	100.0	0.0	0.0	24.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5	60.0	20.0	20.0	0.0	0.0	9.8
분쟁 발생 지역	미국	18	33.3	16.7	33.3	11.1	5.6	18.4
	중국	56	46.4	10.7	37.5	5.4	0.0	14.3
	유럽	13	61.5	7.7	0.0	15.4	15.4	16.9
	일본	11	54.5	27.3	18.2	0.0	0.0	9.8
	기타	20	45.0	25.0	20.0	5.0	5.0	15.8

13. 분쟁 경험 기업의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 (1) 1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6)	기타
전체		101	27.7	9.9	6.9	26.7	14.9	12.9	1.0
기업 유형	대기업	5	0.0	20.0	20.0	60.0	0.0	0.0	0.0
	중견기업	20	10.0	15.0	5.0	40.0	15.0	15.0	0.0
	일반중소기업	55	32.7	9.1	9.1	20.0	14.5	12.7	1.8
	벤처/이노비즈기업	21	38.1	4.8	0.0	23.8	19.0	14.3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21.4	0.0	14.3	28.6	14.3	14.3	7.1
	도매 및 소매업	5	20.0	0.0	0.0	20.0	40.0	2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50.0	0.0	0.0	25.0	0.0	25.0	0.0
	기타 서비스업	9	22.2	22.2	0.0	33.3	11.1	11.1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33.3	16.7	0.0	33.3	16.7	0.0	0.0
	화학산업	18	38.9	11.1	0.0	33.3	11.1	5.6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0.0	0.0	25.0	50.0	0.0	25.0	0.0
	전기전자산업	11	27.3	9.1	18.2	36.4	9.1	0.0	0.0
	기계산업	16	18.8	25.0	6.3	12.5	18.8	18.8	0.0
기타제조업	14	35.7	0.0	7.1	14.3	21.4	21.4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13. 분쟁 경험 기업의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 (2) 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97	6.2	6.2	16.5	19.6	20.6	29.9	1.0
기업 유형	대기업	5	0.0	40.0	0.0	0.0	40.0	20.0	0.0
	중견기업	20	0.0	5.0	20.0	35.0	5.0	30.0	5.0
	일반중소기업	53	7.5	1.9	18.9	20.8	22.6	28.3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9	10.5	10.5	10.5	5.3	26.3	36.8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7.7	7.7	23.1	7.7	30.8	23.1	0.0
	도매 및 소매업	5	0.0	20.0	40.0	20.0	0.0	2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0.0	25.0	50.0	0.0	25.0	0.0	0.0
	기타 서비스업	9	0.0	0.0	0.0	11.1	22.2	66.7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0.0	0.0	0.0	16.7	33.3	50.0	0.0
	화학산업	17	0.0	5.9	29.4	17.6	17.6	29.4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0.0	0.0	0.0	50.0	50.0	0.0	0.0
	전기전자산업	11	18.2	0.0	18.2	18.2	9.1	27.3	9.1
	기계산업	15	13.3	6.7	13.3	33.3	6.7	26.7	0.0
	기타제조업	13	7.7	7.7	0.0	23.1	30.8	30.8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13. 분쟁 경험 기업의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 (3) 1+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101	33.7	15.8	22.8	45.5	34.7	41.6	2.0
기업 유형	대기업	5	0.0	60.0	20.0	60.0	40.0	20.0	0.0
	중견기업	20	10.0	20.0	25.0	75.0	20.0	45.0	5.0
	일반중소기업	55	40.0	10.9	27.3	40.0	36.4	40.0	1.8
	벤처/이노비즈기업	21	47.6	14.3	9.5	28.6	42.9	47.6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28.6	7.1	35.7	35.7	42.9	35.7	7.1
	도매 및 소매업	5	20.0	20.0	40.0	40.0	40.0	4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50.0	25.0	50.0	25.0	25.0	25.0	0.0
	기타 서비스업	9	22.2	22.2	0.0	44.4	33.3	77.8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33.3	16.7	0.0	50.0	50.0	50.0	0.0
	화학산업	18	38.9	16.7	27.8	50.0	27.8	33.3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0.0	0.0	25.0	100.0	50.0	25.0	0.0
	전기전자산업	11	45.5	9.1	36.4	54.5	18.2	27.3	9.1
	기계산업	16	31.3	31.3	18.8	43.8	25.0	43.8	0.0
	기타제조업	14	42.9	7.1	7.1	35.7	50.0	50.0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14. 분쟁 경험 기업의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정부 사업(복수응답)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6)	(7)	(8)	없음
전체		101	60.4	50.5	48.5	19.8	10.9	5.9	19.8	45.5	6.9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40.0	40.0	40.0	0.0	20.0	20.0	0.0	20.0
	중견기업	20	60.0	55.0	65.0	25.0	15.0	10.0	20.0	60.0	0.0
	일반중소 기업	55	56.4	41.8	41.8	14.5	10.9	1.8	14.5	41.8	9.1
	벤처/이노 비즈기업	21	71.4	71.4	52.4	23.8	9.5	9.5	33.3	52.4	4.8

(1)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2)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5)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6) NPE 소송알림 서비스, (7)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8)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사업

14. 분쟁 경험 기업의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정부 사업(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6)	(7)	(8)	없음
전체		101	60.4	50.5	48.5	19.8	10.9	5.9	19.8	45.5	6.9
업 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64.3	50.0	28.6	21.4	14.3	7.1	7.1	50.0	7.1
	도매 및 소매업	5	20.0	60.0	40.0	20.0	0.0	0.0	20.0	2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25.0	25.0	50.0	25.0	0.0	0.0	0.0	50.0	25.0
	기타 서비스업	9	33.3	11.1	22.2	11.1	0.0	0.0	11.1	66.7	11.1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83.3	50.0	50.0	16.7	16.7	16.7	33.3	83.3	0.0
	화학산업	18	66.7	50.0	61.1	11.1	16.7	5.6	22.2	44.4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25.0	0.0	50.0	0.0	0.0	0.0	0.0	25.0	25.0
	전기전자산업	11	72.7	63.6	36.4	27.3	9.1	0.0	9.1	36.4	0.0
	기계산업	16	75.0	68.8	68.8	31.3	18.8	12.5	37.5	37.5	0.0
	기타제조업	14	64.3	64.3	57.1	21.4	7.1	7.1	28.6	42.9	0.0

(1)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2)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5)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6) NPE 소송알림 서비스, (7)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8)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사업

15. 특허보증 -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험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있음	없음
전 체		101	24.8	75.2
기업 유형	대기업	5	40.0	60.0
	중견기업	20	35.0	65.0
	일반중소기업	55	21.8	78.2
	벤처/이노비즈기업	21	19.0	81.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28.6	71.4
	도매 및 소매업	5	0.0	10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25.0	75.0
	기타 서비스업	9	0.0	10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16.7	83.3
	화학산업	18	38.9	61.1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0.0	100.0
	전기전자산업	11	36.4	63.6
	기계산업	16	25.0	75.0
	기타제조업	14	28.6	71.4

16. 특허보증 -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은 경험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있음	없음
전 체		101	28.7	71.3
기업 유형	대기업	5	60.0	40.0
	중견기업	20	30.0	70.0
	일반중소기업	55	27.3	72.7
	벤처/이노비즈기업	21	23.8	76.2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4	28.6	71.4
	도매 및 소매업	5	20.0	8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	0.0	100.0
	기타 서비스업	9	33.3	66.7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16.7	83.3
	화학산업	18	33.3	6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4	25.0	75.0
	전기전자산업	11	45.5	54.5
	기계산업	16	37.5	62.5
	기타제조업	14	14.3	85.7

17. 특허보증 - (특허보증을 요구 받은 경우) 특허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25	56.0	48.0	40.0	28.0	8.0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100.0	0.0	0.0	0.0
	중견기업	7	42.9	57.1	42.9	28.6	14.3
	일반중소기업	12	66.7	50.0	33.3	33.3	8.3
	벤처/이노비즈기업	4	25.0	0.0	75.0	25.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4	75.0	100.0	0.0	2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10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0.0	0.0	100.0	0.0	0.0
	화학산업	7	42.9	42.9	28.6	42.9	14.3
	전기전자산업	4	75.0	75.0	50.0	50.0	0.0
	기계산업	4	50.0	25.0	50.0	0.0	25.0
	기타제조업	4	50.0	25.0	50.0	25.0	0.0

18. 특허보증 - (특허보증을 요구 받은 경우) 계약(요구) 내용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의 내에서 보상	관련된 모든 손해를 보상
전 체		25	44.0	56.0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100.0
	중견기업	7	71.4	28.6
	일반중소기업	12	41.7	58.3
	벤처/이노비즈기업	4	25.0	75.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4	50.0	5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10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0.0	100.0
	화학산업	7	28.6	71.4
	전기전자산업	4	25.0	75.0
	기계산업	4	100.0	0.0
	기타제조업	4	50.0	50.0

〈산업재산권 피침해 현황〉

1. 피침해 경험 기업의 소재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 체		73	46.6	8.2	4.1	4.1	1.4	4.1	15.1	5.5	2.7	6.8	1.4	
기업 유형	대기업	4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중견기업	16	56.3	6.3	6.3	0.0	0.0	0.0	6.3	6.3	0.0	18.8	0.0	
	일반중소기업	37	45.9	13.5	2.7	2.7	2.7	2.7	16.2	5.4	5.4	0.0	2.7	
	벤처/이노비즈기업	16	37.5	0.0	6.3	12.5	0.0	12.5	25.0	6.3	0.0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46.2	0.0	0.0	7.7	0.0	15.4	23.1	0.0	0.0	0.0	7.7	
	도매 및 소매업	4	75.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7	85.7	1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7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화학산업	15	40.0	13.3	0.0	6.7	6.7	0.0	13.3	13.3	0.0	6.7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기계산업	11	18.2	9.1	18.2	0.0	0.0	0.0	9.1	18.2	9.1	9.1	9.1	0.0
	기타제조업	12	33.3	16.7	8.3	0.0	0.0	0.0	25.0	0.0	8.3	8.3	0.0	

2. 피침해 경험 기업의 유형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전체		73	5.5	50.7	21.9	21.9
기업 유형	대기업	4	100.0	0.0	0.0	0.0
	중견기업	16	0.0	0.0	100.0	0.0
	일반중소기업	37	0.0	100.0	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6	0.0	0.0	0.0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7.7	53.8	23.1	15.4
	도매 및 소매업	4	0.0	50.0	25.0	25.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0.0	66.7	0.0	33.3
	기타 서비스업	7	0.0	71.4	14.3	14.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0.0	0.0	50.0	50.0
	화학산업	15	6.7	73.3	2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0.0	50.0	50.0	0.0
	기계산업	11	9.1	27.3	27.3	36.4
	기타제조업	12	0.0	50.0	8.3	41.7

3.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체		73	67.1	84.9	56.2	58.9	49.3
기업 유형	대기업	4	75.0	100.0	75.0	100.0	0.0
	중견기업	16	81.3	93.8	75.0	62.5	62.5
	일반중소기업	37	67.6	86.5	56.8	54.1	48.6
	벤처/이노비즈기업	16	50.0	68.8	31.3	56.3	5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76.9	84.6	46.2	46.2	46.2
	도매 및 소매업	4	50.0	100.0	50.0	50.0	5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33.3	66.7	0.0	0.0	100.0
	기타 서비스업	7	57.1	85.7	42.9	57.1	57.1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75.0	100.0	50.0	25.0	75.0
	화학산업	15	66.7	93.3	66.7	80.0	4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50.0	50.0	50.0	50.0
	전기전자산업	2	50.0	100.0	50.0	50.0	100.0
	기계산업	11	72.7	72.7	72.7	81.8	36.4
	기타제조업	12	75.0	83.3	66.7	58.3	41.7

4. 피침해 경험 기업의 기타 거래국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인도	러시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캐나다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동남아국가	아시아국가	중동국가	전세계	
전체		36	16.7	5.6	16.7	8.3	13.9	2.8	2.8	5.6	5.6	11.1	2.8	8.3	2.8	2.8	2.8	2.8	5.6	5.6	2.8	2.8	8.3	8.3	5.6	2.8	
기업 유형	중견기업	10	10.0	10.0	20.0	10.0	0.0	0.0	0.0	0.0	10.0	0.0	0.0	20.0	10.0	10.0	0.0	10.0	20.0	0.0	10.0	0.0	20.0	0.0	0.0	0.0	
	일반중소기업	18	22.2	0.0	11.1	11.1	11.1	0.0	5.6	11.1	5.6	16.7	0.0	5.6	0.0	0.0	5.6	0.0	0.0	11.1	0.0	0.0	5.6	11.1	11.1	5.6	
	벤처/이노비즈기업	8	12.5	12.5	25.0	0.0	37.5	12.5	0.0	0.0	0.0	12.5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2.5	0.0	12.5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6	16.7	16.7	16.7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33.3	16.7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0.0	0.0	0.0	0.0	25.0	0.0	25.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25.0	0.0	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0.0	0.0	33.3	0.0	33.3	0.0	0.0	0.0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화학산업	6	16.7	0.0	33.3	5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5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계산업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5.0	25.0	25.0	0.0	0.0	0.0	25.0	0.0	0.0	0.0	0.0	25.0	0.0	0.0
	기타제조업	5	20.0	0.0	2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0	20.0	0.0	0.0

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4)	기타	빈도	(1)	(2)	(3)	(4)	
전 체	49	63.3	26.5	2.0	4.1	4.1	62	61.3	19.4	8.1	8.1	3.2	41	82.9	14.6	2.4	43	72.1	18.6	2.3	7.0	36	72.2	11.1	5.6	11.1	
기업 유형	대기업	3	0.0	100.0	0.0	0.0	0.0	4	75.0	0.0	25.0	0.0	0.0	3	100.0	0.0	0.0	4	75.0	25.0	0.0	0.0	10	0.0	0.0	0.0	0.0
	중견 기업	13	53.8	38.5	7.7	0.0	0.0	15	40.0	40.0	13.3	0.0	6.7	12	83.3	16.7	0.0	10	70.0	30.0	0.0	0.0	18	50.0	30.0	20.0	0.0
	일반 중소 기업	25	72.0	16.0	0.0	4.0	8.0	32	65.6	18.8	6.3	6.3	3.1	21	81.0	19.0	0.0	20	80.0	10.0	0.0	10.0	8	88.9	0.0	0.0	11.1
	벤처/ 이노 비즈 기업	8	75.0	12.5	0.0	12.5	0.0	11	72.7	0.0	0.0	27.3	0.0	5	80.0	0.0	20.0	9	55.6	22.2	11.1	11.1	8	62.5	12.5	0.0	25.0

(1) 수출(직접), (2) 수출(판매법인), (3) 현지생산, (4) 프랜차이즈

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4)	기타	빈도	(1)	(2)	(3)	(4)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0	70.0	20.0	0.0	0.0	10.0	11	81.8	0.0	9.1	9.1	0.0	6	100.0	0.0	0.0	6	66.7	16.7	0.0	16.7	6	83.3	0.0	0.0	16.7
도매 및 소매업	2	0.0	50.0	0.0	0.0	50.0	4	25.0	50.0	0.0	0.0	25.0	2	0.0	100.0	0.0	2	0.0	50.0	0.0	50.0	2	10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0.0	0.0	100.0	0.0	2	0.0	0.0	0.0	100.0	0.0	0	-	-	-	0	-	-	-	-	3	0.0	0.0	0.0	100.0
기타 서비스업	4	50.0	25.0	0.0	25.0	0.0	6	66.7	16.7	0.0	16.7	0.0	3	33.3	66.7	0.0	4	0.0	0.0	0.0	0.0	4	75.0	25.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66.7	33.3	0.0	0.0	0.0	4	50.0	25.0	25.0	0.0	0.0	2	50.0	0.0	50.0	1	50.0	25.0	25.0	0.0	3	100.0	0.0	0.0	0.0
화학산업	10	70.0	30.0	0.0	0.0	0.0	14	57.1	28.6	7.1	0.0	7.1	10	90.0	10.0	0.0	12	0.0	0.0	0.0	100.0	6	83.3	0.0	16.7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0.0	100.0	0.0	0.0	0.0	1	100.0	0.0	0.0	0.0	0.0	1	100.0	0.0	0.0	1	83.3	16.7	0.0	0.0	1	0.0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1	100.0	0.0	0.0	0.0	0.0	2	50.0	50.0	0.0	0.0	0.0	1	100.0	0.0	0.0	1	100.0	0.0	0.0	0.0	2	100.0	0.0	0.0	0.0
기계산업	8	62.5	25.0	12.5	0.0	0.0	8	62.5	25.0	12.5	0.0	0.0	8	87.5	12.5	0.0	9	100.0	0.0	0.0	0.0	4	50.0	25.0	25.0	0.0
기타제조업	9	77.8	22.2	0.0	0.0	0.0	10	70.0	10.0	10.0	10.0	0.0	8	100.0	0.0	0.0	7	88.9	11.1	0.0	0.0	5	80.0	20.0	0.0	0.0

(1) 수출(직접), (2) 수출(판매법인), (3) 현지생산, (4) 프랜차이즈

11. 피침해 경험 기업의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단위: 개 사(빈도), %, 명(평균)]

		빈 도	있음	없음	담당인력 평균	전담인력 평균
전 체		73	63.0	37.0	1.9	0.8
기업 유형	대기업	4	75.0	25.0	2.0	1.5
	중견기업	16	81.3	18.8	2.9	1.6
	일반중소기업	37	62.2	37.8	1.6	0.6
	벤처/이노비즈기업	16	43.8	56.3	1.6	0.4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61.5	38.5	2.1	1.1
	도매 및 소매업	4	50.0	50.0	1.8	0.8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33.3	1.0	0.7
	기타 서비스업	7	57.1	42.9	2.0	0.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75.0	25.0	1.8	0.3
	화학산업	15	66.7	33.3	2.0	0.9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50.0	2.0	1.0
	전기전자산업	2	100.0	0.0	1.5	1.0
	기계산업	11	54.5	45.5	2.1	1.1
	기타제조업	12	66.7	33.3	1.9	0.6

12.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34) 국가별 산재권 보유 기업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전 체	59	50.8	91.5	39.0	68	45.6	91.2	47.1	50	46.0	88.0	34.0	54	55.6	85.2	29.6	39	35.7	77.4	16.7	
기업 유형	대기업	4	50.0	100.0	50.0	4	75.0	100.0	50.0	4	50.0	100.0	50.0	4	50.0	100.0	50.0	0	-	-	-
	중견기업	16	68.8	87.5	37.5	16	56.3	93.8	37.5	13	61.5	84.6	46.2	15	60.0	80.0	33.3	10	66.7	61.9	23.8
	일반중소기업	27	29.6	92.6	44.4	33	30.3	90.9	54.5	23	30.4	91.3	34.8	22	40.9	86.4	27.3	20	7.3	87.8	12.2
	벤처/이노비즈 기업	12	75.0	91.7	25.0	15	60.0	86.7	40.0	10	60.0	80.0	10.0	13	76.9	84.6	23.1	9	59.1	72.7	18.2

12.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34) 국가별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2	33.3	100.0	33.3	13	15.4	100.0	38.5	8	12.5	100.0	37.5	9	22.2	100.0	11.1	6	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	0.0	100.0	0.0	4	0.0	100.0	50.0	2	0.0	100.0	0.0	2	50.0	50.0	0.0	3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50.0	100.0	0.0	2	0.0	100.0	0.0	2	0.0	100.0	0.0	1	0.0	100.0	0.0	3	0.0	100.0	14.3
기타 서비스업	3	33.3	100.0	33.3	4	0.0	100.0	50.0	3	0.0	100.0	0.0	4	0.0	100.0	25.0	4	12.5	87.5	12.5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0.0	100.0	0.0	4	25.0	100.0	25.0	2	50.0	100.0	0.0	3	33.3	100.0	0.0	2	75.0	100.0	0.0
화학산업	13	53.8	92.3	53.8	14	64.3	85.7	71.4	12	58.3	75.0	50.0	12	50.0	83.3	41.7	6	36.4	90.9	27.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50.0	0.0	2	50.0	50.0	0.0	1	0.0	100.0	0.0	2	50.0	50.0	50.0	1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0.0	100.0	2	50.0	100.0	50.0	1	100.0	100.0	100.0	1	100.0	0.0	0.0	2	0.0	50.0	50.0
기계산업	9	100.0	100.0	55.6	11	90.9	90.9	54.5	10	90.0	80.0	50.0	11	90.9	81.8	45.5	5	100.0	30.8	30.8
기타제조업	10	60.0	90.0	40.0	12	58.3	83.3	41.7	9	44.4	88.9	22.2	9	88.9	88.9	33.3	7	46.7	73.3	20.0

업종

13.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해외출원 확대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지재권 전문인력채 용 교육	별다른 활동 안 함
전 체		73	68.5	67.1	52.1	13.7	9.6
기업 유형	대기업	4	100.0	50.0	50.0	0.0	0.0
	중견기업	16	75.0	62.5	62.5	43.8	0.0
	일반중소기업	37	59.5	67.6	56.8	5.4	10.8
	벤처/이노비즈기업	16	75.0	75.0	31.3	6.3	18.8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76.9	84.6	61.5	0.0	0.0
	도매 및 소매업	4	25.0	25.0	75.0	0.0	25.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66.7	0.0	0.0	33.3
	기타 서비스업	7	14.3	28.6	28.6	0.0	42.9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50.0	75.0	25.0	25.0	25.0
	화학산업	15	93.3	66.7	60.0	2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5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100.0	50.0	50.0	50.0
	기계산업	11	81.8	72.7	63.6	27.3	0.0
	기타제조업	12	66.7	83.3	50.0	8.3	0.0

14. 피침해 경험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질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전 체		73	57.5	5.5	28.8	42.5	12.3
기업 유형	대기업	4	50.0	0.0	0.0	75.0	0.0
	중견기업	16	62.5	12.5	37.5	43.8	18.8
	일반중소기업	37	59.5	2.7	32.4	29.7	13.5
	벤처/이노비즈기업	16	50.0	6.3	18.8	62.5	6.3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61.5	0.0	30.8	53.8	7.7
	도매 및 소매업	4	50.0	0.0	25.0	7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7	28.6	14.3	28.6	57.1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25.0	25.0	75.0	25.0	0.0
	화학산업	15	46.7	6.7	33.3	26.7	2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0.0	0.0	0.0	0.0
	기계산업	11	72.7	0.0	9.1	45.5	27.3
	기타제조업	12	91.7	8.3	41.7	50.0	8.3

(1)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 있음, (2) 우리나라 세관에서 타사 제품을 압류한 경험 있음, (3) 타사 제품에 대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경험 있음, (4) 소송을 제기한 경험 있음(소송 시 원고) (5)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 경험 있음.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 미국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10건~20건 미만	21건 이상
전 체		6	66.7	16.7	16.7
기업 유형	일반중소기업	1	100.0	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5	60.0	20.0	20.0
업종	기계산업	1	0.0	100.0	0.0
	기타제조업	5	80.0	0.0	2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 미국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7	71.4	14.3	14.3
기업 유형	대기업	1	0.0	100.0	0.0
	중견기업	1	100.0	0.0	0.0
	일반중소기업	4	100.0	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0.0	0.0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	100.0	0.0	0.0
	화학산업	2	50.0	50.0	0.0
	기계산업	1	100.0	0.0	0.0
	기타제조업	1	0.0	0.0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3) 미국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21건 이상
전 체		5	80.0	20.0
기업 유형	대기업	1	100.0	0.0
	중견기업	1	100.0	0.0
	일반중소기업	2	10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0.0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0.0
	화학산업	1	100.0	0.0
	기계산업	1	100.0	0.0
	기타제조업	2	50.0	5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4) 미국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1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5) 미국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전 체		2	50.0	5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2	50.0	5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0.0	100.0
	화학산업	1	100.0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6) 중국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6~10건 미만	21건 이상
전 체		15	73.3	6.7	20.0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0.0	0.0
	중견기업	3	66.7	0.0	33.3
	일반중소기업	6	83.3	16.7	0.0
	벤처/이노비즈기업	4	50.0	0.0	5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0.0	0.0
	화학산업	4	75.0	25.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1	100.0	0.0	0.0
	기계산업	2	100.0	0.0	0.0
	기타제조업	6	50.0	0.0	5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7) 중국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6~10건 미만	10건~20 건 미만	21건 이상
전 체		46	54.3	26.1	2.2	6.5	10.9
기업 유형	대기업	2	50.0	0.0	0.0	50.0	0.0
	중견기업	13	53.8	30.8	0.0	7.7	7.7
	일반중소기업	22	40.9	31.8	4.5	4.5	18.2
	벤처/이노비즈기업	9	88.9	11.1	0.0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1	45.5	36.4	9.1	0.0	9.1
	도매 및 소매업	4	75.0	25.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100.0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5	40.0	40.0	0.0	2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75.0	25.0	0.0	0.0	0.0
	화학산업	8	50.0	12.5	0.0	25.0	12.5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0.0	0.0	0.0
	기계산업	3	66.7	33.3	0.0	0.0	0.0
	기타제조업	7	28.6	28.6	0.0	0.0	42.9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8) 중국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6~10건 미만	10건~20건 미만	21건 이상
전 체		17	58.8	11.8	5.9	11.8	11.8
기업 유형	대기업	1	100.0	0.0	0.0	0.0	0.0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0.0
	일반중소기업	14	57.1	7.1	7.1	14.3	14.3
	벤처/이노비즈기업	1	100.0	0.0	0.0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4	0.0	25.0	25.0	25.0	25.0
	기타 서비스업	2	100.0	0.0	0.0	0.0	0.0
	화학산업	5	80.0	0.0	0.0	20.0	0.0
	전기전자산업	1	100.0	0.0	0.0	0.0	0.0
	기계산업	2	50.0	50.0	0.0	0.0	0.0
	기타제조업	3	66.7	0.0	0.0	0.0	33.3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9) 중국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1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0) 중국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8	75.0	12.5	12.5
기업 유형	중견기업	2	50.0	0.0	50.0
	일반중소기업	5	80.0	2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100.0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1	0.0	0.0	100.0
	화학산업	2	100.0	0.0	0.0
	기타제조업	3	66.7	33.3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1) 유럽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5	80.0	20.0
기업 유형	대기업	1	100.0	0.0
	중견기업	1	0.0	100.0
	일반중소기업	1	10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2	100.0	0.0
업종	기계산업	3	100.0	0.0
	기타제조업	2	50.0	5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2) 유럽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전 체		5	80.0	20.0
기업 유형	대기업	1	100.0	0.0
	중견기업	1	0.0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1	100.0	0.0
	화학산업	2	100.0	0.0
	기타제조업	1	100.0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3) 유럽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3	100.0
기업 유형	대기업	1	100.0
	중견기업	1	100.0
	일반중소기업	1	100.0
업종	화학산업	2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4) 유럽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5) 유럽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6) 일본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5	80.0	20.0
기업유형	중견기업	2	50.0	50.0
	일반중소기업	1	10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2	100.0	0.0
업종	기계산업	3	100.0	0.0
	기타제조업	2	50.0	5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7) 일본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3	33.3	33.3	33.3
기업유형	대기업	1	0.0	0.0	100.0
	일반중소기업	2	50.0	50.0	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1	0.0	100.0	0.0
	기타 서비스업	1	100.0	0.0	0.0
	화학산업	1	0.0	0.0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8) 일본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6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대기업	1	100.0
업종	화학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9) 일본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0) 기타국가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2	100.0
	벤처/이노비즈기업	2	100.0
업종	화학산업	1	100.0
	기타제조업	3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1) 기타국가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17	76.5	11.8	11.8
기업 유형	중견기업	4	75.0	0.0	25.0
	일반중소기업	11	81.8	18.2	0.0
	벤처/이노비즈기업	2	50.0	0.0	5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3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	10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3	66.7	33.3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100.0	0.0	0.0
	화학산업	3	66.7	0.0	33.3
	기계산업	2	100.0	0.0	0.0
	기타제조업	3	33.3	33.3	33.3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2) 기타국가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3) 기타국가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 유형	중견기업	1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1	100.0
	기타 서비스업	2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4) 기타국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1	100.0
	기타 서비스업	2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피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9) 피침해 분쟁 건수

[단위: 건(빈도)]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23	7	78	9	5	24
기업 유형	대기업	4	0	2	0	0	2
	중견기업	23	0	18	0	0	5
	일반중소기업	76	7	46	6	4	13
	벤처/이노비즈기업	20	0	12	3	1	4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3	2	16	2	0	3
	도매 및 소매업	6	0	4	0	0	2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0	2	0	0	1
	기타 서비스업	14	0	7	0	1	6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7	0	6	0	0	1
	화학산업	23	2	15	1	0	5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3	0	3	0	0	0
	전기전자산업	2	0	2	0	0	0
	기계산업	17	1	8	3	3	2
	기타제조업	25	2	15	3	1	4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3	12	4	3	3
	상표	78	3	51	3	2	19
	디자인	14	0	12	2	0	0
	영업비밀	1	0	1	0	0	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5	1	2	0	0	2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 피침해 권리 유형 및 분쟁 발생 지역

[단위: 건(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23	5.7	63.4	7.3	4.1	19.5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12.0	48.0	16.0	12.0	12.0
	상표	78	3.8	65.4	3.8	2.6	24.4
	디자인	14	0.0	85.7	14.3	0.0	0.0
	영업비밀	1	0.0	100.0	0.0	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5	20.0	40.0	0.0	0.0	40.0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2) 침해 기업 본사 소재지

[단위: 건(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기타
전 체		123	5.7	65.9	5.7	5.7	.8	16.3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12.0	44.0	16.0	20.0	0.0	8.0
	상표	78	5.1	67.9	2.6	2.6	1.3	20.5
	디자인	14	0.0	92.9	7.1	0.0	0.0	0.0
	영업비밀	1	0.0	100.0	0.0	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0.0	60.0	0.0	0.0	0.0	40.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7	85.7	14.3	0.0	0.0	0.0	0.0
	중국	78	1.3	94.9	1.3	1.3	1.3	0.0
	유럽	9	0.0	22.2	66.7	11.1	0.0	0.0
	일본	5	0.0	0.0	0.0	100.0	0.0	0.0
	기타	24	0.0	16.7	0.0	0.0	0.0	83.3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3) 피해형태(복수응답)

[단위: 건(빈도), %]

		빈 도	매출감소	대외 이미지 하락	사업축소·철수	기타
전 체		123	39.0	57.7	23.6	4.1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56.0	48.0	12.0	4.0
	상표	78	30.8	62.8	29.5	3.8
	디자인	14	50.0	50.0	14.3	7.1
	영업비밀	1	0.0	10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60.0	40.0	20.0	0.0
분쟁 지역	미국	7	85.7	71.4	14.3	0.0
	중국	78	41.0	59.0	20.5	3.8
	유럽	9	22.2	44.4	22.2	11.1
	일본	5	0.0	40.0	60.0	0.0
	기타	24	33.3	58.3	29.2	4.2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4) [상표권인 경우] 피해형태(복수응답)

[단위: 건(빈도), %]

		빈 도	의도적 상표 선등록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	위조상품의 수출	기타
전 체		78	51.3	60.3	11.5	2.6
권리 유형	상표	78	51.3	60.3	11.5	2.6
분쟁 지역	미국	3	33.3	100.0	33.3	0.0
	중국	51	54.9	58.8	13.7	2.0
	유럽	3	66.7	66.7	33.3	0.0
	일본	2	50.0	50.0	0.0	0.0
	기타	19	42.1	57.9	0.0	5.3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5) 피해 (유출) 시점

[단위: 건(빈도), %]

		빈 도	제품출시 전 (R&D 단계 포함)	제품 출시 후
전 체		123	18.7	81.3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16.0	84.0
	상표	78	20.5	79.5
	디자인	14	7.1	92.9
	영업비밀	1	10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5	20.0	80.0
분쟁 지역	미국	7	14.3	85.7
	중국	78	16.7	83.3
	유럽	9	11.1	88.9
	일본	5	40.0	60.0
	기타	24	25.0	75.0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6) 피해 인지 경로

[단위: 건(빈도), %]

		빈 도	시장 조사 과정	박람회/ 전시회	국내 영업점	해외 영업점	소비자의 신고	거래처의 신고	기타
전 체		123	48.0	13.0	2.4	14.6	10.6	27.6	8.1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40.0	16.0	0.0	20.0	4.0	28.0	0.0
	상표	78	50.0	10.3	3.8	15.4	12.8	26.9	11.5
	디자인	14	50.0	21.4	0.0	7.1	7.1	28.6	7.1
	영업비밀	1	0.0	0.0	0.0	0.0	100.0	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5	60.0	20.0	0.0	0.0	0.0	40.0	0.0
분쟁 지역	미국	7	57.1	42.9	0.0	14.3	14.3	28.6	0.0
	중국	78	55.1	11.5	3.8	16.7	12.8	24.4	6.4
	유럽	9	22.2	33.3	0.0	0.0	11.1	44.4	11.1
	일본	5	60.0	0.0	0.0	0.0	0.0	40.0	0.0
	기타	24	29.2	4.2	0.0	16.7	4.2	29.2	16.7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7) 피해 규모(자손손실액(기대수익손실 포함))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천 만원 미만	2~4천 만원 미만	4~6천 만원 미만	8~10천 만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23	10.6	19.5	5.7	4.9	1.6	18.7	39.0	480.2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12.0	16.0	8.0	0.0	0.0	20.0	44.0	903.8
	상표	78	11.5	24.4	1.3	5.1	2.6	15.4	39.7	406.6
	디자인	14	7.1	0.0	28.6	14.3	0.0	35.7	14.3	152.9
	영업비밀	1	0.0	0.0	0.0	0.0	0.0	0.0	100.0	50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0.0	20.0	0.0	0.0	0.0	20.0	60.0	562.0
분쟁 지역	미국	7	0.0	28.6	0.0	0.0	0.0	14.3	57.1	1436.7
	중국	78	9.0	19.2	5.1	6.4	2.6	20.5	37.2	496.0
	유럽	9	0.0	0.0	11.1	0.0	0.0	33.3	55.6	610.1
	일본	5	20.0	20.0	20.0	0.0	0.0	20.0	20.0	147.0
	기타	24	20.8	25.0	4.2	4.2	0.0	8.3	37.5	217.1

자손손실액 2조원인 A사의 사례 2건과 1백억원인 B사 사례 2건은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출함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8) 피해 규모 손해배상액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23	95.1	0.8	0.8	0.8	2.4	32.4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92.0	0.0	0.0	4.0	4.0	104.0
	상표	78	94.9	1.3	1.3	0.0	2.6	17.8
	디자인	14	100.0	0.0	0.0	0.0	0.0	0.0
	영업비밀	1	100.0	0.0	0.0	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100.0	0.0	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7	100.0	0.0	0.0	0.0	0.0	0.0
	중국	78	94.9	1.3	0.0	1.3	2.6	38.0
	유럽	9	88.9	0.0	0.0	0.0	11.1	111.1
	일본	5	80.0	0.0	20.0	0.0	0.0	4.0
	기타	24	100.0	0.0	0.0	0.0	0.0	0.0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9) 피해 규모 합의금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23	90.2	2.4	2.4	1.6	3.3	26.3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92.0	0.0	0.0	0.0	8.0	88.0
	상표	78	88.5	2.6	3.8	2.6	2.6	13.2
	디자인	14	92.9	7.1	0.0	0.0	0.0	0.1
	영업비밀	1	100.0	0.0	0.0	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100.0	0.0	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7	100.0	0.0	0.0	0.0	0.0	0.0
	중국	78	89.7	1.3	1.3	2.6	5.1	40.7
	유럽	9	100.0	0.0	0.0	0.0	0.0	0.0
	일본	5	80.0	0.0	20.0	0.0	0.0	4.0
	기타	24	87.5	8.3	4.2	0.0	0.0	1.5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0) 대응 비용(총 대응 비용)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도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6~8천만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체		123	16.3	47.2	14.6	7.3	.8	5.7	8.1	45.8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24.0	16.0	16.0	4.0	0.0	12.0	28.0	115.4
	상표	78	11.5	53.8	16.7	10.3	0.0	3.8	3.8	31.3
	디자인	14	21.4	71.4	7.1	0.0	0.0	0.0	0.0	5.3
	영업비밀	1	0.0	0.0	0.0	0.0	0.0	100.0	0.0	15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5	40.0	40.0	0.0	0.0	0.0	20.0	0.0	17.0
분쟁 지역	미국	7	28.6	14.3	0.0	14.3	0.0	28.6	14.3	78.4
	중국	78	17.9	50.0	16.7	6.4	0.0	2.6	6.4	36.0
	유럽	9	0.0	22.2	22.2	11.1	0.0	0.0	44.4	167.8
	일본	5	20.0	40.0	20.0	0.0	0.0	20.0	0.0	44.4
	기타	24	12.5	58.3	8.3	8.3	4.2	8.3	0.0	22.6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1) 대응 비용(이중 소송 비용)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도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체		123	68.3	13.0	6.5	4.1	3.3	4.9	25.5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56.0	12.0	4.0	4.0	8.0	16.0	68.2
	상표	78	70.5	12.8	9.0	2.6	2.6	2.6	16.9
	디자인	14	85.7	14.3	0.0	0.0	0.0	0.0	0.3
	영업비밀	1	0.0	0.0	0.0	100.0	0.0	0.0	50.0
	상품형태	5	60.0	20.0	0.0	20.0	0.0	0.0	11.6
분쟁 지역	미국	7	57.1	0.0	28.6	0.0	14.3	0.0	21.4
	중국	78	70.5	15.4	6.4	2.6	1.3	3.8	20.6
	유럽	9	55.6	0.0	11.1	0.0	0.0	33.3	102.2
	일본	5	60.0	20.0	0.0	0.0	20.0	0.0	38.0
	기타	24	70.8	12.5	0.0	12.5	4.2	0.0	11.1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2) 피침해 대응 활동(복수응답)

[단위: 건(빈도), %]

		빈 도	라이선스 요구	항의·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단속조사 등)	세관조치 (물품압류 등)	소송	무대응	기타
전 체		123	9.8	41.5	17.9	4.9	33.3	7.3	12.2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8.0	44.0	4.0	0.0	40.0	12.0	16.0
	상표	78	10.3	42.3	24.4	7.7	33.3	5.1	10.3
	디자인	14	14.3	42.9	7.1	0.0	14.3	7.1	14.3
	영업비밀	1	0.0	0.0	100.0	0.0	100.0	0.0	0.0
	상품형태(미등 록디자인)	5	0.0	20.0	0.0	0.0	40.0	20.0	20.0
분쟁 지역	미국	7	0.0	85.7	14.3	0.0	42.9	0.0	14.3
	중국	78	10.3	34.6	20.5	5.1	30.8	9.0	12.8
	유럽	9	11.1	44.4	11.1	11.1	55.6	0.0	0.0
	일본	5	20.0	20.0	20.0	0.0	20.0	20.0	20.0
	기타	24	8.3	54.2	12.5	4.2	33.3	4.2	12.5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3)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단위: 건(빈도), %, 개월(평균)]

		빈 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 체		77	50.6	13.0	24.7	10.4	1.3	12.9
권리 유형	특허/ 실용신안	13	46.2	30.8	15.4	0.0	7.7	13.2
	상표	50	50.0	12.0	24.0	14.0	0.0	13.0
	디자인	11	63.6	0.0	27.3	9.1	0.0	11.3
	영업비밀	1	0.0	0.0	100.0	0.0	0.0	24.0
	상품형태	2	50.0	0.0	50.0	0.0	0.0	12.5
분쟁 지역	미국	5	40.0	0.0	20.0	40.0	0.0	19.6
	중국	46	50.0	10.9	32.6	6.5	0.0	12.4
	유럽	6	50.0	0.0	0.0	33.3	16.7	23.2
	일본	4	50.0	25.0	25.0	0.0	0.0	10.0
	기타	16	56.3	25.0	12.5	6.3	0.0	9.0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4) 분쟁 기간(진행 중인 경우)

[단위: 건(빈도), %, 개월(평균)]

		빈 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 체		46	30.4	23.9	26.1	10.9	8.7	16.6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12	33.3	8.3	33.3	16.7	8.3	17.3
	상표	28	28.6	25.0	25.0	10.7	10.7	17.8
	디자인	3	33.3	33.3	33.3	0.0	0.0	9.7
	상품형태	3	33.3	66.7	0.0	0.0	0.0	10.0
분쟁 지역	미국	2	0.0	50.0	50.0	0.0	0.0	14.0
	중국	32	25.0	25.0	28.1	9.4	12.5	18.3
	유럽	3	33.3	0.0	33.3	33.3	0.0	18.7
	일본	1	100.0	0.0	0.0	0.0	0.0	5.0
	기타	8	50.0	25.0	12.5	12.5	0.0	11.1

16. 피침해 경험 기업의 피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5) 분쟁 종결 형태

[단위: 건(빈도), %]

		빈 도	합의금· 손해 배상금 수령	라이 선스 체결	협상 진행 중	시장 진입 저지	소송 승소	소송 패소	소송 취하	소송 진행 중	무대응	기타
전 체		123	8.1	7.3	9.8	23.6	14.6	4.9	4.1	10.6	17.9	12.2
권리 유형	특허/실용신안	25	12.0	12.0	16.0	0.0	4.0	8.0	8.0	20.0	16.0	20.0
	상표	78	7.7	6.4	6.4	32.1	19.2	2.6	3.8	7.7	17.9	7.7
	디자인	14	0.0	7.1	0.0	28.6	7.1	7.1	0.0	7.1	21.4	21.4
	영업비밀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상품형태	5	0.0	0.0	40.0	0.0	0.0	20.0	0.0	20.0	20.0	20.0
분쟁 지역	미국	7	14.3	14.3	42.9	0.0	28.6	0.0	0.0	0.0	14.3	28.6
	중국	78	6.4	6.4	6.4	24.4	16.7	2.6	3.8	10.3	21.8	11.5
	유럽	9	11.1	0.0	11.1	11.1	22.2	11.1	0.0	33.3	0.0	11.1
	일본	5	20.0	20.0	0.0	20.0	0.0	0.0	20.0	0.0	40.0	0.0
	기타	24	8.3	8.3	12.5	33.3	4.2	12.5	4.2	8.3	8.3	12.5

17. 피침해 분쟁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기타
전 체		73	46.6	60.3	24.7	15.1	9.6	2.7
기업 유형	대기업	4	75.0	50.0	0.0	0.0	0.0	0.0
	중견기업	16	62.5	62.5	12.5	18.8	18.8	6.3
	일반중소기업	37	43.2	62.2	27.0	21.6	8.1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6	31.3	56.3	37.5	0.0	6.3	6.3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46.2	53.8	23.1	30.8	7.7	0.0
	도매 및 소매업	4	50.0	50.0	25.0	0.0	25.0	25.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0.0	100.0	33.3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7	71.4	57.1	0.0	28.6	28.6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25.0	50.0	0.0	25.0	25.0	0.0
	화학산업	15	46.7	53.3	40.0	20.0	13.3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50.0	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2	0.0	100.0	0.0	0.0	0.0	0.0
	기계산업	11	36.4	72.7	27.3	0.0	0.0	9.1
	기타제조업	12	66.7	58.3	33.3	8.3	0.0	0.0

(1)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해외), (2)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국내), (3) 국내 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4) 해외 현지 공공기관, (5)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음(회사 자체 인력)

18. (피침해)국내외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기타
전 체		55	43.6	20.0	25.5	40.0	7.3	9.1
기업 유형	대기업	4	50.0	25.0	0.0	50.0	0.0	0.0
	중견기업	14	35.7	21.4	21.4	21.4	21.4	0.0
	일반중소기업	27	51.9	14.8	33.3	33.3	3.7	14.8
	벤처/이노비즈기업	10	30.0	30.0	20.0	80.0	0.0	1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0	50.0	30.0	30.0	50.0	0.0	20.0
	도매 및 소매업	3	66.7	0.0	0.0	33.3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100.0	50.0	0.0	50.0	0.0	0.0
	기타 서비스업	7	57.1	14.3	14.3	14.3	14.3	14.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25.0	25.0	75.0	75.0	0.0	0.0
	화학산업	9	44.4	11.1	33.3	44.4	11.1	11.1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100.0	0.0	0.0	0.0	0.0
	기계산업	8	25.0	25.0	25.0	37.5	25.0	0.0
	기타제조업	8	12.5	0.0	25.0	50.0	0.0	12.5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름, (2) 공공기관 지원은 비전문적이라고 생각, (3)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4) 도움 요청 절차가 복잡함, (5)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21. (피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1) 1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73	27.4	9.6	4.1	24.7	16.4	16.4	1.4
기업 유형	대기업	4	0.0	25.0	0.0	75.0	0.0	0.0	0.0
	중견기업	16	12.5	12.5	6.3	37.5	18.8	12.5	0.0
	일반중소기업	37	29.7	8.1	5.4	18.9	16.2	18.9	2.7
	벤처/이노비즈기업	16	43.8	6.3	0.0	12.5	18.8	18.8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23.1	0.0	15.4	23.1	15.4	15.4	7.7
	도매 및 소매업	4	25.0	0.0	0.0	25.0	5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0.0	0.0	0.0	0.0	33.3	0.0
	기타 서비스업	7	0.0	28.6	0.0	42.9	14.3	14.3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50.0	0.0	0.0	25.0	25.0	0.0	0.0
	화학산업	15	33.3	6.7	0.0	40.0	13.3	6.7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5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0.0	0.0	50.0	0.0	0.0	0.0
	기계산업	11	18.2	36.4	0.0	9.1	9.1	27.3	0.0
	기타제조업	12	33.3	0.0	8.3	8.3	25.0	25.0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재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21. (피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2) 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71	4.2	5.6	16.9	18.3	21.1	32.4	1.4
기업 유형	대기업	4	0.0	50.0	0.0	0.0	50.0	0.0	0.0
	중견기업	16	0.0	0.0	18.8	37.5	6.3	31.3	6.3
	일반중소기업	36	5.6	2.8	19.4	16.7	25.0	30.6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5	6.7	6.7	13.3	6.7	20.0	46.7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2	8.3	8.3	25.0	8.3	25.0	25.0	0.0
	도매 및 소매업	4	0.0	0.0	50.0	25.0	0.0	2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0.0	33.3	66.7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7	0.0	0.0	0.0	14.3	28.6	57.1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0.0	0.0	0.0	0.0	50.0	50.0	0.0
	화학산업	15	0.0	6.7	20.0	20.0	20.0	33.3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50.0	50.0	0.0	0.0
	전기전자산업	2	0.0	0.0	0.0	0.0	0.0	50.0	50.0
	기계산업	11	9.1	0.0	18.2	36.4	9.1	27.3	0.0
	기타제조업	11	9.1	9.1	0.0	18.2	27.3	36.4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재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22. (피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2) 1+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73	31.5	15.1	20.5	42.5	37.0	47.9	2.7
기업 유형	대기업	4	0.0	75.0	0.0	75.0	50.0	0.0	0.0
	중견기업	16	12.5	12.5	25.0	75.0	25.0	43.8	6.3
	일반중소기업	37	35.1	10.8	24.3	35.1	40.5	48.6	2.7
	벤처/이노비즈기업	16	50.0	12.5	12.5	18.8	37.5	62.5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30.8	7.7	38.5	30.8	38.5	38.5	7.7
	도매 및 소매업	4	25.0	0.0	50.0	50.0	50.0	2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66.7	33.3	66.7	0.0	0.0	33.3	0.0
	기타 서비스업	7	0.0	28.6	0.0	57.1	42.9	71.4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50.0	0.0	0.0	25.0	75.0	50.0	0.0
	화학산업	15	33.3	13.3	20.0	60.0	33.3	4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100.0	5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0.0	0.0	50.0	0.0	50.0	50.0
	기계산업	11	27.3	36.4	18.2	45.5	18.2	54.5	0.0
	기타제조업	12	41.7	8.3	8.3	25.0	50.0	58.3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재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23. (피침해)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정부 사업(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7)	(8)	없음
전 체		73	61.6	49.3	53.4	20.5	12.3	5.5	21.9	49.3	8.2
기업 유형	대기업	4	50.0	50.0	50.0	50.0	0.0	25.0	25.0	0.0	25.0
	중견기업	16	62.5	62.5	62.5	25.0	12.5	6.3	25.0	62.5	0.0
	일반중소기업	37	56.8	37.8	48.6	13.5	13.5	2.7	18.9	45.9	10.8
	벤처/이노비즈기업	16	75.0	62.5	56.3	25.0	12.5	6.3	25.0	56.3	6.3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3	61.5	46.2	30.8	23.1	15.4	7.7	0.0	46.2	7.7
	도매 및 소매업	4	25.0	75.0	25.0	25.0	0.0	0.0	25.0	25.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	33.3	0.0	33.3	0.0	0.0	0.0	0.0	33.3	33.3
	기타 서비스업	7	28.6	14.3	14.3	0.0	0.0	0.0	14.3	71.4	14.3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4	100.0	75.0	50.0	25.0	25.0	0.0	50.0	100.0	0.0
	화학산업	15	73.3	53.3	66.7	13.3	20.0	6.7	26.7	46.7	2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100.0	0.0	0.0	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2	50.0	50.0	100.0	50.0	0.0	0.0	50.0	50.0	0.0
	기계산업	11	90.9	63.6	81.8	36.4	18.2	9.1	36.4	45.5	0.0
	기타제조업	12	58.3	58.3	58.3	25.0	8.3	8.3	25.0	41.7	0.0

(1)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2)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3)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사업, (5)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6) NPE 소송알림 서비스, (7) 해외 초동대응 지원사업, (8)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1. 침해 경험 기업의 소재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 체		53	30.2	3.8	5.7	5.7	1.9	5.7	1.9	28.3	5.7	1.9	9.4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중견기업	11	27.3	9.1	9.1	0.0	0.0	0.0	0.0	18.2	9.1	0.0	27.3
	일반중소기업	31	41.9	3.2	3.2	6.5	3.2	3.2	3.2	22.6	6.5	3.2	3.2
	벤처/이노비즈기업	9	0.0	0.0	11.1	11.1	0.0	22.2	0.0	55.6	0.0	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화학산업	12	33.3	0.0	0.0	8.3	0.0	0.0	0.0	25.0	16.7	0.0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20.0	0.0	0.0	10.0	10.0	0.0	10.0	40.0	10.0	0.0	0.0
	기계산업	11	9.1	9.1	18.2	0.0	0.0	0.0	0.0	45.5	0.0	9.1	9.1
	기타제조업	5	20.0	0.0	0.0	0.0	0.0	20.0	0.0	40.0	0.0	0.0	20.0

2. 침해 경험 기업의 유형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INN O-BIZ기업
전 체		53	3.8	58.5	20.8	17.0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0.0	0.0	0.0
	중견기업	11	0.0	0.0	100.0	0.0
	일반중소기업	31	0.0	100.0	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9	0.0	0.0	0.0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0.0	0.0	0.0	100.0
	도매 및 소매업	3	0.0	33.3	66.7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0.0	75.0	25.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0.0	0.0	66.7	33.3
	화학산업	12	8.3	83.3	8.3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10.0	70.0	20.0	0.0
	기계산업	11	0.0	36.4	18.2	45.5
	기타제조업	5	0.0	60.0	20.0	20.0

3. 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미 국	중 국	유 럽	일 본	기 타
전 체		53	67.9	79.2	67.9	66.0	35.8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100.0	100.0	100.0	0.0
	중견기업	11	54.5	90.9	63.6	63.6	63.6
	일반중소기업	31	71.0	74.2	67.7	67.7	25.8
	벤처/이노비즈기업	9	66.7	77.8	66.7	55.6	44.4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50.0	50.0	50.0	50.0	10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100.0	66.7	0.0	66.7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50.0	75.0	50.0	75.0	5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66.7	66.7	66.7	66.7	66.7
	화학산업	12	66.7	83.3	66.7	75.0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100.0	50.0	100.0	0.0
	전기전자산업	10	70.0	70.0	70.0	70.0	30.0
	기계산업	11	81.8	90.9	81.8	81.8	45.5
	기타제조업	5	80.0	80.0	60.0	40.0	20.0

4. 침해 경험 기업의 기타 거래국가(복수응답)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인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전세계
전 체		19	10.5	15.8	21.1	5.3	10.5	10.5	15.8	5.3	5.3	21.1	15.8	5.3
기업 유형	중견기업	7	14.3	28.6	14.3	0.0	0.0	0.0	28.6	14.3	0.0	28.6	0.0	0.0
	일반중소기업	8	12.5	0.0	0.0	12.5	12.5	12.5	12.5	0.0	12.5	25.0	37.5	12.5
	벤처/이노비즈기업	4	0.0	25.0	75.0	0.0	25.0	25.0	0.0	0.0	0.0	0.0	0.0	0.0

4. 침해 경험 기업의 기타 거래국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인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전세계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0.0	5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2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화학산업	2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50.0	0.0
	전기전자산업	3	33.3	33.3	33.3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기계산업	5	0.0	0.0	20.0	0.0	0.0	0.0	0.0	60.0	20.0	0.0	20.0	20.0
	기타제조업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5. 침해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1)	(2)	(3)	빈도	(1)	(2)	(3)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전체		36	58.3	38.9	2.8	42	54.8	23.8	14.3	7.1	36	63.9	33.3	2.8	35	74.3	20.0	5.7	19	57.9	21.1	10.5	5.3	5.3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100.0	0.0	2	50.0	0.0	50.0	0.0	2	100.0	0.0	0.0	2	100.0	0.0	0.0	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6	33.3	50.0	16.7	10	20.0	40.0	20.0	20.0	7	57.1	42.9	0.0	7	42.9	42.9	14.3	7	28.6	42.9	28.6	0.0	0.0
	일반중소기업	22	68.2	31.8	0.0	23	65.2	17.4	13.0	4.3	21	66.7	33.3	0.0	21	85.7	14.3	0.0	8	75.0	12.5	0.0	0.0	12.5
	벤처/이노비즈기업	6	66.7	33.3	0.0	7	71.4	28.6	0.0	0.0	6	50.0	33.3	16.7	5	60.0	20.0	20.0	4	75.0	0.0	0.0	25.0	0.0

(1) 수출(직접), (2) 수출(판매법인), (3) 현지생산, (4) 프랜차이즈

5. 침해 경험 기업의 사업형태(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1)	(2)	(3)	빈도	(1)	(2)	(3)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기타	빈도	(1)	(2)	(3)	(4)	기타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0.0	100.0	0.0	1	0.0	100.0	0.0	0.0	1	0.0	100.0	0.0	1	100.0	0.0	0.0	2	50.0	0.0	0.0	50.0	0.0
	도매 및 소매업	1	0.0	100.0	0.0	3	0.0	66.7	33.3	0.0	2	0.0	100.0	0.0	0	-	-	-	2	50.0	0.0	5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0	-	-	-	-	1	100.0	0.0	0.0	0	-	-	-	0	-	-	-	-	-
	기타 서비스업	2	50.0	50.0	0.0	3	66.7	33.3	0.0	0.0	2	0.0	100.0	0.0	3	66.7	33.3	0.0	2	0.0	50.0	0.0	0.0	5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2	50.0	50.0	0.0	2	50.0	0.0	0.0	50.0	2	0.0	50.0	50.0	2	0.0	50.0	0.0	2	50.0	50.0	0.0	0.0	0.0
	화학산업	8	75.0	25.0	0.0	10	60.0	20.0	10.0	10.0	8	87.5	12.5	0.0	9	88.9	11.1	0.0	2	100.0	0.0	0.0	0.0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100.0	0.0	0.0	2	50.0	0.0	50.0	0.0	1	100.0	0.0	0.0	2	100.0	0.0	0.0	0	-	-	-	-	-
	전기전자산업	7	57.1	42.9	0.0	7	85.7	0.0	0.0	14.3	7	85.7	14.3	0.0	7	85.7	0.0	14.3	3	100.0	0.0	0.0	0.0	0.0
	기계산업	9	44.4	44.4	11.1	10	50.0	30.0	20.0	0.0	9	55.6	44.4	0.0	9	66.7	33.3	0.0	5	40.0	40.0	20.0	0.0	0.0
	기타제조업	4	75.0	25.0	0.0	4	50.0	25.0	25.0	0.0	3	100.0	0.0	0.0	2	50.0	50.0	0.0	1	100.0	0.0	0.0	0.0	0.0

(1) 수출(직접), (2) 수출(판매법인), (3) 현지생산, (4) 프랜차이즈

11. 침해 경험 기업의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단위: 개 사(빈도), %, 명(평균)]

		빈도	있음	없음	담당인력 평균	전담인력 평균
전체		53	73.6	26.4	2.2	1.1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0.0	4.0	4.0
	중견기업	11	72.7	27.3	2.5	1.4
	일반중소기업	31	74.2	25.8	2.0	.9
	벤처/이노비즈기업	9	66.7	33.3	1.9	.9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0.0	2.0	1.5
	도매 및 소매업	3	66.7	33.3	2.0	1.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2.0	1.0
	기타 서비스업	4	75.0	25.0	2.5	.8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66.7	33.3	1.3	.3
	화학산업	12	66.7	33.3	2.2	1.1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100.0	1.5	0.0
	전기전자산업	10	90.0	10.0	2.1	1.3
	기계산업	11	63.6	36.4	2.4	1.4
	기타제조업	5	100.0	0.0	2.4	1.4

12. 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34) 국가별 산재권 보유 기업 - 표 계속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전 체	45	57.8	84.4	37.8	49	61.2	73.5	42.9	46	52.2	76.1	28.3	41	63.4	73.2	29.3	26	41.1	75.0	10.7	
기업 유형	대기업	2	50.0	100.0	100.0	2	100.0	100.0	100.0	2	50.0	100.0	100.0	2	50.0	100.0	100.0	0.0	-	-	-
	중견기업	11	72.7	81.8	27.3	11	63.6	90.9	18.2	11	63.6	72.7	27.3	9	77.8	66.7	22.2	6	58.3	75.0	25.0
	일반중소기업	25	52.0	84.0	44.0	27	59.3	70.4	48.1	26	42.3	80.8	30.8	23	65.2	69.6	30.4	16	31.3	75.0	9.4
	벤처/이노비즈 기업	7	57.1	85.7	14.3	9	55.6	55.6	44.4	7	71.4	57.1	0.0	7	42.9	85.7	14.3	4	50.0	75.0	0.0

12. 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 (34) 국가별 산재권 보유 기업

[단위: 개 사(빈도),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빈도	특/실	상표	디자인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0.0	100.0	50.0	2	0.0	100.0	100.0	1	0.0	100.0	0.0	2	0.0	100.0	50.0	2	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	0.0	100.0	0.0	3	0.0	100.0	33.3	3	0.0	100.0	0.0	1	0.0	100.0	0.0	2	0.0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100.0	0.0	1	100.0	0.0	0.0	1	100.0	0.0	0.0	1	100.0	0.0	0.0	1	100.0	0.0	0.0
	건설업	3	33.3	100.0	33.3	4	0.0	100.0	25.0	4	0.0	100.0	0.0	3	33.3	100.0	33.3	4	12.5	100.0	0.0
	기타 서비스업	3	33.3	100.0	0.0	3	66.7	100.0	0.0	3	66.7	100.0	0.0	3	66.7	100.0	0.0	2	60.0	10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1	45.5	90.9	54.5	11	63.6	81.8	63.6	12	41.7	75.0	41.7	10	50.0	80.0	30.0	5	36.4	72.7	0.0
	화학산업	1	100.0	100.0	100.0	1	100.0	100.0	100.0	1	100.0	100.0	100.0	1	100.0	100.0	100.0	1	100.0	100.0	100.0
	전기전자산업	7	71.4	57.1	28.6	8	87.5	50.0	12.5	8	62.5	62.5	25.0	7	85.7	28.6	14.3	3	0.0	100.0	0.0
	기계산업	9	100.0	77.8	44.4	11	81.8	63.6	45.5	9	88.9	66.7	44.4	9	77.8	77.8	33.3	3	100.0	33.3	33.3
	기타제조업	5	60.0	80.0	40.0	5	60.0	60.0	60.0	4	50.0	75.0	25.0	4	75.0	75.0	50.0	3	33.3	66.7	33.3

13. 침해 경험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해외출원 확대	수시 모니터링 및 시장조사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채용 교육	별다른 활동 안 함
전 체		53	77.4	64.2	43.4	18.9	3.8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50.0	50.0	0.0	0.0
	중견기업	11	72.7	45.5	63.6	27.3	9.1
	일반중소기업	31	80.6	71.0	35.5	16.1	0.0
	벤처/이노비즈기업	9	66.7	66.7	44.4	22.2	11.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10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33.3	10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100.0	100.0	100.0	0.0
	기타 서비스업	4	50.0	75.0	25.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33.3	0.0	0.0	33.3
	화학산업	12	100.0	66.7	33.3	16.7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5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80.0	80.0	30.0	10.0	0.0
	기계산업	11	81.8	45.5	63.6	45.5	9.1
	기타제조업	5	60.0	80.0	80.0	20.0	0.0

14. 침해 경험 기업의 분쟁 유형(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1)	(2)	(3)	(4)	(5)
전체		53	62.3	3.8	3.8	43.4	13.2
기업 유형	대기업	2	50.0	0.0	0.0	100.0	0.0
	중견기업	11	72.7	9.1	9.1	54.5	18.2
	일반중소기업	31	71.0	0.0	0.0	35.5	9.7
	벤처/이노비즈기업	9	22.2	11.1	11.1	44.4	22.2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50.0	50.0	0.0	50.0	50.0
	도매 및 소매업	3	66.7	0.0	0.0	33.3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100.0	0.0
	기타 서비스업	4	100.0	0.0	0.0	25.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0.0	33.3	33.3	0.0
	화학산업	12	66.7	0.0	0.0	25.0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80.0	0.0	0.0	30.0	0.0
	기계산업	11	27.3	9.1	9.1	81.8	27.3
	기타제조업	5	60.0	0.0	0.0	60.0	20.0

(1) 경고장을 수령한 경험 있음, (2) 해외 세관에서 자사 제품이 압류당한 경험 있음, (3) 자사 제품이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아본 경험 있음, (4)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음(소송 시 피고), (5)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음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 미국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3건 미만	3~6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체		16	81.3	12.5	6.3
기업 유형	중견기업	2	0.0	50.0	50.0
	일반중소기업	10	100.0	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4	75.0	25.0	0.0
업종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0.0	100.0	0.0
	화학산업	2	100.0	0.0	0.0
	전기전자산업	6	66.7	16.7	16.7
	기계산업	5	100.0	0.0	0.0
	기타제조업	1	100.0	0.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 미국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5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2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1	100.0
	기타 서비스업	1	10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100.0
	화학산업	2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3) 미국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4) 미국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5) 미국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업종	기타 서비스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6) 중국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10건~20건 미만
전 체		4	75.0	25.0
기업유형	중견기업	2	50.0	50.0
	벤처/이노비즈기업	2	100.0	0.0
업종	기계산업	3	66.7	33.3
	기타제조업	1	100.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7) 중국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3~6건 미만
전 체		10	90.0	10.0
기업유형	대기업	1	100.0	0.0
	중견기업	4	75.0	25.0
	일반중소기업	2	10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3	100.0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2	50.0	5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2	100.0	0.0
	화학산업	1	100.0	0.0
	기계산업	2	100.0	0.0
	기타제조업	1	100.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8) 중국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2	100.0
기업유형	벤처/이노비즈기업	2	10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1	100.0
	기계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9) 중국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업종	기계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9) 중국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0) 유럽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5	100.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100.0
업종	화학산업	2	10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100.0
	기계산업	1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1) 유럽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4	100.0
업종	도매 및 소매업	1	100.0
	기타 서비스업	1	100.0
	화학산업	1	100.0
	전기전자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2) 유럽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1	100.0
업종	화학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3) 유럽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4) 유럽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5) 일본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유형	대기업	1	100.0
	일반중소기업	3	100.0
업종	화학산업	1	10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1	100.0
	전기전자산업	2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6) 일본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7) 일본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2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2	100.0
업종	화학산업	1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8) 일본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
전 체		0	0.0	0
기업유형	.	0	0.0	0
업종	.	0	0.0	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9) 일본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2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2	100.0
업종	전기전자산업	1	100.0
	기타제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0) 기타국가 특허/실용신안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1) 기타국가 상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4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3	10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100.0
업종	기타 서비스업	2	10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	100.0
	화학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2) 기타국가 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3) 기타국가 영업비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3건 미만
전 체		1	100.0
기업유형	일반중소기업	1	100.0
업종	기타제조업	1	10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24) 기타국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
전 체		0	0.0
기업유형	.	0	0.0
업종	.	0	0.0

15. 침해 경험 기업의 산재권 분쟁 건수 - (19) 침해 분쟁 건수

[단위: 건(빈도)]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67	21	18	12	7	9
기업 유형	대기업	5	2	1	1	0	1
	중견기업	16	2	3	4	4	3
	일반중소기업	31	12	9	5	1	4
	벤처/이노비즈기업	15	5	5	2	2	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4	0	4	0	0	0
	도매 및 소매업	5	1	3	1	0	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2	2	0	0	0	0
	기타 서비스업	5	1	0	1	1	2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6	2	3	0	0	1
	화학산업	12	3	1	5	1	2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	0	1	1	0
	전기전자산업	12	9	0	1	2	0
	기계산업	11	3	5	1	0	2
	기타제조업	8	0	2	2	2	2
권리 유형	특허	32	16	3	7	2	4
	실용신안	1	0	1	0	0	0
	상표	26	5	13	4	0	4
	디자인	4	0	1	1	2	0
	영업비밀	1	0	0	0	0	1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0	0	0	3	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 침해 권리 유형 및 분쟁 발생 지역

[단위: 건(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67	31.3	26.9	17.9	10.4	13.4
권리 유형	특허	32	50.0	9.4	21.9	6.3	12.5
	실용신안	1	0.0	100.0	0.0	0.0	0.0
	상표	26	19.2	50.0	15.4	0.0	15.4
	디자인	4	0.0	25.0	25.0	50.0	0.0
	영업비밀	1	0.0	0.0	0.0	0.0	10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0.0	0.0	0.0	0.0	100.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2) 분쟁 시작 형태

[단위: 건(빈도), %]

		빈 도	라이선스 요청 등 협상 제안	경고장 수령	행정 조치 (단속조사 등)	세관조치 (물품 압류 등)	소송	전시회 참가 시 압수, 경고 등	기타
전 체		67	13.4	56.7	7.5	4.5	31.3	3.0	3.0
권리 유형	특허	32	21.9	59.4	3.1	0.0	34.4	3.1	0.0
	실용신안	1	0.0	100.0	0.0	0.0	0.0	0.0	0.0
	상표	26	7.7	46.2	15.4	7.7	30.8	0.0	7.7
	디자인	4	0.0	75.0	0.0	25.0	25.0	25.0	0.0
	영업비밀	1	0.0	0.0	0.0	0.0	10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3	0.0	100.0	0.0	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23.8	71.4	4.8	0.0	19.0	0.0	0.0
	중국	18	11.1	38.9	11.1	16.7	50.0	0.0	5.6
	유럽	12	16.7	75.0	0.0	0.0	16.7	8.3	0.0
	일본	7	0.0	71.4	0.0	0.0	14.3	14.3	0.0
	기타	9	0.0	22.2	22.2	0.0	55.6	0.0	11.1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3) 침해주장 기업(기관)유형

[단위: 건(빈도), %]

		빈 도	경쟁사	NPEs	협력업체	기타
전 체		67	74.6	17.9	3.0	4.5
권리 유형	특허	32	75.0	18.8	3.1	3.1
	실용신안	1	100.0	0.0	0.0	0.0
	상표	26	69.2	23.1	0.0	7.7
	디자인	4	100.0	0.0	0.0	0.0
	영업비밀	1	0.0	0.0	10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10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61.9	28.6	0.0	9.5
	중국	18	66.7	22.2	5.6	5.6
	유럽	12	91.7	8.3	0.0	0.0
	일본	7	100.0	0.0	0.0	0.0
	기타	9	77.8	11.1	11.1	0.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4) 침해주장 기업 본사 소재지

[단위: 건(빈도), %]

		빈 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기타
전 체		67	32.8	22.4	17.9	17.9	1.5	7.5
권리 유형	특허	32	50.0	6.3	18.8	25.0	0.0	0.0
	실용신안	1	0.0	100.0	0.0	0.0	0.0	0.0
	상표	26	19.2	42.3	19.2	0.0	0.0	19.2
	디자인	4	0.0	25.0	25.0	50.0	0.0	0.0
	영업비밀	1	0.0	0.0	0.0	0.0	10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33.3	0.0	0.0	0.0	66.7	0.0
분쟁 지역	미국	21	71.4	0.0	9.5	19.0	0.0	0.0
	중국	18	5.6	83.3	5.6	5.6	0.0	0.0
	유럽	12	8.3	0.0	75.0	8.3	0.0	8.3
	일본	7	14.3	0.0	0.0	85.7	0.0	0.0
	기타	9	44.4	0.0	0.0	0.0	11.1	44.4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5) 경고장 수령 시점

[단위: 건(빈도), %]

		빈 도	제품 출시 전	제품 출시 후	경고장 수령하지 않았음
전 체		67	13.4	64.2	22.4
권리 유형	특허	32	0.0	75.0	25.0
	실용신안	1	0.0	100.0	0.0
	상표	26	26.9	50.0	23.1
	디자인	4	25.0	50.0	25.0
	영업비밀	1	0.0	10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33.3	66.7	0.0
분쟁 지역	미국	21	9.5	66.7	23.8
	중국	18	11.1	61.1	27.8
	유럽	12	8.3	83.3	8.3
	일본	7	28.6	57.1	14.3
	기타	9	22.2	44.4	33.3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6) 소송 여부

[단위: 건(빈도), %]

		빈 도	소송함	소송하지 않음
전 체		67	40.3	59.7
권리 유형	특허	32	40.6	59.4
	실용신안	1	100.0	0.0
	상표	26	38.5	61.5
	디자인	4	50.0	50.0
	영업비밀	1	10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0.0	100.0
분쟁 지역	미국	21	14.3	85.7
	중국	18	72.2	27.8
	유럽	12	41.7	58.3
	일본	7	14.3	85.7
	기타	9	55.6	44.4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7) 대응 비용(소송비용(법률비용))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천 만원 미만	2~4 천만원 미만	4~6 천만원 미만	6~8 천만원 미만	8~10 천만원 미만	1~2 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67	61.2	16.4	6.0	1.5	1.5	1.5	1.5	10.4	85.8
권리 유형	특허	32	65.6	6.3	3.1	3.1	0.0	0.0	3.1	18.8	157.5
	실용신안	1	0.0	0.0	100.0	0.0	0.0	0.0	0.0	0.0	20.0
	상표	26	57.7	30.8	7.7	0.0	0.0	0.0	0.0	3.8	20.8
	디자인	4	50.0	25.0	0.0	0.0	25.0	0.0	0.0	0.0	16.3
	영업비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80.0
	상품형태 (미등록 디자인)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85.7	0.0	0.0	0.0	0.0	0.0	4.8	9.5	151.9
	중국	18	22.2	50.0	16.7	0.0	0.0	0.0	0.0	11.1	42.6
	유럽	12	58.3	16.7	0.0	8.3	8.3	0.0	0.0	8.3	27.5
	일본	7	85.7	0.0	0.0	0.0	0.0	0.0	0.0	14.3	79.3
	기타	9	66.7	0.0	11.1	0.0	0.0	11.1	0.0	11.1	100.6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8) 대응 비용(판결 전 합의금)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평균
전 체		67	97.0	1.5	1.5	0.9
권리 유형	특허	32	96.9	0.0	3.1	1.6
	실용신안	1	100.0	0.0	0.0	0.0
	상표	26	96.2	3.8	0.0	0.4
	디자인	4	100.0	0.0	0.0	0.0
	영업비밀	1	100.0	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3	10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95.2	4.8	0.0	0.5
	중국	18	100.0	0.0	0.0	0.0
	유럽	12	91.7	0.0	8.3	4.2
	일본	7	100.0	0.0	0.0	0.0
	기타	9	100.0	0.0	0.0	0.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9) 대응 비용(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2~4천만원 미만	6~8천만원 미만	평균
전 체		67	97.0	1.5	1.5	1.4
권리 유형	특허	32	96.9	0.0	3.1	2.0
	실용신안	1	0.0	100.0	0.0	30.0
	상표	26	100.0	0.0	0.0	0.0
	디자인	4	100.0	0.0	0.0	0.0
	영업비밀	1	100.0	0.0	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10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100.0	0.0	0.0	0.0
	중국	18	94.4	5.6	0.0	1.7
	유럽	12	100.0	0.0	0.0	0.0
	일본	7	100.0	0.0	0.0	0.0
	기타	9	88.9	0.0	11.1	7.1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0) 대응 비용(판결 후 라이선싱 비용)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 도	0원	4~6천만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67	92.5	1.5	6.0	94.8
권리 유형	특허	32	84.4	3.1	12.5	198.4
	실용신안	1	100.0	0.0	0.0	0.0
	상표	26	100.0	0.0	0.0	0.0
	디자인	4	100.0	0.0	0.0	0.0
	영업비밀	1	100.0	0.0	0.0	0.0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100.0	0.0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81.0	0.0	19.0	300.0
	중국	18	100.0	0.0	0.0	0.0
	유럽	12	91.7	8.3	0.0	4.2
	일본	7	100.0	0.0	0.0	0.0
	기타	9	100.0	0.0	0.0	0.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1) 대응 비용(총 비용)

[단위: 건(빈도), %, 백만원(평균)]

		빈도	0원	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6천만원 미만	6~8천만원 미만	8~10천만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체		67	14.9	41.8	9.0	7.5	1.5	3.0	6.0	16.4	192.2
권리 유형	특허	32	25.0	18.8	6.3	3.1	3.1	3.1	9.4	31.3	367.4
	실용신안	1	0.0	0.0	100.0	0.0	0.0	0.0	0.0	0.0	20.0
	상표	26	3.8	76.9	11.5	3.8	0.0	0.0	0.0	3.8	28.8
	디자인	4	25.0	25.0	0.0	25.0	0.0	25.0	0.0	0.0	35.0
	영업비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3	0.0	33.3	0.0	66.7	0.0	0.0	0.0	0.0	36.7
분쟁 지역	미국	21	19.0	33.3	9.5	4.8	0.0	0.0	4.8	28.6	443.2
	중국	18	5.6	55.6	22.2	5.6	0.0	0.0	0.0	11.1	50.3
	유럽	12	25.0	50.0	0.0	0.0	0.0	8.3	8.3	8.3	47.7
	일본	7	14.3	14.3	0.0	42.9	14.3	0.0	0.0	14.3	110.7
	기타	9	11.1	44.4	0.0	0.0	0.0	11.1	22.2	11.1	145.9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2) 분쟁 종결 형태

[단위: 건(빈도), %]

		빈도	합의금· 손해배 상금 수령	라이 선스 체결	협상 진행 중	시장 진입 저지	소송 승소	소송 패소	소송 취하	소송 진행 중	침해 사실 없음을 증명	무대응	기타
전체		67	6.0	16.4	7.5	1.5	16.4	1.5	4.5	19.4	19.4	4.5	9.0
권리 유형	특허	32	6.3	21.9	9.4	0.0	12.5	3.1	6.3	15.6	15.6	9.4	9.4
	실용신안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상표	26	3.8	7.7	7.7	3.8	19.2	0.0	3.8	23.1	26.9	0.0	7.7
	디자인	4	0.0	25.0	0.0	0.0	25.0	0.0	0.0	25.0	0.0	0.0	25.0
	영업비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상품형태 (미등록디자인)	3	33.3	33.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분쟁 지역	미국	21	9.5	23.8	14.3	0.0	4.8	0.0	4.8	9.5	23.8	9.5	4.8
	중국	18	0.0	5.6	0.0	0.0	38.9	0.0	5.6	33.3	22.2	0.0	0.0
	유럽	12	8.3	8.3	8.3	0.0	8.3	0.0	0.0	25.0	16.7	8.3	25.0
	일본	7	14.3	28.6	0.0	0.0	0.0	0.0	14.3	0.0	14.3	0.0	28.6
	기타	9	0.0	22.2	11.1	11.1	22.2	11.1	0.0	22.2	11.1	0.0	0.0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3)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단위: 건(빈도), %, 개월(평균)]

		빈 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 체		41	39.0	19.5	34.1	7.3	15.0
권리 유형	특허	22	36.4	18.2	31.8	13.6	17.8
	실용신안	1	0.0	100.0	0.0	0.0	12.0
	상표	12	41.7	8.3	50.0	0.0	12.7
	디자인	3	33.3	33.3	33.3	0.0	13.3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	3	66.7	33.3	0.0	0.0	7.0
분쟁 지역	미국	13	30.8	23.1	38.5	7.7	17.2
	중국	10	30.0	10.0	60.0	0.0	16.1
	유럽	7	71.4	14.3	0.0	14.3	10.6
	일본	7	57.1	28.6	14.3	0.0	9.6
	기타	4	0.0	25.0	50.0	25.0	22.5

16. 침해 경험 기업의 침해 분쟁 사건별 현황 - (14) 분쟁 기간(진행 중인 경우)

[단위: 건(빈도), %, 개월(평균)]

		빈 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 이상	평균
전 체		26	34.6	42.3	11.5	7.7	3.8	12.2
권리 유형	특허	10	40.0	60.0	0.0	0.0	0.0	8.1
	상표	14	35.7	21.4	21.4	14.3	7.1	15.3
	디자인	1	0.0	100.0	0.0	0.0	0.0	10.0
	영업비밀	1	0.0	100.0	0.0	0.0	0.0	12.0
분쟁 지역	미국	8	37.5	62.5	0.0	0.0	0.0	8.6
	중국	8	25.0	25.0	12.5	25.0	12.5	18.5
	유럽	5	40.0	40.0	20.0	0.0	0.0	9.2
	기타	5	40.0	40.0	20.0	0.0	0.0	10.8

17.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및 경험 국가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분쟁경험이 없음	분쟁경험이 있음
전 체		53	92.5	7.5
기업유형	대기업	2	100.0	0.0
	중견기업	11	90.9	9.1
	일반중소기업	31	93.5	6.5
	벤처/이노비즈기업	9	88.9	11.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	10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0.0
	기타 서비스업	4	10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100.0	0.0
	화학산업	12	83.3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100.0	0.0
	전기전자산업	10	100.0	0.0
	기계산업	11	81.8	18.2
	기타제조업	5	100.0	0.0

18. 전시회 압수 시 대응형태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전 체		4	50.0	25.0	25.0
기업유형	중견기업	1	100.0	0.0	0.0
	일반중소기업	2	50.0	50.0	0.0
	벤처/이노비즈기업	1	0.0	0.0	100.0
업종	화학산업	2	100.0	0.0	0.0
	기계산업	2	0.0	50.0	50.0

(1)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철수, (2) 가처분, 가압류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에 항고(변호사 선임), (3) 법원에 상대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

19. 침해 주장 발생시 도움요청한 기관(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전 체		53	47.2	75.5	15.1	3.8	5.7
기업 유형	대기업	2	100.0	100.0	0.0	0.0	0.0
	중견기업	11	36.4	63.6	0.0	0.0	18.2
	일반중소기업	31	38.7	80.6	19.4	3.2	3.2
	벤처/이노비즈기업	9	77.8	66.7	22.2	11.1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5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66.7	0.0	0.0	33.3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100.0	10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25.0	100.0	25.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100.0	0.0	33.3	0.0
	화학산업	12	33.3	66.7	33.3	8.3	8.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100.0	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40.0	80.0	0.0	0.0	10.0
	기계산업	11	72.7	72.7	9.1	0.0	0.0
	기타제조업	5	60.0	60.0	20.0	0.0	0.0

(1)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해외), (2)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국내), (3) 국내 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4) 해외 현지 공공기관, (5)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음(회사 자체 인력)

20. 침해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손해(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도	매출 감소	대외 이미지 하락	손해 배상·합의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업 축소 및 철수	연구개발에 차질	기타
전체		53	41.5	39.6	34.0	18.9	15.1	3.8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0.0	50.0	50.0	50.0	0.0
	중견기업	11	27.3	54.5	54.5	9.1	9.1	9.1
	일반중소기업	31	48.4	32.3	32.3	19.4	9.7	3.2
	벤처/이노비즈기업	9	44.4	55.6	11.1	22.2	33.3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50.0	50.0	0.0	5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	0.0	66.7	0.0	33.3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0.0	10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25.0	0.0	25.0	25.0	0.0	25.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66.7	66.7	66.7	0.0	0.0
	화학산업	12	50.0	50.0	33.3	16.7	8.3	8.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0.0	0.0	0.0	50.0	0.0
	전기전자산업	10	40.0	20.0	50.0	30.0	10.0	0.0
	기계산업	11	54.5	45.5	45.5	0.0	18.2	0.0
	기타제조업	5	40.0	60.0	0.0	0.0	60.0	0.0

21. (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1) 1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전 체		53	26.4	9.4	7.5	35.8	9.4	11.3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0.0	50.0	50.0	0.0	0.0
	중견기업	11	9.1	18.2	0.0	45.5	9.1	18.2
	일반중소기업	31	29.0	9.7	9.7	32.3	9.7	9.7
	벤처/이노비즈기업	9	44.4	0.0	0.0	33.3	11.1	11.1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50.0	0.0	0.0	5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0.0	0.0	33.3	0.0	33.3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0.0	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50.0	0.0	0.0	50.0	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33.3	0.0	33.3	0.0	0.0
	화학산업	12	33.3	16.7	0.0	41.7	0.0	8.3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50.0	5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20.0	10.0	20.0	40.0	10.0	0.0
	기계산업	11	18.2	9.1	9.1	18.2	18.2	27.3
	기타제조업	5	20.0	0.0	0.0	20.0	40.0	2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22. (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2) 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51	7.8	5.9	21.6	17.6	17.6	27.5	2.0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50.0	0.0	0.0	0.0	50.0	0.0
	중견기업	11	0.0	9.1	27.3	27.3	0.0	27.3	9.1
	일반중소기업	30	6.7	0.0	26.7	20.0	23.3	23.3	0.0
	벤처/이노비즈기업	8	25.0	12.5	0.0	0.0	25.0	37.5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0.0	0.0	0.0	0.0	50.0	50.0	0.0
	도매 및 소매업	3	0.0	33.3	66.7	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0.0	0.0	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0.0	0.0	0.0	0.0	0.0	10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0.0	0.0	0.0	33.3	0.0	66.7	0.0
	화학산업	11	0.0	9.1	45.5	9.1	27.3	9.1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0.0	50.0	5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20.0	0.0	20.0	20.0	10.0	20.0	10.0
	기계산업	10	20.0	10.0	20.0	30.0	0.0	20.0	0.0
	기타제조업	5	0.0	0.0	0.0	20.0	40.0	40.0	0.0

(1)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 (2) 전문인력 등 관리 역량 제고, (3)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 (4)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5)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22. (침해)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또는 요청하고 싶은 사항 - (3) 1+2순위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기타
전 체		53	34.0	15.1	28.3	52.8	26.4	37.7	1.9
기업 유형	대기업	2	0.0	50.0	50.0	50.0	0.0	50.0	0.0
	중견기업	11	9.1	27.3	27.3	72.7	9.1	45.5	9.1
	일반중소기업	31	35.5	9.7	35.5	51.6	32.3	32.3	0.0
	벤처/이노비즈기업	9	66.7	11.1	0.0	33.3	33.3	44.4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50.0	0.0	0.0	50.0	50.0	50.0	0.0
	도매 및 소매업	3	33.3	33.3	66.7	33.3	0.0	33.3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0.0	0.0	100.0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4	50.0	0.0	0.0	50.0	0.0	10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33.3	33.3	0.0	66.7	0.0	66.7	0.0
	화학산업	12	33.3	25.0	41.7	50.0	25.0	16.7	0.0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0.0	0.0	50.0	100.0	50.0	0.0	0.0
	전기전자산업	10	40.0	10.0	40.0	60.0	20.0	20.0	10.0
	기계산업	11	36.4	18.2	27.3	45.5	18.2	45.5	0.0
	기타제조업	5	20.0	0.0	0.0	40.0	80.0	60.0	0.0

23. (침해)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산재권 보호 관련 정부 사업(복수응답)

[단위: 개 사(빈도), %]

		빈 도	(1)	(2)	(3)	(4)	(5)	(6)	(7)	(8)	없음
전 체		53	60.4	62.3	47.2	26.4	17.0	7.5	22.6	45.3	5.7
기업 유형	대기업	2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중견기업	11	54.5	63.6	63.6	36.4	18.2	18.2	27.3	63.6	0.0
	일반중소기업	31	58.1	61.3	45.2	22.6	19.4	3.2	16.1	35.5	6.5
	벤처/이노비즈기업	9	77.8	77.8	44.4	33.3	11.1	11.1	44.4	66.7	0.0
업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	100.0	100.0	50.0	50.0	50.0	0.0	50.0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	0.0	33.3	33.3	33.3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1	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기타 서비스업	4	75.0	25.0	25.0	25.0	0.0	0.0	0.0	50.0	0.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	66.7	33.3	33.3	0.0	0.0	33.3	0.0	66.7	0.0
	화학산업	12	58.3	66.7	58.3	16.7	25.0	8.3	16.7	41.7	16.7
	철강 및 금속 및 비금속산업	2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전기전자산업	10	70.0	70.0	30.0	30.0	10.0	0.0	10.0	40.0	0.0
	기계산업	11	63.6	63.6	63.6	36.4	27.3	18.2	45.5	45.5	0.0
	기타제조업	5	60.0	100.0	60.0	20.0	20.0	0.0	60.0	60.0	0.0

(1) 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 (2)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3)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제공 사업, (5) 동종기업간 협의체 지원, (6) NPE소송알림 서비스, (7) 해외초동대응 지원 사업, (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조사분석연구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89854-00-3
DOI : 10.8080/P9791189854003